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算出에 관한 研究

高 敬 煥
桂 勳 邦

韓 國 保 健 社 會 研 究 院

머 리 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會員國으로 가입함에 따라 國際的 地位向上과 함께 부차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사회보장관련 통계제공의무가 목전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OECD의 社會保障費 支出統計는 사회복지 명목으로 실제 지출된 현물·현금급여를 산출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별 회원국 국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指標가 되고있다. 특히 OECD의 요구 통계는 급여내용을 機能別로 분류·작성하고 있어 制度別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관련統計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관장하고 있지만,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처, 법무부, 내무부 그리고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도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러 부처에 分散·施行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政府의 공공지출재원과 社會保險의 각종급여, 使用主負擔의 급여를 파악하여 國際統計作成 基準에 맞는 우리의 統計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時宜適切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OECD에 가입하면서 갖게 된 國際統計의 提出義務도 조속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복지부문의 정책수립 및 연구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책수립자, 정부의 통계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연구진은 그동안 많은 助言과 協助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의 이영호 과장, 윤석이·최교영 계장, 김의석·금종택 담당, 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 양봉민 교수,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명재일 박사, 노동부 고용정책과 양정열 사무관 등의 관계자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한 研究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태민 정보통계연구실장, 研究進行 過程에서 생산적 토론을 해준 사회복지연수원의 이태수 교수, 상지대학교의 김연명 교수, 서강대학교의 문진영 교수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통계생산과정과 중간결과에 대하여 檢討와 助言을 아끼지 않으신 駐 OECD代表部の 정형선 1등 서기관, OECD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illem Adema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본 연구진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有益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장영식 박사와 최병호 박사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統計資料處理에 힘을 기울인 이연희 주임연구원과 原稿를 읽고 指摘을 아끼지 않은 정영철 주임연구원께 감사하며, 조현주, 박천, 정유선, 이내연 연구원은 통계자료의 入力과 整理에 큰 도움을 주었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內容은 어디까지나 著者の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年 11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3
I. 序 論	32
1. 研究背景	32
2. 研究目的 및 內容	33
3. 研究方法	36
4. 研究의 限界點	38
II. OECD의 社會保障統計 分類體系와 研究範圍	39
1. 社會保障費의 定義	39
2. 社會保障費의 分類體系	44
3. 社會保障費의 算定範圍	60
4. 우리나라의 統計生産 可能性과 限界	68
III.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現況과 行政管理體系	75
1. 老齡·障礙·遺族給與(OECD, Category 1, 2, 6)	75
2.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ECD, Category 3)	82
3. 老人福祉서비스(OECD, Category 5)	84
4. 障礙人福祉서비스(OECD, Category 5)	90
5. 家族現金給與(OECD, Category 7)	98
6. 家族福祉서비스(OECD, Category 8)	101
7. 積極의인 勞動市場政策(OECD, Category 9)	109

8. 失業給與(OECD, Category 10)	121
9. 保健部門公共支出(OECD, Category 11)	129
10. 其他給與(OECD, Category 13)	134
11. 疾病給與 및 住居給與(OECD, Category 4, 12)	143
IV.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國際比較	144
1. 우리나라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生産項目	144
2.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負擔形態	148
3. 社會保障費 支出의 國際比較	152
V. 結論 및 政策建議	167
1. 結論	167
2. 政策建議	171
參 考 文 獻	176
附 錄	181

表 目 次

〈表 II-1〉	OECD 社會保障費 項目의 分類	42
〈表 II-2〉	社會保障의 範圍와 領域	44
〈表 II-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算定範圍	63
〈表 II-4〉	社會保障費算出에 包含된 政府歲出 ‘目’의 範圍	66
〈表 II-5〉	OECD의 社會保障費 部門과 우리나라의 生産現況	70
〈表 III-1〉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老齡現金給與 部門 -	79
〈表 III-2〉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障礙現金給與 部門 -	80
〈表 III-3〉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遺族給與 部門 -	81
〈表 III-4〉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産業災害 및 職業病 給與 部門 -	83
〈表 III-5〉	家庭奉仕員派遣事業의 서비스 內容	86
〈表 III-6〉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部門 -	96
〈表 III-7〉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家族現金給與 部門 -	100
〈表 III-8〉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家族福祉서비스 部門 -	108
〈表 III-9〉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ALMP 部門 -	119

〈表 III-10〉	雇傭保險制度의 主要事業 內容	124
〈表 III-11〉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失業給與 部門 -	129
〈表 III-12〉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保健部門 公共支出 -	134
〈表 III-13〉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其他給與 部門 -	142
〈表 IV- 1〉	우리나라의 年度別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145
〈表 IV- 2〉	社會保障費支出 部門別 우리나라의 관련 給與制度 ·	146
〈表 IV- 3〉	OECD國家의 社會保障統計 平均提出率	148
〈表 IV- 4〉	社會保障制度別 支出現況(1996)	150
〈表 IV- 5〉	社會保障費의 財源(負擔主體)別 支出現況(1990~1996년)	151
〈表 IV- 6〉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1990~1996년)	153
〈表 IV- 7〉	OECD 主要會員國의 1人當 經常社會保障費(1993) ·	154
〈表 IV- 8〉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部門別 支出比率(1993)	156
〈表 IV- 9〉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部門別 支出比率(1993)	158
〈表 IV-10〉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支出中 民間部門의 支出比率(1993)	160
〈表 IV-11〉	1人當 7千弗所得帶의 社會保障의 財源負擔과 支出比較	165

圖目次

〔圖 I - 1〕 社會保障費 構成圖	35
〔圖 II - 1〕 OECD 分類와 우리의 社會保障制度間의 聯關關係	64
〔圖 IV - 1〕 主要 國家別 保健과 福祉部門間 支出比率의 差異(1993)	158
〔圖 IV - 2〕 社會保障費 支出에 대한 民間部門의 支出 百分率	161

附 表 目 次

〈附表 1〉	老人의 施設保護別 서비스內容	181
〈附表 2〉	障礙人施設保護別 入所對象者	182
〈附表 3〉	歲出科目 區分 (全會計 및 基金)	184
〈附表 4〉	OECD會員國別 總 社會保障費	190
〈附表 5〉	OECD會員國別 福祉部門의 社會保障費	191
〈附表 6〉	OECD會員國別 保健部門의 社會保障費	192
〈附表 7〉	OECD 國家의 老齡現金給與	193
〈附表 8〉	OECD 國家의 障礙現金給與	194
〈附表 9〉	OECD 國家의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	195
〈附表 10〉	OECD 國家의 疾病給與	196
〈附表 11〉	OECD 國家의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197
〈附表 12〉	OECD 國家의 遺族給與	198
〈附表 13〉	OECD 國家의 家族現金給與	199
〈附表 14〉	OECD 國家의 家族福祉서비스	200
〈附表 15〉	OECD 國家의 積極的인 勞動市場 프로그램	201
〈附表 16〉	OECD 國家의 失業給與	202
〈附表 17〉	OECD 國家의 住居給與	203
〈附表 18〉	OECD 國家의 其他給與	204
〈附表 19〉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Raw Data(1996)	205
〈附表 20〉	OECD 會員國別 社會保障費 統計 平均提出率	230
〈附表 21〉	Social Expenditure of Korea	231

〈附表 22〉	Social Expenditure of Korea(as a Percentage of GDP) …	238
〈附表 2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243
〈附表 24〉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社會保障費 支出比率	249

要 約

I. 研究背景

-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함에 따라 國際的 地位向上 못지 않게 여러 가지 義務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 社會保障費 관련 統計提供 의무가 목전의 과제임.
- OECD의 社會保障費統計는 사회복지 명목으로 실제 지급된 現物·現金給與를 산출대상으로 함으로써 개별 회원국 국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指標가 됨.
 - OECD의 요구통계는 급여내용을 機能別로 분류·작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制度別 분류방법과 큰 차이가 있음.
 - 또한 財源의 範圍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부재원 까지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관련통계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관장하고 있지만,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처, 법무부, 내무부 그리고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도 관련통계를 생산하고 있어 취합이 요구됨.
 - OECD가 금년 말까지 제공을 요구하는 통계는 13개 부문의 96개 항목임.
- 여러 부처에 分散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를 국제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산출하고 나아가 한국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함.

- OECD에 가입하면서 갖게 된 관련통계의 제출의무도 時宜性있게 履行할 수 있을 것임.

II. OECD의 社會保障統計의 分類體系

1. 社會保障費의 定義

-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現物 또는 現金給與의 총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2. 社會保障費의 分類體系

Category 1: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退職者에게 소득대체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반 현금적 급여를 의미함. 본 급여는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경우의 대체소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조기퇴직급여(10.2)’는 실업수당이나 다른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급여에서 除外하고 있음.

Category 2: 障礙現金給與(Disability Cash Benefits)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는 完全 혹은 部分 障礙者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함. 따라서 현물급여의 경우는 본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며 이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에 포함시키고 있음. 또한 산업재해·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도 본 급여에서 제외하며 이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3)’로 분류하고 있음.

Category 3: 産業災害 및 職業病 給與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被害勤勞者와 그 家族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함. 예로써 유급질병휴가, 특별수당 그리고 연금 등을 들 수 있음.

Category 4: 疾病給與(Sickness Benefits)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제외한 一般疾病으로 인한 상병기간 동안의 所得中斷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함.

Category 5: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 주거시설(예: 양로원), 가정봉사원 제도, 재활시설서비스 그리고 기타 현물급여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를 의미함.

Category 6: 遺族給與(Survivors)

家口主의 死亡時 배우자와 피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의미함.

Category 7: 家族現金給與와 家族福祉서비스

(Family Cash Benefits and Family Services)

가족현금급여와 가족복지서비스는 家族單位(독신가구 제외)를 支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를 의미함.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비나 기타 피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비를 포함하고 있음.

Category 8: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신규취업자와 실업자 등이 就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출된 급여임. 구체적으로 본 급여의 종류에는 신규취업자를 위한 공공직업사업, 노동시장의 훈련,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특정프로그램이 있음.

Category 9: 失業給與(Unemployment)

실업급여는 失業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상하는 차원의 모든 현금급여를 포함함. 여기에는 노동시장에 의해 조기퇴직하는 경우 연금수급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수급할 뿐만 아니라 해고시 퇴직수당을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함.

Category 10: 保健部門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보건기관의 서비스 생산 또는 구입에 公共部門(중앙 및 지방당국, 보건위원회와 사회보험기관)이 지출한 금액.

- 정부지출: 보건행정부문, 생의학·의약품의 연구개발부문, 군인·학교·교도소보건서비스, 식품·위생감시부문,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부보조, 의료시설 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지출 등

- 사회보험기관: 입원환자치료, 외래진료 및 의약품지불비용

Category 11: 住居給與(Housing Benefits)

저소득계층의 住居費用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또는 기타 현금급여를 의미함.

Category 12: 其他給與(Other Contingencies)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正規的인 社會保障프로그램에서 除外된 사람 또는 위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주체가 지급하는 급여임.

3. 社會保障費의 財源範圍

- 재원범주로는 一般政府(중앙, 주, 지방정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보험기관 포함)와 民間(고용주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재원)의 지출임.
 - 공공부문의 行政費用(Administration Costs)은 제외함.
다만,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9)과 보건부문공공지출(11)에는 행정비용을 포함.
 - 민간부문의 시장거래(Market Transaction) 및 가구간 이전지출은 제외함.

Ⅲ. 우리나라 社會保障費支出의 現況과 行政管理體系

1. 社會保障費支出의 現況

가.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OECD의 老齡現金給與(1)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각 퇴직연금이 있다.

나. 障礙現金給與(Disability Cash Benefits)

OECD의 障礙現金給與(2)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의 각 장애연금이 있다.

다.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ccupational Injury & Disease)

OECD의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3)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 보험의 給與種類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휴업급여 등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保健部門의 公共支出(11)’에 포함하였다.

라. 疾病給與(Sickness Benefits)

OECD의 疾病給與(4)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는 없다. 다만 OECD의 질병급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의료보험의 傷病手當(1978년 폐지)과 각 사업장의 有給傷病休暇給與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OECD의 老人福祉서비스(5)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老人福祉施設, 在家老人福祉事業이, 障礙人福祉서비스(5)에는 장애인의 시설 보호서비스,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그리고 기타현물급여가 있다.

바. 遺族給與(Survivors)

OECD의 遺族給與(6)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가보훈연금의 각 유족연금이 있다.

사. 家族現金給與와 家族福祉서비스

(Family Cash Benefits and Family Services)

OECD의 家族現金給與(7)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가정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의 학자금지급이 있으며, 家族福祉서비스(8)에는 저소득층보육아동의 보육시설이용 지원, 아동복지시설보호, 부녀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아동건전육성사업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이 있다.

아. 積極的 勞働市場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ECD의 積極的 勞働市場 프로그램(9)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의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고용훈련 및 지원사업,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사업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훈련과 재활사업이 있다.

자. 失業給與(Unemployment)

OECD의 失業給與(10)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들 수 있다.

차. 保健部門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OECD의 保健部門公共支出(11)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그리고 보건부문의 정부지출이 해당된다.

카. 住居給與(Housing Benefits)

OECD의 住居給與(12)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는 없다. 다만, 중앙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지방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받을 책정임대료가 낮아질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하여 OECD에서는 새로운 관심영역의 설정을 考慮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계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타. 其他給與(Other Contingencies)

OECD의 其他給與(13)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공공부조제도 (의료보호 제외)와 의사상자예우, 재해구호, 귀순북한동포보호제도, 국가보훈 등이 있다. 여기서 두 번째 이하의 제도들은 일상적으로 公共扶助에 포함하기도 하고 별도로 분리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國際基準에 따른 통계생산에 있으므로 본 급여에 포함하였다.

2. 財源範疇

- 制度範圍: 4大社會保險, 公共扶助, 社會福祉서비스, 法定退職金
- 財源範圍: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一般會計, 農漁村特別會計, 관련 特別會計와 基金의 豫算資料(정부의 세출과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경비, 정부내부거래의 一部 ‘目’들로 <表 3>참조.
 - 4대 사회보험의 급여액(決算資料)
 -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법정퇴직금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산출과 관련된 10개의 행정부처별 相關制度는 <表 1>과 같으며, 각 제도별 給與(支出)種類는 <表 2>와 같음.

〈表 1〉 行政部處別 社會保障制度

행정부처	관 련 제 도 등	행정부처	관 련 제 도 등
보 건 복지부	국민연금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
	의료보험	국방부	군인연금
	공공부조		군인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교육부	사학연금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민계정
	고용보험	내무부	재해대책복구 지원
	저소득층 등 고용촉진훈련	법무부	교정시설의 재소자 보건의료비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기관지원	노동부 (국세청)	법정퇴직금
	직업안정	보훈처	보훈연금 등

註: 1) 관련공단은 표기하지 않았음.

2) ()은 통계생산 기관임.

〈表 2〉社會保障費支出 관련 우리나라의 制度 및 財源範疇

사 회 보 장 제 도			소 관 부 처	일 반 회 계·기 금 / 급 여 종 류
사 회 보 험	연 금 보 험	공무원연금	총 무 처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	국 방 부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사학연금	교 육 부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의 료 보 험	직장·지역의보	보건복지부	·현물급여
		공·교의보	보건복지부	·현물급여
	협	산 재 보 험	노 동 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고 용 보 험	노 동 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공 공 부 조			보건복지부	·의료보호, 생활보호, 교육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일시구호 등 ·사회복지사업기금
			내 무 부	·이재민, 주택복구비
			농 립 부	·재해대책무상양곡대지원(95) ¹⁾
			보 훈 처	·보상금급여, 교육보호, 보훈병원진료비보상, 단체운영지원
			노 동 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사회복지 서 비 스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국민계정(정부지출, 투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사회행정, 장애인복지, 재활원, 가정복지	
		법 무 부	·교정시설의 제소자 의료비	
		국 방 부	·군인보건의료서비스	
		교 육 부	·장애인복지 — 특수학교 교육진흥비	
	고용서비스	노 동 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전산관리, 각 지방노동관서 ·장애인직업훈련 실시기관지원	
		산업인력 관리공단	·정부출연금 —능력개발, 시설확충, 인력관리, 한국직업훈련학원지원 등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정부출연금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기술훈련, 고용환경개선, 고용촉진, 교육홍보, 시설확충	
법 정 퇴 직 금			노동부 (국세청)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註: 1) 정부의 재해구호지원금중 농림부의 ‘재해대책무상양곡대지원’ 예산은 1990년 이후 유일하게 1995년만 책정되어 있어 산출과정에서 省略하였음. 1995년도 예산은 43억원 임.

2) ()은 통계생산 기관임.

〈表 3〉 社會保障費算出에 包含된 政府歲出 ‘目’의 範圍

목		포함 여부	비 고
인건비(100)		×	단, 직접서비스 기관은 포함 - 지방노동관서 등
물건비(200)	관서운영비(201)	○	ALMP(9), 보건부문(11)
	여비(202)	×	단, 직접서비스 기관은 포함 - 지방노동관서 등
	업무추진비(204)	×	
경상이전(300)	보상금(301)	○	
	출연금(303)	×	
	민간경상이전(304)	○	
	자치단체경상이전(305)	○	
	차입금이자(308)	×	
자본지출경비(400)	자산취득비(407)	○	
	민간자본이전(411)	○	
	자치단체자본이전(412)	○	
융자금 및 출자금(500)	융자금(501)	×	대부금은 제외
	출자금(502)	×	
보전지출(600)	국내차입금상환(601)	×	
	해외차입금상환(602)	×	
정부내부거래(700)	전출금(701)	×	
	전대차관원리금상환(704)	×	

註: 사회복지에 관련된 ‘목’만 나열하였음.

()은 예산분류 번호임.

IV.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國際比較

- OECD에서 요구하는 13개 부문의 總 96개 통계항목중 11個部門의 51個 項目(53.1%)을 생산함.
 - 미생산된 2개 부문은 질병급여(4)와 주거급여(12)로 이는 제도의 미도입에 연유하고 있음.
 -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세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13개 항목(13.5%), 기초자료가 없어 생산할 수 없는 것이 1개 항목(1.0%)이며, 제도자체가 도입되지 않아 생산할 수 없는 것이 31개 항목(32.3%)임.
- OECD 기준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總 規模는 1996년말 현재 20조 5,627억원으로 국내총생산(경상GDP)의 5.28%임.
 - 법률에 의하여 기업주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退職金 5조 4,530억원을 除外하면 3.88%임.
 - 이는 전년보다 약 14.8% 늘어난 것으로 사회보장비로 받은 국민 1인당 1년간의 급여액은 45만원(561\$)에 불과함.
 - 이는 OECD국가의 GDP대비 社會保障費 支出規模의 15~35%에 불과한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보장으로 받은 급여비중을 百分率로 보면 保健部門公共支出이 3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失業給與 26.6%, 老齡現金給與 21.3%順으로 나타났으며, 家族現金給與가 가장 낮은 0.1%임.
 - 失業給與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법정퇴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除外하면 0.05%(GDP 대비

0.003%)임.

- 따라서 법정퇴직금을 사회보장비에 포함하지 않으면 保健部門公共支出과 老齡現金給與가 주된 급여임.
- 1990년부터 1996년까지 GDP에 대한 사회보장비의 지출비율을 各年度別로 보면, 3.90%, 3.80%, 4.23%, 4.42%, 4.72%, 5.09% 마지막으로 1996년은 5.28%임. GDP에 대한 비율은 연도별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사회보장비의 지출규모는 연평균 19.7%씩 증가하였음.
- 사회보장비지출 수준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OECD가 공표한 最近年度인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GDP의 4.4%로 미국의 15.6%, 일본의 12.4%(1992년), 독일의 28.3%에 비해 크게 낮음.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은 30%를 넘어 우리나라의 7배 이상임.
- 사회보장비 지출에 대한 民間(企業)部門의 支出 百分率을 보면 우리나라가 26.5%로 가장 높으며, 독일이 4.9%, 그 외의 국가들은 1~3%의 수준임. 이와 같이 민간재원이 여러 부문에 걸쳐 지출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한 부문(법정퇴직금)에만 지출하는 데도 이렇게 높게 나타남.
 - 이는 外國과 비교하였을 때 먼저, 우리의 공공부문의 역할이 相對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政府의 지출수준이 더 增加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4대사회보험은 도입되었지만 그 기능이 相對적으로 微弱함으로 앞으로 사회보험의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 1993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7,750달러)와 비슷한 OECD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1975년의 미국은 14.50%, 일본(1978년)이 11.2%, 독일(1975년)이 26.23%로 우리나라보다 3~6배나 높다. 사회보장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사회보장비의 경우 1993년 현재 경상지출이 약

27만원(333\$)으로 미국은 1,064\$, 일본이 968\$, 서독이 1,985\$로 우리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음을 알 수 있음.

- 199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경제수준과 비슷한 그리스(8,883달러)는 사회보장비가 17.24%, 포르투갈(8,315달러)은 16.37%,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멕시코(4,414달러)는 3.83%, 터키(3,033달러)는 7.11%임.
-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비례관계는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도 알 수 있음.
- 制度別로 사회보장비의 支出百分率을 보면 사회보험 53.9%, 공공부조 8.6%, 사회복지서비스 11.0%, 기타(법정퇴직금) 26.5%임. 여기서 OECD국가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타(법정퇴직금)를 사회보험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형태는 단순히 구성비만 볼 때 선진국형임.
- 주요 OECD국가의 사회보장비 구성은 社會保險이 70~80%,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가 20~30%임.
- 사회보장비를 재원운영주체별로 볼 때 정부가 19.6%, 관리공단 등이 53.9%, 민간부문이 26.5%임.

〈表 4〉 우리나라의 年度別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단위: 백만원, %)

사회보장비 지출부문	지출규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 노령연금급여	1,111,711	1,420,934	1,968,440	2,573,226	3,192,330	4,187,112	4,389,787(21.3)
2. 장애연금급여	147,173	212,796	252,421	275,269	321,565	360,180	407,547(2.0)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365,722	509,275	671,569	629,115	730,001	854,112	1,012,363(4.9)
4. 질병급여	-	-	-	-	-	-	-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²⁾	102,064	103,924	121,272	157,177	341,666	427,299	536,590(2.6)
6. 유족급여	290,239	401,058	442,005	479,196	552,148	606,683	674,484(3.3)
7. 가족연금급여	2,079	4,913	5,088	7,027	8,265	10,740	11,077(0.1)
8. 가족복지서비스	57,807	83,824	105,778	146,798	176,595	251,021	326,274(1.6)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112,881	110,846	178,743	225,758	195,317	266,244	335,974(1.6)
10. 실업급여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63,404(26.6)
• 실업보상 ³⁾	-	-	-	-	-	-	10,456(0.05)
• 퇴직수당 ⁴⁾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26.5)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33.2)
12. 주거급여 ⁵⁾	-	-	-	-	-	-	-
13. 기타급여 ⁶⁾	335,323	335,836	328,239	358,840	362,789	450,658	575,548(2.8)
계	7,001,683	8,204,062	10,168,499	11,814,173	14,433,978	17,906,353	20,562,674(100.0)
GDP(경상)에 대한 비율	3.90	3.80	4.23	4.42	4.72	5.09	5.28

註: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되었음.

2)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의 현금급여를 포함.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4) 우리나라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임.

5)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OECD가 앞으로 요구할 계획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의 현금급여를 포함.

V. 政策建議

1. 算出範圍의 確定과 調査票의 開發

- 앞으로 사회보장비의 효율적인 통계생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파악한 제도의 범위와 과정을 토대로 調査票開發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論議의 불충분으로 포함하지 않은 제도와 基礎資料의 한계로 누락한 제도(재원 포함) 그리고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細分化 할 수 없는 제도의 把握과 算出에 대한 後續研究가 필요함.
 - 상술한 내용들에 대한 生産方案이 수립된 후, 조사표의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봄. 이 조사표를 활용하여 다음에서 언급할 “중앙행정기관간 지정협조”를 기반으로 매년 통계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2. 事業內容別로 細分化된 政府歲入歲出決算書 作成

- 사회보장비를 산출하는 자료로는 정부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豫算資料 보다 실제지출된 決算資料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함.
 - 그러나 정부결산자료는 예산자료처럼 사업내용별로 細分化되어 있지 않아 OECD의 통계를 산출할 수 없음.
 - 나아가 국제기구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점차 통계항목의 多樣化와 細分化 그리고 新規統計의 요구가 增加할 것임.

- 따라서 사업내용별로 세분화된 결산서가 작성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이 강구됨.
 - 첫째는 재정경제원이 각 부처로부터 실무차원에서 미비하지만 ‘細目’까지 작성된 결산서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를 차츰 補完하는 방안
 - 둘째는 歲出決算書의 과목구분을 더 세분화하여 ‘細目’까지 작성되도록 豫算會計法을 改正하는 방안

3. 中央行政機關間 指定協助

-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관련 통계생산은 보건복지부가 주로 管掌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8개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있음. 효과적인 통계 생산방법은 각 관련 기관들이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게 통계를 생산·제출하는 ‘中央行政機關間 指定協助’가 필요하다고 봄.
 - OECD요구 통계는 매년 생산·제출하여야 하므로 指定協助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봄.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통계를 효과적으로 생산·취합하는 방안으로 중앙행정기관 간 지정협조가 이루어져야 함. 이렇게 되어야만 사회보장비 지출통계의 시의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음.

4. 國民計定體系의 活用性 增大

- 앞으로 여러 行政府處와 民間(雇用主)에 分散되어 있는 통계를 효과

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韓國銀行은 國民計定體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관련 정보를 집중시키려는 努力이 必要함.

- 현재 UN의 國民計定體系(1993)에는 OECD의 社會보장비를 生産할 수 있는 “第2次所得分配計定”이 設定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國民계정에도 “第2次所得分配計定”에 해당하는 “制度部門別 所得支出計定”이란 이름으로 一部統計를 生産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國民계정은 아직 OECD의 통계生産에 活用할 수 없는 실정임.
- 앞으로 相關기관은 國民계정체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相關情報를 집중시키려는 努力과 協助가 必要함.
- 나아가 향후 社會보장비 지출뿐만 아니라 相關변수의 움직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衛星計定(Satellite Accounts)의 도입도 단계별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I. 序 論

1. 研究背景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會員國이 됨에 따라 국제적 지위향상과 함께 부차적으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통계자료의 提供義務¹⁾가 목전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의 福祉水準을 비교하여 왔지만 OECD통계와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의 가입을 1996년 12월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복지부문의 통계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OECD 會員國으로써 통계자료의 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正確히 산출하여 우리의 복지수준을 先進國과 比較·分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OECD의 社會保障費(Social Expenditure²⁾) 支出統計는 한 나라가 社會保障費로 1년간 지출한 總費用으로서 통계항목수는 總 13개 부문의

-
- 1) 통계제공의무는 제규범의 준수라는 일반적 의무에 속하며, ‘상호간에 정보교환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는 협정문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 2) OECD에서 사용하는 Social Expenditure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기업주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육아휴직과 법정퇴직금, 그리고 공공부조의 제공에 지출된 총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명확히 지칭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용어는 없으나, 오늘날의 사회보장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생활보장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Social이란 ‘복지’, ‘사회보장’을 의미하고 있어 ‘사회보장비’ 또는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급여비’ 등으로 부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社會保障費’로 부르기로 한다.

96개이며, 17年(1980~1996)間の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의 社會保障費 支出統計는 사회복지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현물·현금급여를 파악함으로써 個別會員國 국민의 복지수준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통계의 특징은 급여내용을 機能別로 분류·작성하고 있어 制度別로 분류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더구나 재원의 범위에서도 OECD는 公共部門의 재원뿐만 아니라 民間部門의 일부 재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공공부문에 국한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생산하여야 할 社會保障費 支出統計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社會福祉制度 外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처 그리고 국세청 등의 통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재원과 사회보험의 각종급여 그리고 민간부문의 급여를 파악하여 OECD 작성기준에 따라 우리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생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OECD에 가입하면서 갖게 된 국제통계의 提出義務도 時宜性있게 성실히 履行할 수 있을 것이다.

2. 研究目的 및 內容

본 연구의 목적은 OECD基準에 따라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를 蒐集·分析하여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을 算出하고 이를 OECD에 한국의 公式統計로 提出하는 데 있다. 이로써 통계제출 의무를 履行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국제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사회보장비의 規模와 構成內容을 OECD국가와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支出

水準과 給與內容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圖 I -1]은 사회보장비의 給與主體를 정부, 사회보험기관 그리고 민간부문으로 대별하여 구성형태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政府支出에는 社會福祉서비스에 대한 일반정부의 현물·현금급여와 低所得層 등에 대한 公共扶助가 있으며, 社會保險支出로는 4大社會保險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現物·現金給與를, 그리고 民間支出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급여로써(Benefit Towards Social Risk ?) 기업주들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강제적 급여(Is Benefit Provision Mandatory ?)로 현금급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政府支出中 低所得層 등에 대한 間接的인 급여인 조세감면, 요금할인·면제, 그리고 저금리의 지원·융자와 民間機關이 법률 등에 의하여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³⁾하는 금액은 除外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직 OECD가 이 부문까지 통계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 또한 민간지출중 企業年金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당연히 除外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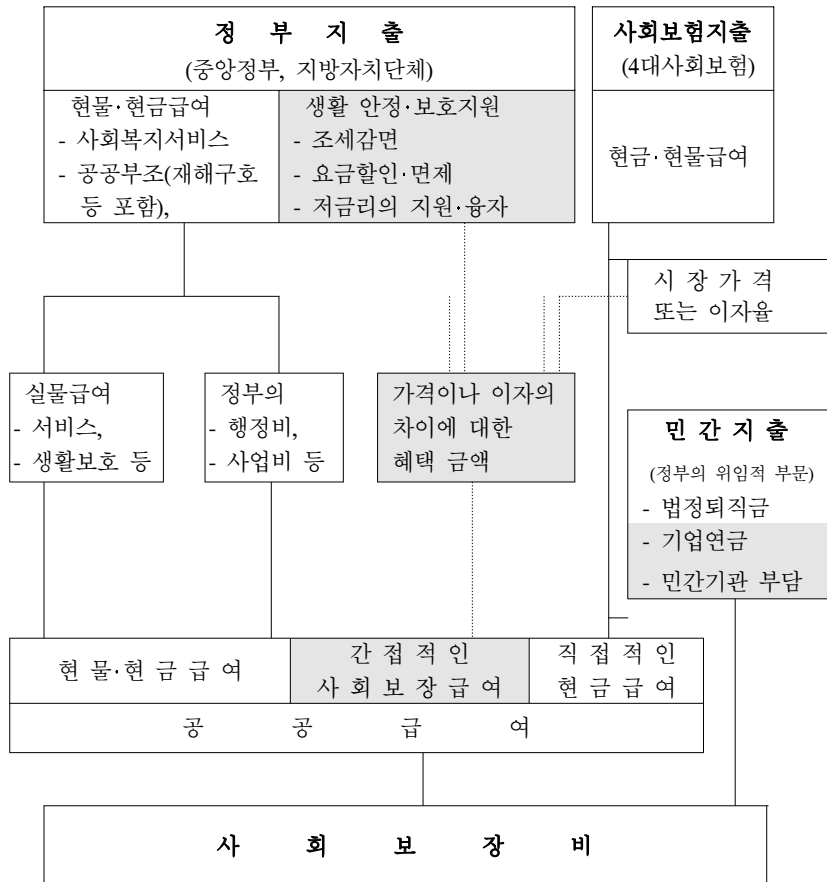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II 장에서는 OECD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定義와 각 부문별 概念을 정리하고 우리의 관련제도와 行政體系를 알아본다. III 장에서는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각 사회보장제도별 運營과 給與(또는 예산지원)를 알아봄으로써 생산현황과 행정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IV 장에서는 앞장의 산출과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을 提示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3) 예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납금면제에 따른 학교부담부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국내항공료 등의 요금할인부분을 들 수 있다.

4) 실제로 OECD에서는 간접적인 급여중 초기단계로 조세감면 대상자에 대한 조세환급금만의 산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장애인 및 보장구업체에 대한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6호)과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감면(70종품목, 1997. 1. 1)’제도는 있으나 포함여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다.

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주요 結果를 要約하고, OECD등 국제통계의 효율적인 향후 生産方案을 概略的으로 제시한다.

〔圖 I -1〕 社會保障費 構成圖



註: □부분은 OECD가 현재 통계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거나 본 연구에서 제외한 부분임.

資料: Schmähl, W., Sozialausgaben, *Handwörterbu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 1977의 내용을 토대로 재편집한 것임.

3. 研究方法

본 연구방법은 크게 統計資料 分析 및 文獻研究, 直接生産 方法, OECD사무국 관계자와의 事例研究(Case Study), 關係專門家 會議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가. 統計資料 分析 및 文獻研究

사회복지관련 각 행정부처의 세입세출예산서와 각 관리공단의 통계 연보(결산서) 등의 자료를 蒐集·分析하였으며 각 복지사업별 사업개요와 업무지침서 등의 관련문헌을 연구·분석하였다.

나. 直接生産 方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여러 부처에 分散·運營되고 있어 통계 생산을 위하여 該當部處에 통계조사표 作成을 委任하는 방법이 편리하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자가 각 행정부처에 통일된 통계작성기준과 조사표를 제시하여 위임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세부항목의 작성에各 作成者들의 自意性を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最小化하는 것이 결국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부처에 통계작성을 위임하지 않고 基礎統計資料를 모두 수집·분석하여 연구자가 直接統計를 생산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러나 생산해야 할 통계중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통계는 전적으로 勞動部 자료인만큼 본 연구에서 독자적으로 생산하였지만 OECD에 제공할 때에는 두 기관이 상호 검토하여 統一된 統計를 제공하였다.

다. OECD 關係者와의 事例研究(Case Study)

국제기구가 各 國家의 特性을 고려하여 통일된 통계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限界는 이해하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연구자로서는 보다 具體的인 작성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OECD가 제시하는 사회보장비 개념과 통계작성의 基準 및 例示가 충분하지 못하여 이를 참고로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社會保障體制가 선진국과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비 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資料의 限界나 우리나라의 制度를 각 機能別로 分類하는데 고심스런 내용에 대하여는 OECD關係者들⁵⁾과의 Case Study를 並行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들 관계자와의 끊임없는 質疑와 討議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작성기준에 適合하게 機能別로 分類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타기관에서 OECD에 제공하는 類似統計와도 비교·검토할 수 있었다.

라. 關係專門家 會議 등

사회보장비 산출과정에서 발생될 分類上의 誤謬나 관련 福祉制度의 範圍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계생산 과정에서 관계전문가 회의를 여러차례 실시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政府의 세입세출예산의 最下位 구분단위인 ‘細目’과 사회보험의 各 給與別 자료를 OECD의 關心領域別 또는 細部關心領域別로 分類한다는 것은 곧 통계의 信賴性 및 國際比較可能性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관계전문가는 當院의 研究陣과 社會福祉學科의 教授, 保健福祉部

5) ‘駐 OECD代表部’의 정형선 1등서기관과 ‘OECD사무국 사회정책과’의 W. Adema (Directorate for Education,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등임.

情報化擔當官室로 구성되었으며, ‘積極的 勞動市場政策’과 ‘保健部門 公共支出’의 통계결과에 대하여, 전자는 勞動부와 후자는 당원에서 OECD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限時的으로 발족한(’98) “OECD통계실 무작업반”의 國民醫療費팀과의 회의를 병행하였다.

4. 研究의 限界點

본 연구에서 政府財源은 豫算資料를 이용하였으며, 4大社會保險과 民間部門의 財源은 決算資料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성격상 정부재원도 實際支出된 결산자료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이 자료가 事業內容別로 細分化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비통계를 세부관심영역별로 算出할 수 있는 豫算資料를 사용하였다. 資料蒐集의 限界나 給與의 性格으로 산출과정에서 除外된 制度(또는 給與)로는 地方自治團體의 自體財政에 의한 地方費와 民間部門의 一部制度(산전·산후 휴가급여, 상병휴가 기간 동안의 소득급여), 조세환급금, 그리고 의료보험의 현금급여가 있음을 밝혀둔다. 失業給與에 포함된 법정퇴직금은 退職事由別 基礎資料의 不在로 停年退職者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함으로써 一部 過大計上(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이직자중 정년퇴직자는 1.2%에 불과함)되었다. 過去 10年間(1980~1989)의 통계는 資料의 限界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最近 7年間(1990~1996)의 통계만 생산하였다.

II. OECD의 社會保障統計 分類體系와 研究範圍

1. 社會保障費의 定義⁶⁾

OECD에서 公式的으로 사용하고 있는 社會保障費(Social Expenditure)란 “公共 또는 民間部門이 家口 또는 個人에게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社會보장관련 現物 또는 現金給與”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부문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지출에 한하고 있으며, 特定財貨 및 서비스의 直接的인 支給과 個人的인 契約이나 移轉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OECD의 社會保障費 支出統計는 社會보장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SOCX: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안에 수록되어 있다. SOCX의 작성목적은 OECD會員國들이 경제 및 사회정책과의 연관을 꾀하는데 있어서 數量的 支援을 하기 위한 것으로 巨視的 次元에서 社會보장지출의 傾向을 모니터하고 동 지출의 구성에 관한 變化를 分析하는데 有用하게 活用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1960~1990년을 다루고 있지만, 1980년까지는 '80년대 초에야 비로소 통계자료를 일괄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이후는 定期的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가 中斷되기도 하였다.

이를 補完하기 위하여 1980~1993년까지의 통계를 再蒐集하여 報告書を 發刊(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6)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pp.1~16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Provisional Version -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17, 1996)하였으며, 25개 회원국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OECD가 요구하는 社會保障統計의 分類에 대하여 알아본다.

OECD에서는 사회보장비의 통계항목을 13가지(表 II-1 참조)로 大分類하여 각각의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토록 勸告하고 있다. 그 13가지 대상통계들의 各各에 대하여는 뒤(본장 2절 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類似保障 內容別로 묶어보면 아래와 같이 9개의 類型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老齡·廢疾·死亡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老齡·障礙·遺族給與, 둘째, 疾病으로 인한 소득단절이나 醫療費支出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疾病·保健給與, 셋째, 勤勞者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職業病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勤勞災害給與, 넷째, 失業으로 인한 所得中斷에 대하여 일정소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失業給與가 있다. 다섯째, 자녀 또는 기타 피부양자가 있는 家族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家族給與, 여섯째, 노인과 장애인 및 가족단위를 지원하기 위한 福祉서비스, 일곱째, 신규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 여덟째, 低所得階層에게 住居費用을 補助해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등의 住居給與, 마지막으로 어떤 사정으로 위의 프로그램에서 除外된 사람에게 지출되는 其他給與 등이 있다.

OECD의 13개의 社會保障部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2개의 關心領域과 41개의 細部關心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여야 할 사회보장비의 統計項目數는 部門에서 細部關心領域까지 총 96개 項目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固定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變化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으며 통계항목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현재 OECD에서는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가칭 OECD, Category 12.2)⁷⁾과 교육에 대한 公共支出(Public Education, 가칭 OECD, Category 14)항목에 대하여도 새로운 關心領域의 설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후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통계항목중 勞動市場의 訓練(OECD, Category 9.1)과 명확한 구별 때문에 그들은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OECD의 사회보장비 지출의 범위와 영역을 보면 사회보장,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狹義의 社會保障範圍에, 公衆保健과 住宅, 法律에 의하여 강제되는 企業福祉를 추가한 폭 넓은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表 II-2 참조).

7) 이는 OECD가 제출을 요구하는 사회보장비의 固有番號이다. 이하부터는 ‘고유번호가 1번인 경우’에 (1) 또는 (Category 1)과 같이 표기한다.

〈表 II-1〉 OECD 社會保障費 項目의 分類

(1996년 기준)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1. 노령연금 급여	1.1 일반노령연금 1.2 공무원노령연금 1.3 재향노령연금 1.4 기타노령연금급여 1.5 조기퇴직연금	1.1.1 개인급여 1.1.2 배우자보충급여 1.1.3 아동보충급여
2. 장애연금 급여	2.1 장애연금 2.2 공무원장애연금 2.3 아동장애연금 2.4 재향군인장애연금 2.5 기타장애연금급여	2.1.1 개인급여 2.1.2 배우자보충급여 2.1.3 아동보충급여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4. 질병급여		
5. 노인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5.1 시설보호 5.2 가정봉사서비스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5.4 기타현물급여	5.1.1 아동 5.1.2 65세 미만의 성인 5.1.3 65세 이상의 성인 5.1.99 기타 5.2.1 아동 5.2.2 65세 미만의 성인 5.2.3 65세 이상의 성인 5.3.1 아동 5.3.2 65세 미만의 성인 5.3.3 65세 이상의 성인 5.4.1 아동 5.4.2 65세 미만의 성인 5.4.3 65세 이상의 성인
6. 유족급여	6.1 유족연금 6.2 공무원유족연금 6.3 유족현물급여 6.4 기타유족연금급여	6.1.1 배우자연금 6.1.2 고아연금 6.1.3 기타연금

〈表 II-1〉 계 속

부 문	관 심 영 역	세 부 관 심 영 역
7. 가족현금 급여	7.1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7.2 가족지원급여 7.3 기타 피부양인 7.4 편부모 7.5 기타가족 7.6 육아휴직	
8. 가족복지 서비스	8.1 공식주간보호 8.2 개인서비스 8.3 가족서비스 8.4 기타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훈련 9.2 청소년관련 사업 9.3 고용보조프로그램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9.1.1 현금 9.1.2 서비스 9.2.1 현금 9.2.2 서비스 9.3.1 현금 9.3.2 서비스 9.4.1 현금 9.4.2 서비스
10. 실업급여	10.1 실업보상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10.3 퇴직수당	
11. 보건부문공공지출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12. 주거급여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12.1.1 노인 12.1.2 장애인 12.1.3 가족 12.1.4 기타
13. 기타급여	13.1 저소득 13.2 원주민 13.3 기타 13.4 이민자 및 망명자	13.1.1 현금급여 13.1.2 서비스 13.2.1 현금급여 13.2.2 서비스 13.3.1 현금급여 13.3.2 서비스 13.4.1 현금급여 13.4.2 서비스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表 II-2〉 社會保障의 範圍와 領域

협회의 사회보장	(1) 사회 보험	(2) 공공 부조	사회 (3) 복지 서비스			
OECD의 사회보장비	(1)	(2)	(3)	(4) 공공 보건	(5) 주 택	(6) 법률에 의 한 기업복지

2. 社會保障費의 分類體系

본절에서는 OECD가 통계작성을 요구하는 13개부문의 各 概念과 分類體系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아가 13개부문의 하부단위인 42개의 關心領域의 체계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 OECD

1)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OECD가 규정하고 있는 老齡現金給與(1)란 퇴직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제반 현금적 급여를 의미한다. 본 급여는 一定年齡(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시장에서 퇴직한 경우의 對替所得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早期退職者는 실업수당이나 다른 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급여에서 제외하고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노령현금급여(1)의 5개 관심영역에는 ‘일반노령연금(1.1)’, ‘공무원노령연금(1.2)’, ‘재향노령연금(1.3)’, ‘기타노령현금급여(1.4)’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연금(1.5)’으로 구성되어 있다.

2) 障礙現金給與(Disability Cash Benefits)

障礙現金給與(2)란 勞動市場에서 활동할 수 없는 完全 혹은 部分障礙者에게 지급하는 모든 現金給與를 의미한다. 이때 障礙란 先天性障礙나 事故 또는 疾病으로 인한 장애⁸⁾를 뜻한다. 따라서 現物給與의 경우는 본 급여항목에서 제외되며, 이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産業災害 및 疾病으로 인한 障礙의 경우에도 본 급여에서 제외하며 이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3)’로 분류하고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장애연금급여(2)의 5개 관심영역에는 ‘장애연금(2.1)’, ‘공무원장애연금(2.2)’, ‘아동장애연금(2.3)’, ‘재향군인장애연금(2.4)’, 그리고 ‘기타장애연금급여(2.5)’로 이루어져 있다.

3)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ccupational Injury & Disease)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3)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해 被害勤勞者와 그 家族에게 지급되는 모든 現金給與를 의미하며 예로서 有給疾病休暇, 特別手當 그리고 年金 등을 들 수 있다. OECD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은 없다.

4) 疾病給與(Sickness Benefits)

疾病給與(4)란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제외한 一般疾病으로 인한 傷病其間 동안의 所得中斷을 補償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OECD에서는 질병급여에도 위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와 마찬가지로

8) 본 연구에서는 ‘장애’와 ‘장해’의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행에 따라 年金給與에 대하여는 法律用語인 ‘장해(연금)’로, 社會福祉서비스의 對象 등에 대하여는 ‘장애(자)’로 표기하였다. 다만 OECD에서는 본 급여대상으로 선천성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금가입중에 발생한 장해로 제한하고 있다.

가지로 關心領域과 細部關心領域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5)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晝間保護, 住居施設(예: 양로원), 가정봉사원제도, 再活施設서비스 그리고 기타현물 급여 등에 지출되는 사회보장비를 의미한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4개 關心領域에는 ‘시설보호(5.1)’, ‘가정봉사서비스(5.2)’,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 그리고 ‘기타현물 급여(5.4)’로 구성되어 있다.

6) 遺族給與(Survivors)

遺族給與(6)란 가구주의 사망시 배우자와 피부양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유족급여(6)’의 4개 關心領域에는 ‘유족연금(6.1)’, ‘공무원유족연금(6.2)’, ‘유족현물급여(6.3)’, 그리고 ‘기타유족현금급여(6.4)’가 있다.

7) 家族現金給與와 家族福祉서비스

(Family Cash Benefits and Family Services)

家族現金給與(7)와 家族福祉서비스(8)는 家族單位(독신가구 제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現金給與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一般的으로 子女養育費나 其他 被扶養者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가족현금급여(7)’의 6개 關心領域에는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7.1)’, ‘가족지원급여(7.2)’, ‘기타피부양인에 대한 급여(7.3)’, ‘편부모에 대한 현금급여(7.4)’, ‘기타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7.5)', 그리고 '육아휴직급여(7.6)'가 있다.

8)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에는 교육비를 제외한 노동시장활성화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사회보장비가 해당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國家 등이 新規就業者 또는 失業者 등이 就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所得能力을 增加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급여의 종류에는 新規就業者를 위한 公共職業事業, 勞動市場의 訓練, 失業者에 대한 雇傭促進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障礙人을 위한 特定프로그램이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9)'의 5개 關心領域에는 '노동시장의 훈련(9.1)', '청소년관련사업(9.2)', '고용보조프로그램(9.3)',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9.4)',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행정(9.5)'이 있다.

9) 失業給與(Unemployment)

失業給與(10)는 失業으로 인한 所得中斷을 補償하는 차원의 모든 現金給與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실업자가 勞動市場에 의해 早期退職하는 경우 年金受給年齡 以前이라도 연금을 수급할 뿐만 아니라 解雇時支給하는 退職手當을 포함한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실업급여(10)'의 3개 關心領域에는 '실업보상(10.1)',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10.2)', 그리고 '퇴직수당(10.3)'으로 구성되어 있다.

10) 保健部門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保健部門의 公共支出이란 공공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보건기

관의 서비스 생산 또는 구입에 공공부문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公共이라 함은 中央政府 및 地方自治團體, 保健委員會와 社會保險機關을 의미한다.

一般政府支出로는 保健行政部門, 생의학·의약품의 研究開發部門, 軍人·學校·矯導所의 保健서비스부문, 의료서비스공급자에 대한 政府補助, 의료시설부문에 대한 公共投資支出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기관 지출로는 入院患者治療, 外來診療 및 醫藥品支拂費用 등을 포함하고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보건부문(11)’의 관심영역에는 유일하게 ‘保健部門의 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11.1)’ 뿐이며 세부관심영역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11) 住居給與(Housing Benefits)

주거급여(12)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低所得階層의 住居費用을 補助해 주기 위하여 개인에게 지원하는 賃貸補助金 또는 其他現金給與를 의미한다. 한편 중앙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지방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받을 策定賃貸料가 낮아질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하여 OECD에서는 새로운 關心領域의 설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계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주거급여(12)’의 관심영역에는 위의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과 마찬가지로 唯一하게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12.1)’만 있다.

12) 其他給與(Other Contingencies)

其他給與(13)란 어떤 事情으로 인하여 正規的인 社會保障프로그램에서 除外된 사람 또는 다른 급여프로그램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社會保障給與를 의미한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기타급여(13)’의 4개 關心領域에는 ‘低所得(13.1)’, ‘原住民(13.2)’, ‘其他(13.3)’, 그리고 ‘移民者 및 亡命者(13.4)’로 구성되어 있다.

나. 우리나라

OECD분류체계에 따라 앞에서 살펴본 13개부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련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나아가 우리의 관련제도를 機能別로 더 細分化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13個部門의 하부단위인 42個의 關心領域과 41個의 細部關心領域까지 관련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老齡現金給與(Old Age Cash Benefits)

OECD의 老齡現金給與(1)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각 퇴직연금이 있다. 관심영역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一般老齡年金(1.1)’에는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가급연금 포함)과 반환일시금을, ‘公務員老齡年金(1.2)’에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⁹⁾의 퇴직연금 등을, ‘在鄉老齡年金(1.3)’에는 군인연금의 퇴직연금 등이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급여중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퇴직급여가산금 등은 위의 두 가지 關心領域(1.2, 1.3)에 각각 포함시켰다. ‘早期退職年金(1.5)’에는 공직직역연금의 조기퇴직자에 대한 退職年金¹⁰⁾과 국민연금의 早期老齡年金¹¹⁾을 고려해 볼 수 있

9) 사립학교교원연금은 OECD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령현금급여(1)의 5개 관심영역중 관련성이 있는 관심영역이 없어 연금성격으로 보아 ‘노령공무원연금(1.2)’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하의 장애연금급여(2), 유족급여(6)도 같다.

10) 20년 이상 근속한 후 정년퇴직이전에 이직한 자는 퇴직연령과 무관하게 수령하는 연금이다.

11) 현재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제도의 특성과 OECD의 요구기준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각 통계연보에 자료가 수록되어 있지 않아 각 관리공단의 별도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其他老齡現金給與(1.4)’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제도가 없다. 위의 다섯 개의 關心領域중 유일하게 一般老齡年金(1.1)에만 있는 細部關心領域에는 개인급여(1.1.1), 배우자보충급여(1.1.2), 그리고 아동보충급여(1.1.3)가 있다. 이들 細部關心領域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급여(1.1.1)에는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등을, 배우자보충급여(1.1.2)와 아동보충급여(1.1.3)에는 국민연금의 가급연금을 들 수 있다. 참고로 가급연금은 수급권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하여 노령·장애·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추가하는 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연금을 細部關心領域別로 분류하지 못하고 主된 급여인 老齡·障礙·遺族年金에 包含하였으며 향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協助로 별도의 자료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2) 障礙現金給與(Disability Cash Benefits)

OECD의 障礙現金給與(2)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의 각 장애연금이 있다. 關心領域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OECD의 ‘장애연금(2.1)’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이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장애연금(2.2)’에는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보상금을, ‘재향군인장애연금(2.4)’에는 군인연금의 상이연금과 국가보훈사업의 상이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기타장애현금급여(2.5)’와 ‘아동장애연금(2.3)’은 우리나라에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위의 다섯 개의 관심영역중 유일

하게 障礙年金(2.1)에만 있는 細部關心領域에는 개인급여(1.1.1), 배우자보충급여(1.1.2), 그리고 아동보충급여(1.1.3)가 있다. 이들 細部關心領域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인급여(1.1.1)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등을, 배우자보충급여(1.1.2)와 아동보충급여(1.1.3)에는 국민연금의 가급연금을 들 수 있다. 장애연금의 加給年金도 위의 一般老齡年金과 같게 분류하였다.

3)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ccupational Injury & Disease)

OECD의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3)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勞動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다. 이 보험의 給與種類에는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그리고 휴업급여 등이 있다. 한편 위의 療養給與는 ‘保健部門의 公共支出(11)’에 포함하였다.

4) 疾病給與(Sickness Benefits)

OECD의 疾病給與(4)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는 없다. 다만 OECD의 질병급여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의료보험의 상병수당(1978년 폐지)과 각 사업장의 傷病休暇給與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후자의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의 두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험의 급여 중 傷病手當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78년에 廢止되었다. 참고로 상병수당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醫療支出을 하게 됨에 따라 家計의 經濟的 어려움을 보험자가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입원 등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음으로 傷病休暇給與는 각 사업장의 복무규정(노사간의 단체협약 포함)에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許容하고 있는 病暇認定其間을 보면, 年間 6日 以下는 연차

휴가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最長 60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경우는 6個月까지 許容하고 있는 추세이다.

5)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Services for Elderly & Disabled People)

OECD의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老人福祉施設支援, 在家老人福祉事業支援, 장애인시설보호서비스,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그리고 기타의 현물급여가 있다. 關心領域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施設保護(5.1)’에는 정부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老人施設保護와 障礙人福祉施設保護, 障礙人職業訓練이 있다. ‘家庭奉仕서비스(5.2)’에는 재가노인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양성사업과 가정봉사원과견사업이, 또한 재가장애인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자본이전이 해당된다. ‘晝間保護와 再活서비스(5.3)’에는 재가노인주간보호사업, 재가장애인주간보호, 장애인민간단체지원, 재활원운영, 재활훈련, 그리고 재활병의원의 운영지원과 재활치료를 들 수 있다. 이들 중 재가노인주간보호사업과 재가장애인주간보호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가노인주간보호사업에는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재가장애인주간보호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¹²⁾이 있다.

‘其他現物給與(5.4)’에는 노인에 대한 경로승차권제도와 재가장애인에 대한 현물급여를 들 수 있다. 경로승차권제도는 1982년부터 65세 이상의 전노인에게 월 12매 이상의 승차권을 現物交付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어 전액 地方費負擔事業으로 운영되

12) 특히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는 사회복지관부설봉사센터(전국 172개, '96년기준)와 사회복지협의회부설봉사센터(전국 15개, '96년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現金으로 支給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기타현물급여(5.4)’에 해당하지만 OECD분류기준에 따른 급여내용을 고려하면 보건의료서비스에 더 가까워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11)’에 포함하였다. 在家障礙人에 대한 現物給與에는 장애인보장구교부, 장애인의료비지원,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서비스)이 여러 관심영역에 해당되지만 이를 해당영역별로 각각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한 단위 상위영역인 部門領域에 포함시켰다. 예를들면,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지원’사업은 두 개의 관심영역 즉 ‘시설보호(5.1)’와 ‘晝間保護 및 再活서비스(5.3)’의 내용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關心領域別로 분류할 수 없어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部門領域에 포함시켰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의 내용으로는 직업교육, 교과교육, 치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일부는 통학하고 있다.

6) 遺族給與(Survivors)

OECD의 遺族給與(6)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가보훈연금의 각 유족연금이 있다. 關心領域을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遺族年金(6.1)’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국가보훈의 보훈보상금이 해당된다. ‘公務員遺族年金(6.2)’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의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遺族現物給與(6.3)’와 ‘其他遺族現金給與(6.4)’는 도입되지 않았다. 위의 네 個의 關心領域중 유일하게 유족연금(6.1)에만 있는 細部關心領域중 孤兒年金(6.1.2)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遺族年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遺族

年金을 18歲 未滿의 子女만이 수령하는 경우 OECD의 孤兒年金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앞의 老齡現金給與(1)의 早期退職年金처럼 우리 制度의 특성과 OECD의 요구기준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7) 家族現金給與와 家族福祉서비스

(Family Cash Benefits and Family Services)

OECD의 家族現金給與(7)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저소득모자가정의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가정의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의 학자금지급 등이 있다. 關心領域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兒童에 대한 家族手當(7.1)’에는 저소득모자(부자, 부녀가정 포함)가정의 아동양육비지원을, ‘家族支援給與(7.2)’에는 저소득모자(부자, 부녀가정 포함)가정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학비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兒童이나 家族에게 지원하는 給與制度는 아직 없으나, 저소득편부모가정에 국한된 아동양육비나 자녀학비지원은 OECD의 家族現金給與((7)에 가장 近接한 給與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가족수당과 각 직장의 가족수당을 가족현금급여에 포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현금급여가 가족단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라는 측면에서는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족수당을 엄밀히 살펴보면 명목상의 임금성격이 더 강하며 또한 법률로 강제된 사용주의 지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 포함여부에 대한 異見이 있을 수 있으므로 向後論議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통계생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국세청에 基礎資料가 全無하여 통계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包含與否와 함께 生産方法에 대한 논의가 必要

하다고 본다.

‘其他被扶養人에 대한 급여(7.3)’와 ‘편부모에 대한 現金給與(7.4)’, 그리고 ‘其他家族에 대한 현금급여(7.5)’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育兒休職給與(7.6)’에는 출산유급휴직이 해당된다. 이 유급휴직에 대한 재원은 雇用主가 法律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基礎資料가 없어 통계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다.

8) 家族福祉서비스(Family Services)

家族福祉서비스(8)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低所得層 보육아동의 보육시설이용지원, 아동복지시설보호의 지원, 부녀복지시설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아동건전육성사업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이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가족복지서비스(8)’의 4개 關心領域에는 ‘공식주간보호(8.1)’, ‘개인서비스(8.2)’, ‘가족서비스(8.3)’, 그리고 ‘기타서비스(8.4)’가 있다. 關心領域을 順序別로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공식주간보호(8.1)’에는 저소득층 보육아동의 보육시설이용지원과 아동시설보호지원, 모자보호 및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을 들 수 있다. ‘개인서비스(8.2)’에는 사회복지관운영을, ‘가족서비스(8.3)’에는 아동건전육성이 해당된다. ‘기타서비스(8.4)’에는 가정복지, 고아에 대한 아동건전육성,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을 들 수 있다.

9)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OECD의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9)과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勞動部의 고용보험과 고용훈련 및 지원사업,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사업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훈련과 재활사업이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5개 관심영역 중 네 번째까지의 細部關

心領域에 대하여는 ‘現金給與’의 통계를 각각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해당제도가 없으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따라서 關心領域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現物給與(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훈련(9.1)’에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능력개발수당,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과 단기훈련,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비용이 해당된다. ‘청소년관련사업(9.2)’에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인력양성훈련이, ‘고용보조프로그램(9.3)’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이 해당된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9.4)’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촉진훈련과 직업재활센터건립 및 훈련기관보조,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운영비지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행정(9.5)’에는 고용보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비지원,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상비보조,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지방노동관서 등의 운영비를 들 수 있다.

10) 失業給與(Unemployment)

OECD의 失業給與(10)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勞動部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各 事業場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들 수 있다. 關心領域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실업보상(10.1)’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직장의 경영상의 이유이든 노동시장의 이유이든 묻지 아니하고 他意에 의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실업보상(10.1)’의 관심영역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10.2)’의 관심영역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실업급여수령자의 失業類型을 分類할 수 있는 基礎資料가 없어 ‘실업보상(10.1)’에만 급여금액을 포함하였다. 끝으로 ‘퇴직수당(10.3)’에는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제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이 OECD가 요구하는 퇴직수당(Severance Pay)과 반드시 一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제도 중 급여내용과 性格面에서 볼 때 類似하면서도 唯一한 制度임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III장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 급여는 법률에 의하여 고용주가 強制的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한편 퇴직자의 生活安定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의 실업급여부문에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상하는 실업보상(10.1)뿐만 아니라 해고시 지출하는 퇴직수당(10.3)까지 포함하고 있어 一般的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失業給與의 범위보다 넓음을 알 수 있다.

11) 保健部門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OECD의 保健部門公共支出(11)에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그리고 보건부문의 정부지출이 해당된다. 關心領域을 보면, 유일하게 ‘보건부문의 공공지출(Public Expenditure on Health, 11.1)’뿐이며 細部關心領域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면,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1)’에는 政府部門과 社會保險部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부문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매년 추계하는 국민계정의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중 ‘保健支出’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最終消費支出, 社會保障受惠金 및 社會扶助金¹³⁾, 總固定資本形成, 그리고 資本移轉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國民計定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동안 누락되었던 國防部の 보건의료비¹⁴⁾와 法務部の 교정시설재소자 의료비¹⁵⁾, 保健福祉部

13) 사회복지조금에는 장애자의료비 부담, 미혼모분만비, 영세민의료보험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 재가노인지원의 건강진단비¹⁶⁾를 추가로 포함하면 정부부문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社會保險部門으로는 의료보험(의료보호 포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포함된다. 먼저 醫療保險을 보면 직장,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으며, 給與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現物給與에는 요양급여와 분만급여가 있으며 現金給與에는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분만수당, 건강진단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現物給與만 포함하고 現金給與는 除外하였다. 그 이유는 현금급여가 保健醫療費的 性格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과 國際적으로 現金給與는 包含하지 않고 있다는 趨勢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현금급여의 포함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公共扶助의 醫療保護制度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재해구호대상자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소요되는 치료비용에 대하여 4일 이상의 요양기간부터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급여이다. 위에서 살펴본 각 급여제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14) 누락원인을 살펴보면, 정부의 예산편성이 목적별인 ‘國防’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민계정담당자가 예산자료에서 세부기능 중의 하나인 ‘보건의료비’의 세목까지 세분화 할 수 없었던 것과 예산자료의 일부 미공개에 따른 자료수집의 한계로 생각된다. 이러한 2가지 원인으로 그동안 국민계정에 국방부의 보건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본다.
 - 15) ‘의료비’예산의 “세목”이 “교도행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계정의 ‘보건지출’에 포함하지 못하고 ‘일반공공행정’으로 포함됨에 따라 그 동안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다.
 - 16) 이 예산도 목적별로 분류되다보니 국민계정의 ‘보건지출’에 포함하지 못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포함됨에 따라 그 동안 누락되었다고 본다.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

국민계정 + 의료보험 + 의료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
군인보건의료비(국방부) +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법무부) +
생활보호의 재가노인지원중 노인건강진단비

12) 住居給與(Housing Benefits)

OECD의 住居給與(12)와 관련된 우리의 제도는 없다. 다만, 中央政府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지방정부나 비영리조직 등에게 財政的 支援을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받을 책정임대료가 낮아질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하여 OECD에서는 새로운 關心領域의 설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계생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建設交通部の 賃貸住宅建設事業의 財政支援을 들 수 있다.

13) 其他給與(Other Contingencies)

OECD의 其他給與(13)에 관련된 우리의 제도로는 공공부조제도(단, 의료보호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에 포함)와 귀순북한동포보호제도, 재해구호, 의사상자예우 등이 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외의 제도들은 一般的으로 公共扶助에 包含하기도 하고 別途로 分離하기도 하지만 본 研究의 目的은 국제기준에 따른 統計生産에 있음으로 본 급여에 포함하였다. 관심영역을 우리의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저소득(13.1)’에는 脆弱階層支援(重症障碍人生計補助手當, 老齡手當, 少年少女家長保護 등), 生計保護, 教育保護 등을, ‘기타(13.3)’에는 義死傷者禮遇와 災害救護事業, 그리고 부랑인시설보호가 해당된다. 그리고 ‘이민자 및 망명자(13.4)’에는 歸順北韓同胞保護制度가 있다. 여기에는 정착금, 보로금, 주거지원,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의

현금급여 또는 서비스제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원주민(13.2)’의 關心領域은 우리나라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이다.

3. 社會保障費의 算定範圍

가. OECD

OECD 社會保障費의 산정범위는 公共部門인 政府(中央, 州, 地方政府, 法律에 의하여 설립된 社會保險機關 포함)의 支出과 民間部門인 雇用主가 法律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支出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민간부문 중 雇用主의 任意的인 사회지출비를 除外하고 있으나 앞으로 OECD가 이들 항목을 추가할 것으로 豫定하고 있어 재원의 산정범위는 더 擴大될 것 같다.

OECD의 사회보장비 산정범위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公共部門의 行政費用과 民間部門의 市場去來 및 家口間 移轉支出은 除外하고 있다. 먼저, 行政費用(Administration Costs)은 급여제공을 위해 發生하는 費用으로써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行政費用의 種類에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요된 일반적인 비용, 수급자 등록관리비, 급여제공에 따른 비용, 각출료와 기금 등의 징수와 모금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감독과 재보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다. 그러나 모든 部門에서 行政費用이 除外되는 것이 아니라, 積極的 勞動市場프로그램(ALMP: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9))과 保健部門의 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 (11))의 두 部門에서 行政費用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행정비용은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一部分(예: 직업상담이나 병원운영비 등)으

로 보기 때문이다.

ALMP(OECD, Category 9)의 경우 행정비용이 포함되는 또 다른 이유는 ALMP가 수혜자의 구직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公的基金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중 일을 하고 있거나 훈련중인 수혜자에 대한 지출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상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출을 제외시켜야 되나 현실적으로 자료의 분리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비로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行政費用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정신장애자에 대한 재가보호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증축에 제공될 정부보조금도 사회보장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社會保障費의 산정범주에서 市場去來와 家口間 移轉支出은 제외된다. 예를들면, 임금과 같이 고용주와 근로자간 市場去來(Market Transaction)에 의한 비용과 개인이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총구입액 중 상환액만을 사회보장비 지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아 제외한다. 하지만 OECD가 제공한 통계의 각 항목별 개념과 작성예시가 微弱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통계를 생산하기는 어려워 駐 OECD代表부와 OECD사무국 사회정책과에 여러 차례 質疑하여¹⁷⁾ 研究에 參考하였다.

나. 우리나라

본 연구에서 우리 제도의 包括範圍로는 4大社會保險, 公共扶助, 그리고 社會福祉서비스로 構成된 公共部門과 雇用主가 法律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民間部門으로 하였다. 따라서 財源의 範疇로는

17) OECD본부의 W. ADEMA에게 사회보장비의 개념과 예시관련 참고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앞의 전제서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 그는 오히려 Case Study를 제의하여 왔다. 그 후 통계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電子郵件를 통하여 여러차례 질의하였다. 특히 당원 방문때(1997. 1. 23)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 質疑하기도 하였다.

4大社會保險의 급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一般會計, 農漁村特別會計, 관련 特別會計와 基金 그리고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法定退職金으로 한다.

4大社會保險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公共扶助에는 생활보호, 재해보호, 의료보호외에 상이군인,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社會福祉서비스에는 要保護對象者(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부랑인 등)에게 상담, 재활, 시설입소, 직업보도 등을 행하는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고용서비스도 포함시켰다.

<表 II-3>은 本 研究에 사용된 4大社會保險의 급여종류, 一般政府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지출한 일반회계·관련기금, 그리고 民間部門이 지출한 법정퇴직금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 소관부처 등은 보건복지부 이 외에도 8개 행정기관과 각 관련공단, 그리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국 給與(支出)主體는 政府, 社會保險機關(管理公團 포함), 그리고 使用者로 정리된다.

[圖 II-1]은 OECD의 社會保障費 部門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간의 聯關關係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OECD의 分類와 우리 제도간의 聯關關係를 보면, 사회보험은 1:1의 대응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공부조는 1:多의 複雜한 聯關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社會保障費支出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國家補助金과 社會保險의 給與가 二重計算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사회보험기관의 運營支援을 위한 국가보조금 중 一部가 社會保險의 給與로 補助되는 金額은 이중계산될 수 있어 財源側面에서 국가보조금은 제외하고 支出側面에서 사회보험의 給與만 포함하였다. 그리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중앙정부예산은 물론 地方自治團體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자치단체고유사업 포함)는 資料蒐集의 限界로 산출과정에서 除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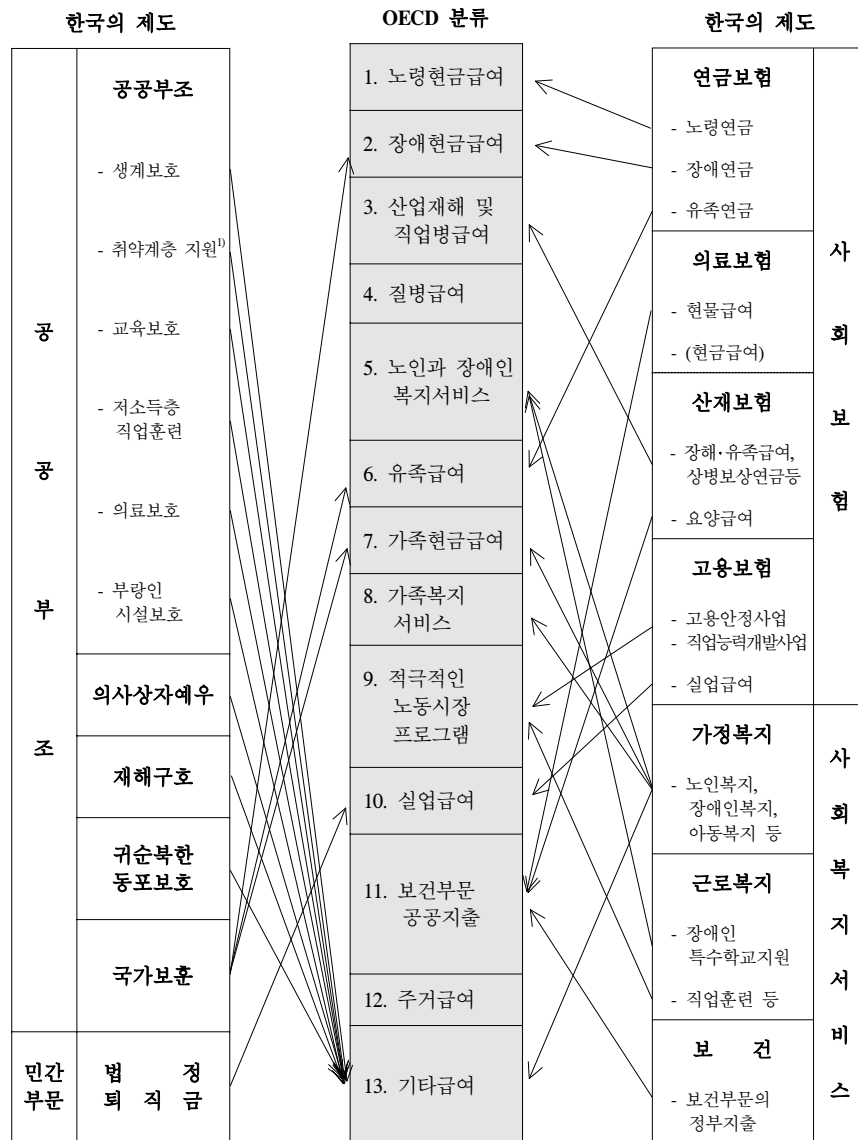
〈表 II-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算定範圍

사 회 보 장 제 도			소 관 부 처	일 반 회 계·기 금 / 급 여 종 류
사 회 보 장 제 도	연 금	공무원연금	총 무 처	·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군인연금	국 방 부	·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사학연금	교 육 부	·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의 료 보 험	직장·지역의보	보건복지부	· 현물급여
		공·교의보	보건복지부	· 현물급여
	산 재 보 험		노 동 부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고 용 보 험		노 동 부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공 공 부 조		보건복지부	· 의료보호, 생활보호, 교육보호, 부랑인시설보호, 일시구호 등 · 사회복지사업기금
			내 무 부	· 이재민, 주택복구비
			농 립 부	· 재해대책무상양곡대지원(95) ¹⁾
			보 훈 처	· 보상금급여, 교육보호, 보훈병원진료비보상, 단체운영지원
			노 동 부	·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사 회 보 장 제 도 의 기 타 부 속	사 회 보 장 제 도 의 기 타 부 속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 국민계정(정부지출, 투자)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 사회행정, 장애인복지, 재활원, 가정복지
		법 무 부		· 교정시설의 재소자 의료비
		국 방 부		· 군인보건의료서비스
		교 육 부		· 장애인복지 — 특수학교 교육진흥비
	고 용 보 장 제 도	노 동 부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전산관리, 각 지방노동관서 · 장애인직업훈련 실시기관지원
		산업인력 관리공단		· 정부출연금 — 능력개발, 시설확충, 인력관리, 한국직업훈련학원지원 등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 정부출연금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 — 기술훈련, 고용환경개선, 고용촉진, 교육홍보, 시설확충
	법 정 퇴 직 금		노동부 (국세청)	·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註: 1) 정부의 재해구호지원금중 농림부의 '재해대책무상양곡대지원' 예산은 1990년 이후 유일하게 1995년만 책정되어 있어 산출과정에서 省略하였음. 1995년도 예산은 43억원 임.

2) ()은 통계생산 기관임.

〔圖 II-1〕 OECD 分類와 우리의 社會保障制度間の 聯關關係



註: ()는 제외급여임.

1) 장애인생계보조수당, 노령수당, 소년소녀가장보호 포함.

하였다. 다음으로 一般政府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공무원의 人件費 등의 行政費用을 포함한 정부세출‘目’의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政府의 歲出 ‘目’은 크게 人件費, 物件費, 經常移轉, 資本支出經費, 융자금 및 출자금, 보전지출, 그리고 政府內部去來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表 II-4 참조), 包含範圍는 다음과 같다.

첫째, 人件費는 일반적으로 제외하였으나 서비스를 直接 제공하는 機關(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구분없이)은 포함하였다. 인건비를 제외한 行政費用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직접제공기관은 모두 포함하였으나 일부제공기관은 一部項目에 국한하여 포함¹⁸⁾하였다. 그 이유는 OECD가 ALMP(9)와 보건부문에 대한 公共支出(11)에는 행정비용을 서비스의 일부분으로 보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物件費중 官署運營費¹⁹⁾는 포함한 반면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제외시켰다. 왜냐하면 관서운영비는 ALMP(9)와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11)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印刷物 및 油印物의 製作에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서비스제공과 관련성이 다소 멀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셋째, 經常移轉費중 사회보장비 산출에 包含된 범위는 補償金과 民間經常移轉, 自治團體經常移轉 등이다. 補償金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社會保障的 受惠金 및 補鐵具製作費 등과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一方的으로 民間人에게 급여하는 경상이전비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보상금중 公務員 및 私立學校敎員年金法과 醫療保險法에 의한 국가보조금은 산출대상

18) 人件費를 제외한 서비스관련비용만 선별적으로 포함한다. 이와 관련된 항목은 <附表 3>을 참조.

19) ALMP(9)와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11)에만 포함하였으며 그 외의 부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에서 除外하였다. 사회보장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과 社會保險의 給與가 二重計算될 수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民間經常移轉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資本的 經費를 除外한 補助金이다.

〈表 II-4〉 社會保障費算出에 包含된 政府歲出 ‘目’의 範圍

목		포함 여부	비 고
인건비(100)		×	단, 직접서비스 기관은 포함 - 지방노동관서 등
물건비(200)	관서운영비(201)	○	ALMP(9), 보건부문(11)
	여비(202)	×	단, 직접서비스 기관은 포함 - 지방노동관서 등
	업무추진비(204)	×	
경상이전(300)	보상금(301)	○	
	출연금(303)	×	
	민간경상이전(304)	○	
	자치단체경상이전(305)	○	
	차입금이자(308)	×	
자본지출경비(400)	자산취득비(407)	○	
	민간자본이전(411)	○	
	자치단체자본이전(412)	○	
융자금 및 출자금(500)	융자금(501)	×	융자금 제외
	출자금(502)	×	
보전지출(600)	국내차입금상환(601)	×	
	해외차입금상환(602)	×	
정부내부거래(700)	전출금(701)	×	
	전대차관원리금상환(704)	×	

註: 사회복지에 관련된 ‘항’만 나열하였음.

()은 예산분류 번호임.

○: 포함, ×: 비포함.

그리고 自治團體經常移轉은 “補助金の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에 의한 보조금중 자치단체에 대한 經常的 支援을 하는 예산이다. 이러한 民間經常移轉과 自治團體經常移轉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主要한 補助金 또는 支援金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장비 산출에 포함시켰다.

넷째, 資本支出經費중 民間資本移轉, 自治團體資本移轉 그리고 資產取得費를 포함하였다. 民間資本移轉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法令의 규정에 의하여 民間에 代行 또는 委託시키는 사업의 지원금이며, 自治團體資本移轉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自治團體에 代行 또는 委託시키는 事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民間에게 지급되는 補助金이다. 資產取得費는 건물,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취득과 구입비로 이들 경비는 社會福祉 서비스를 生産·提供하는데 주요한 보조금이므로 사회복지장비 산출에 포함시켰다.

또한 우리나라의 4大社會保險給與는 OECD의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작성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政府의 財政豫算은 그렇지 않아 아래와 같은 分類原則을 설정하였다. 세출예산의 ‘목’과목이 OECD가 요구하는 1가지 關心領域으로만 分類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2가지 이상의 關心領域과 관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分類·作成하였다.

첫째, 政府豫算의 ‘目’과목이 여러 關心領域으로 分類가 가능한 경우는 OECD가 요구하는 關心領域이나 細部關心領域으로 더 분류하였다.

둘째, ‘目’과목의 分類가 처음부터 不可能한 경우는 關心領域의 한 段階위인 部門에 포함하거나 반대로 가장 下部單位인 細部關心領域의 ‘其他’(예 5.1.99)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細部關心領域의 給與金額의 合이 關心領域의 合이고, 關心領域의 合이 部門의 合이라는 等式은 成立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먼저 教育部의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금액’은 關心領域別 내용중 해당영역이 없어 ‘노인과 장애인복

지서비스(5.0)’의 부문영역에 포함하였다. 다음의 예를보면, OECD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에 대하여 네 개의 관심영역에서 세부 관심영역을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아동(5.2.1), 65세 미만의 성인(5.2.2), 65세 이상의 성인(5.2.3)으로의 구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제도의 분류는 연령대별이 아니라 人口對象別로 운영하고 있어 기타(예 5.1.99)에 포함시켰다.

4. 우리나라의 統計生産 可能性과 限界

우리는 위에서 OECD가 要求하는 13개의 各 部門別 概念과 42개의 關心領域을 우리의 制度와 관련하여 比較하여 보았다. 이들결과를 要約·整理하면 <表 II-5>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계생산이 可能的 部門은 11개이며, 關心領域은 29개이다. 통계를 생산할 수 없는 2個 部門(疾病給與(4), 住居給與(12))과 13個의 關心領域들은 기초자료의 한계 또는 제도의 미도입에 연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가능 통계를 양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높게 보이지만 현재 통계생산이 가능한 11個部門과 29個 關心領域을 質的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내용상 未洽한 點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 內容을 보면, 우리나라의 급여제도가 部門別에서는 통계생산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關心領域이나 細部關心領域에서는 분류를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對象이나 給與內容이 多樣하지 못함을 意味하며, 게다가 기초자료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一例로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관심영역에는 시설보호(5.1), 가정봉사서비스(5.2),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 등이 있다. 이들중 家庭奉仕서비스(5.1)의 細部關心領域을 具體的으로 보면, ‘아동(5.2.1)’, ‘65세 미만의 성인(5.2.2)’, ‘65세 이상의 성인(5.2.3)’으

로 대상을 分類하여 作成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年齡代別로 對象을 區分하여 作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기업의 경영자체에 의하여 실직한 경우이든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경우이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OECD에서는 실업급여(10)를 失業補償(10.1)과 勞動市場의 理由로 因한 早期退職給與(10.2)로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要求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수령자의 失業類型을 분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 分類作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OECD에서는 사회보장재원을 法律에 의하여 고용주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民間部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산전산후휴가급여, 직장의 질병휴가급여 등이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해서도 基礎資料 蒐集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政府支出의 資料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예산자료를 目的別로 분류하고 있음에 비하여 OECD는 機能別로 분류하고 있어 분류상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OECD에서는 사회보장비의 급여내용을 機能別 뿐만아니라 對象別로까지 細分化된 통계를 要求하고 있으나, 國內作成現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차이점이나 한계점들은 앞으로 우리통계의 나아갈 方向을 摸索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편, 이와같은 與件하에서도 우리는 OECD加入에 따른 勸告義務를 성실히 履行하고 우리의 통계발전을 위하여 時宜性은 물론 信賴性과 國際比較 可能性을 갖춘 統計算出의 노력이 要求되는 시점에 있다.

〈表 II-5〉 OECD의 社會保障費 部門과 우리나라의 生産現況

(1996년 기준)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우리의 제도	담당부처 등	생산현황
1. 노령연금급여			
1.1 노령연금			○
1.1.1 개인급여	국민연금(특례노령연금, 가급연금 등)	복지부	○
1.1.2 배우자보충급여	<국민연금의 가급연금>		-
1.1.3 아동보충급여	<국민연금의 가급연금>		-
1.2 노령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사립교직원연금(퇴직연금 등)	총무처 교육부	○
1.3 재향노령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등)	국방부	○
1.4 기타노령연금급여	<경로연금, '96년 도입>		-
1.5 조기퇴직연금	<공적직역연금의 조기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		-
2. 장애연금급여			
2.1 장애연금			○
2.1.1 개인급여	국민연금(장애연금 등)	복지부	○
2.1.2 배우자보충급여	<국민연금의 가급연금>		-
2.1.3 아동보충급여	<국민연금의 가급연금>		-
2.2 장애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장애연금 등) 사립교직원연금(장애연금 등)	총무처 교육부	○
2.3 장애아동연금	없음		-
2.4 장애재향군인연금	군인연금(상이연금) 국가보훈(보훈보상금)	국방부 보훈처	○
2.5 기타장애연금급여	없음		-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산재보험(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노동부	○
4. 질병급여	<직장의 유급병가휴가>	노동부 (각사업장)	-

註: ○ : 통계생산 항목

△ : 시행제도를 세분화할 수 없어 주된 항목(상위 또는 동등영역)에 포함

- : 제도 미도입

▲ : 제도는 있으나 통계생산 불가능

< > 표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방식의 통계로 분류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表 II-5〉 계 속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우리의 제도	담당부처 등	생산현황
5.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지원	교육부	
5.1 시설보호			○
5.1.1 아동			△
5.1.2 65세 미만의 성인			△
5.1.3 65세 이상의 성인			△
5.1.99 기타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자치단체경상이전 등) 노인시설보호(자치단체경상이전 등)	복지부	○
5.2 가정봉사서비스			○
5.2.1 아동			△
5.2.2 65세 미만의 성인			△
5.2.3 65세 이상의 성인			△
5.2.99 기타	재가노인지원(가정봉사원 양성/파견사업) 재가장애인보호(자치단체자본이전)	복지부	○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
5.3.1 아동			△
5.3.2 65세 미만의 성인			△
5.3.3 65세 이상의 성인			△
5.3.99 기타	재가장애인보호(재활병의원운영비,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비 등) 장애인민간단체지원(민간경상이전) 재가노인지원(경로당운영비지원, 노인단기 보호사업 등) 재활원운영(인건비 등) 재활훈련(재활훈련) 재활병원재활치료(재활병원재활치료)	복지부	○
5.4 기타현물급여			○
5.4.1 아동			△
5.4.2 65세 미만의 성인			△
5.4.3 65세 이상의 성인	재가노인지원(경로승차권-교통비)	복지부	△
5.4.99 기타	재가장애인보호(장애인보장구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복지부	○

註: ‘*.99’ 번호는 우리 연구원이 OECD에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OECD기준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없음을 밝히자 통계분류와 작성이 용이하도록 그들이 우리나라에만 별도 부여한 번호
임(이하 표 같음).

〈表 II-5〉 계 속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우리의 제도	담당부처 등	생산현황
6. 유족급여			
6.1 유족연금			○
6.1.1 배우자연금	국민연금(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복지부	○
6.1.2 고아연금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
6.1.3 기타연금	없음		-
6.1.99 기타	국가보훈(보훈보상금 등)	보훈처	○
6.2 유족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유족연금 등) 사립교직원연금(유족연금 등) 군인연금(유족연금 등)	총무처 교육부 국방부	○
6.3 유족현물급여	없음		-
6.4 기타유족현물급여	없음		-
7. 가족현물급여			
7.1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아동양육비) 재가부자가정지원(아동양육비)	복지부	○
7.2 가족지원급여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자녀학비,보상금) 재가부자가정지원(아동교육비) 국가보훈(학자금지원)	복지부 보훈처	○
7.3 기타피부양인	없음		-
7.4 편부모	없음		-
7.5 기타가족	없음		-
7.6 산전산후휴가	(출산유급휴가)	노동부 (각사업장)	▲
8. 가족복지서비스			
8.1 공식주간보호	보육사업(시설별지원, 아동별지원,민간 보육시설교재교구비 등) 아동시설보호(아동복지시설운영 등) 모자보호및직업보도시설(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복지부	○
8.2 개인서비스	사회복지관운영(사회복지상담소운영 등)	복지부	○
8.3 가족서비스	아동건강육성(민간경상이전)	복지부	○
8.4 기타	가정복지(민간경상이전) 아동건강육성(결연기관운영, 입양기관 운영 등)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복지부	○

〈表 II-5〉 계 속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우리의 제도	담당부처 등	생산현황
9.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교육			○
9.1.1 현금	없음		-
9.1.2 서비스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및 동사업의 수당), 고용촉진훈련등 훈련비용	노동부 산업인력 관리공단	○
9.2 신규취업자를 위한 프로그램			○
9.2.1 현금	없음		-
9.2.2 서비스	기능인력양성훈련	산업인력 관리공단	○
9.3 고용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
9.3.1 현금	없음		-
9.3.2 서비스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노동부	○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프로그램			○
9.4.1 현금	없음		-
9.4.2 서비스	고용촉진, 교육홍보, 기술지도, 일산화교운영, 직업재활센터 건립, 부산직업전문학교신설 등 지원장려금·고용보조금지급 등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노동부 복지부	○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고용촉진훈련, 중앙고용정보 관리스, 지방노동관서운영 등 운영비 운영비	노동부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산업인력 관리공단	○
10. 실업급여			
10.1 실업보상	고용보험(실업급여)	노동부	○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없음		△
10.3 퇴직수당	법정퇴직금	노동부 (국세청)	○

〈表 II-5〉 계 속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우리의 제도	담당부처 등	생산현황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국민계정 재가노인지원(노인건강진단) 의료보험 의료보험 현물급여 - 연합회,공단(요양급여 등) 교정시설제소자의료비 산재보험(요양급여) 군인보건의료서비스(의무물자 등)	한국은행 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국방부	○
12. 주거급여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
12.1.1 노인	없음		-
12.1.2 장애인	없음		-
12.1.3 가족	없음		-
12.1.4 기타	없음		-
13. 기타급여			
13.1 저소득			○
13.1.1 현금급여	재가장애인보호(중증장애인생계보조 수당 등) 재가노인지원(노령수당) 아동건강육성(소년가장보호) 생계보호(거택보호, 시설보호) 교육보호(중·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등)	복지부	○
13.1.2 서비스	없음		-
13.2 원주민			-
13.2.1 현금급여	없음		-
13.2.2 서비스	없음		-
13.3 기타			○
13.3.1 현금급여	의사상자예우(보상금) 재해구호(주택피해복구, 이재민 지원)	복지부 내무부	○
13.3.2 서비스	부랑인시설보호(부랑인시설운영비 등)	복지부	○
13.4 이민자 및 망명자			○
13.4.1 현금급여	귀순북한동포보호(보상금, 민간경상이전)	복지부	○
13.4.2 서비스	없음		-

Ⅲ.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現況과 行政管理體系

본 장에서는 현재 統計生産이 可能한 11개 部門別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를 알아보고, 各 制度別 具體的인 運營과 給與(또는 豫算支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各 社會保障制度和 給與(또는 豫算支援)에 대한 說明과 例示는 통계생산의 가장 最近年度인 1996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老齡·障礙·遺族給與(OECD, Category 1, 2, 6)

OECD의 老齡·障礙·遺族現金給與 部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制度로는 公公연금보험과 國家보훈연금이 있다. 公公年金保險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농어민연금제도가 있으며, 國家를 위하여 공헌을 하였거나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國家報勳年金이 있다. 아래에서는 公公연금보험에 이어 國家보훈연금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公公年金保險

1) 運營

우리나라의 公公年金保險은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원연금(1973) 순으로 形成되었으며, 그후 국민연금(1988)과 농어

민연금(1995)이 導入되었다. 이들 연금의 適用對象을 보면,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며,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종사자 그리고 농어민이다.

給與資格을 보면, 노령연금의 경우는 특수직역연금이 20년 이상 재직을 필요로 하고 연령제한이 없는 반면,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에 60세가 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연금제도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급여자격은 연금제도간 대동소이 하다. 또한 傳達體系는 제도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 감독하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원연금은 교육부 감독하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군인연금은 국방부에서 각각 관리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의 감독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동을 하고 있다.

2) 給與

OECD가 요구하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年金制度別로 給與種類를 살펴보고, 이들을 각각 OECD의 關心領域과 관련지어 보기로 한다. 먼저 公務員年金과 私立學校教員年金의 급여종류를 보면 退職에 대해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고, 障害에 대해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이 있으며, 死亡에 대해 유족연금, 유족일시금이 있다. 그리고 短期給與로서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비일시금이 있다. 軍人年金은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다. 끝으로 國民年金에는 특례노령연금, 장해연금, 장해일시보상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으며 加給年金은 배우자보충급여(1.1.2, 2.1.2)와 아동보충급여(1.1.3, 2.1.3)으로 分類하지 않고 각각 主된 급여인 老齡·障碍·遺族年金에 포함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遺族年金을 18세

미만의 자녀만이 수령하는 경우에 OECD의 孤兒年金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나 向後 論議로 미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을 산출하기 위하여 OECD가 요구하는 통계와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령연금급여(1)에는 公共年金의 退職(老齡)年金²⁰⁾을, 장애연금급여(2)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보상금을, 유족급여(6)에는 유족연금을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 한편 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비일시금은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1)에 포함하였다. 1996년도에 지급된 연금급여의 총액은 4조 7,226억원이며, 이는 GDP(경상)의 1.21%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이 2조 3,976억원, 사학연금이 3,356억원, 군인연금이 8,717억원 그리고 국민연금이 1조 1,176억원이다. 이에 대하여 OECD의 통계부문 및 관심영역별로 우리의 제도를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 <表 III-1, 2, 3>과 같이 요약된다.

나. 國家報勳年金

1) 運營

國家報勳年金은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貢獻이 있거나 犧牲을 입은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對象者로는 상이군경, 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등이다. 給與種類로는 보상금지급과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는 당사자의 장해와 사망시에 지급하는 보상금지급에 대하여만 살펴보고

20)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연금제도 초기에, 가입자의 자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반대급부이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급여(1)의 관심영역중 일반노령연금(1.1)에 포함하였으며, 사망일시금은 유족급여(6)의 배우자연금(6.1.1)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OECD요구 관련통계가 없어 제외하였다.

教育保護는 본장의 5절 ‘가족현금급여(7)’에서, 醫療保護는 9절 ‘보건
부문의 공공지출(11)’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給與

보훈보상금의 給與種類는 기본연금, 부가연금, 간호수당, 생활조정
수당, 고엽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도 보상금지급 실적은
7,493억원으로 모두 보훈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OECD의 關心領域
과 관련지어 보면 ‘장애재향군인연금(2.4)’에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상이
군경에 관한 보상금이 해당되며, 군경유족과 애국지사 및 그 유족 등
은 유족연금(6.1)의 세부관심영역인 기타(6.1.99)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
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OECD요구통계의 部門 및 關心領域別로 우리
의 제도를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의 <表 III-2, 3>과 같이 要約된다.

〈表 Ⅲ-1〉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老齡現金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1. 노령 현금 급여	1.1 일반 노령 연금	1.1.1 개인급여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 가급연금	1,043,187
		1.1.2 배우자 보충급여	<국민연금>	<가급연금>	
		1.1.3 아동 보충급여	<국민연금>	<가급연금>	
		1.1.99 기타			
	1.2 공무원 노령 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퇴직급여가 산금, 퇴직수당	2,246,17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퇴직연금, 퇴직급여가산금, 퇴직수당급여,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 직일시금	319,250
	1.3 재향 노령연금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기여 금반환	781,179
	1.4 기타노령 현금급여				
	1.5 조기 퇴직연금		<공직적역연금> <국민연금>	<조기퇴직자의 퇴직연금> <조기노령연금>	
계			4,389,787		

註: < > 표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통계로 분류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表 III-2〉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障礙現金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2. 장애 현금 급여	2.1 장애연금	2.1.1 개인급여	국민연금	장해연금, 장해일시보상금	20,931
		2.1.2 배우자 보충급여	<국민연금>	<가급연금>	
		2.1.3 아동 보충급여	<국민연금>	<가급연금>	
		2.1.99 기타			
	2.2 공무원 장애연금		공무원연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5,687
			사립학교교원연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1,284
	2.3 아동 장애연금				
	2.4 재향군인 장애연금		군인연금	상이연금	4,968
			국가보훈사업	보훈보상금(상이연금) (교육보호는 가족현금급여(7)에, 의료보호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에 포함)	374,676
	2.5 기타장애 현금급여				
계					407,546

註: < > 표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방식의 통계로 분류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表 III-3〉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遺族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6. 유족 급여	6.1 유족연금	6.1.1 배우자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53,527
		6.1.2 고아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6.1.3 기타연금			
		6.1.99 기타	국가보훈사업	보훈보상금(군경유족, 애국지사 및 그 유족, 기타)	374,575
	6.2 공무원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급여가산금	145,731
			사립교직원 연금	유족연금, 유족급여가산금, 유족보상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15,114
			군인연금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유족일시금	85,537
	6.3 유족 현물급여				
	6.4 기타유족 현금급여				
	계				674,484

註: < > 표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방식의 통계로 분류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2.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OECD, Category 3)

OECD의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勞働部에서 운영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에서는 이 보험의 運營과 給與에 대하여 알아본다.

〈産業災害補償保險〉

1) 運營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制定되었고, 1964년 7월부터 사용자 共同責任의 근대적인 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當然適用對象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연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임업, 금융 및 보험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直接 行하는 사업, 5人 未滿의 事業場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承認을 얻어 保險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傳達體系를 보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다.

2) 給與

保險給與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 진다. 給與種類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²¹⁾, 그리고

21) 본 급여는 保健部門公共支出(11.1)에 포함한다.

장의비 등이 있다. 급여종류별로 지급조건과 수준을 살펴보면, 休業給與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일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

障害給與는 상해·부상으로 치료후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1%의 연금(1급)부터 55일분 일시금(14급)까지 지급된다(동법 42조). 遺族給與는 산재근로자의 사망시 유가족 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52%(1인)부터 67%(4인 이상)까지 지급된다(동법 43조). 그리고 폐질시에는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고, 사망시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가 지급된다.

1996년도에 지급된 급여총액은 1조 124억원으로, 이를 급여별로 살펴보면 휴업급여 4,357억원, 장애급여 3,478억원, 유족급여 1,795억원 그리고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이 494억원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의 네가지 급여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3)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리하면 <表 III-4>와 같다.

<表 III-4>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産業災害 및 職業病 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 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	-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요양급여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에 포함)	1,012,363
계					1,012,363

3. 老人福祉서비스(OECD, Category 5)

OECD의 노인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우리의 제도로는 老人福祉施設支援, 在家老人福祉事業이 있다. 이중 在家老人福祉事業은 가정봉사원과견사업,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그리고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등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가. 老人福祉施設

1) 運營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의 身體的·精神的 기능을 回復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生活意慾을 增進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시설형태별로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시설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附錄에 제시하였다(附表 1 참조).

노인복지시설의 入所對象者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가 필요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實費施設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4인가족, 1996년 기준) 미만인 65세 이상의 老人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다.

2) 豫算支援

1996년도 지원총액은 394억원(국비 265억원, 지방비 129억원)으로 예산내역은 종사자인건비, 수당 그리고 시설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급여를 시설보호(5.1)의 세부관심영역인 기타(5.1.99)에 一括包含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OECD가 작성을 요구하는 ‘노인

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세부관심영역은 아동(5.1.1), 65세 미만의 성인(5.1.2), 65세 이상의 성인(5.1.3)으로 분류하여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年齡代別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하 3個(OECD, Category 5.2~5.4임)의 關心領域에서도 같게 처리하였다(表 III-6 참조).

나. 在家老人福祉事業

OECD에서는 老人과 障礙人에 대한 在家福祉서비스에 대하여 가정봉사서비스(5.2),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 기타현물급여(5.4)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정봉사서비스(5.2)에 해당하는 우리의 제도로는 가정봉사원파견(양성사업 포함)사업을,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에는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 경로당운영등의 기타사업을, 그리고 기타현물급여(5.4)에는 경로승차권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家庭奉仕員 派遣事業

가) 運營

家庭奉仕員派遣事業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日常生活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家庭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各種 서비스를 정부지원사업기관이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健全하고 安定된 老後生活을 圖謀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서비스에 관한 事業內容으로는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이 있다(表 III-5 참조).

〈表 III-5〉 家庭奉仕員派遣事業의 서비스 內容

사업내용	서비스 內 容	
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서비스	식사시중, 시장보기, 주변정돈, 생필품의 구매등 가사에 관한 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신체청결, 외출시 부축동행 등
	우애서비스	말벗 등 정서에 관한 서비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서비스	
	장애노인 및 보호자의 교육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정부지원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과견사업대상 노인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무급가정봉사원이 봉사하기가 곤란한 야간서비스, 대·소변 수발, 개인목욕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유급가정봉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가정봉사원과견사업의 對象者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無料)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0만원(4인가족, 1996년 기준)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實費負擔), 그리고 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有料)이다. 참고로 無料·實費事業機關은 정부지원사업기관이며, 有料事業機關은 개인, 기업,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다.

나) 豫算支援

정부는 生活保護 및 實費利用老人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이하 ‘정부지원사업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96년기준 既存事業機關에 대하여는 서울에 73,200천원, 지방에 67,200천원을, 新規事業機關에 대하여는 서울에 58,300천원, 지방에 52,800천원을 支援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비율을 보면 서울에는 국고 50%, 지방비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지방에는 국고 70%, 지방비

30%가 지원된다. 1996년도 국고 및 지방비를 합한 全體豫算²²⁾은 약 18억원이며, 위의 지원예산을 가정봉사서비스(5.2)의 細部關心領域인 其他(5.2.99)에 포함시켜 사회보장비지출을 산출하였다(表 III-6 참조).

2) 老人短期保護事業

가) 運營

老人短期保護事業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一時的으로 받을 수 없는 心身이 虛弱한 老人과 障礙人을 시설에 短期間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福祉增進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事業內容으로는 급식과 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其間延長이 가능하다.

利用對象者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無料)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0만원(4인가족, 1996년 기준)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實費負擔), 그리고 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有料)이다.

나) 豫算支援

정부의 예산지원은 정부지원사업기관에 국한하여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를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보조한다. 사업자별 년간 지원기준은 60,000천원으로 '96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 예산은 5.5억원(국고 2.2억원, 지방비 3.3억원)이다. 본 사업은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의 세부관심영역인 기타항목(5.3.99)으로 분류하여 사회보장비 지출을 산출하였다(表 III-6 참조).

22) 가정봉사원양성사업 포함.

3) 老人晝間保護事業

가) 運營

老人晝間保護事業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虛弱한 老人과 障礙老人을 대상으로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生活安定과 心身機能의 維持·向上을 도모하고, 扶養家族의 신체적·정신적 負擔을 輕減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간보호사업의 서비스 內容으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그리고 장애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利用對象者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무료)과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90만원(4인가족, 1996년 기준) 미만인 가구의 65세 이상 노인(실비부담), 그리고 위 대상 이외의 60세 이상 일반노인(유료)이다.

나) 豫算支援

정부의 예산지원은 정부지원사업기관에 한하며 事業者別 年間 支援金은 4.5천만원(1996년 기준)이다. 지원범위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등에 한하며 국고 40%, 지방비 60%의 비율로 보조한다.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4.5억원(국고 1.8억원, 지방비 2.7억원)이며, 본 급여는 OECD의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의 細部關心領域인 기타(5.3.99)에 포함시켜 사회보장비 지출을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4) 其他 在家老人福祉事業

在家老人福祉事業에 대한 其他 豫算支援으로는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지원을 들 수 있으며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23,500개소의 경로당에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예산이 약 135억원(국고 90억원, 지방비 45억원)이다. 본 지원금은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항목중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의 細部關心領域인 其他(5.3.99)에 포함시켰다(表 III-6 참조).

5) 敬老乘車券制度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철도, 목욕 등 8個 業種을 대상으로 경로우대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그후('82년) 우대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擴大하는 한편, 優待業種도 시내버스, 극장 등 5개 업종을 追加하면서 경로승차권제도가 導入되었다. 그러나 동 제도가 그 동안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民間業體의 負擔만으로 실시됨으로써 버스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90년 1월부터 政府가 재원을 부담하면서 경로승차권 지급제도가 실시되었다. 운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申請主義에 의거 분기별로 36개의 시내버스승차권을 지급하였다. '94년부터는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노인승차권을 지급해 오다가 '96년부터는 이를 現金支給으로 改善하였다.

'96년도 지방비에서 지출된 총예산은 1,629억원으로 본 사업은 其他 給與(5.4)의 細部關心領域인 '65세 이상의 성인'(5.4.3)으로 분류하여 사회보장비를 산출하였다(表 III-6 참조).

4. 障 碍 人 福 祉 서비스(OECD, Category 5)

OECD의 障 碍 人 福 祉 서비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障 碍 人 施 設 保 護 서비스, 在 家 障 碍 人 福 祉 서비스 그리고 其 他 現 物 給 與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障 碍 人 施 設 保 護 서비스

〈障 碍 人 福 祉 施 設〉

가) 運 營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入 所 者의 신체적·정신적 機 能을 回 復하게 하거나 기능의 減退를 防止함으로써 生 活 意 慾을 증진하고 再 活 事 業의 效 果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비스의 주요 內 容으로는 입소자 보호와 의료재활서비스, 직업교육재활서비스가 있다. 入 所 對 象 者는 장애인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無 料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實 費²³⁾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정원의 70% 이상은 生 活 保 護 對 象 者를 입소시키도록 障 碍 人 福 祉 法(법 4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입소대상자는 장애시설별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다(附表 2 참조).

나) 豫 算 支 援

1996년도 支 援 된 총액은 2,793억원으로, 여기에는 障 碍 人에 대한 教

23) 실비입소비용이라 함은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케 하여 보호 또는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중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와 시설운영비 등 간접비를 제외한 보호비용과 재활서비스 비용(의료재활비, 직업훈련비, 보장구 제작비)을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48조참조).

育部(교육청)認可에 의한 特殊教育機關運營²⁴⁾과 障礙人福祉施設支援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재원의 지원은 教育部와 勞動部가 부담하고 있다. 이들 지원금중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은 OECD의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항목에, 장애인복지시설보호는 시설보호의 其他(5.1.99) 항목에 포함시켜 산출하였다(表 III-6 참조).

나. 在家障礙人 福祉서비스

1) 障礙人 綜合福祉館 및 在家福祉奉仕센터

가) 運營

障礙人綜合福祉館은 障礙人에 대한 綜合的인 福祉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地域障礙人의 自活自立과 복지를 增進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在家福祉奉仕센터의 運營目的은 재가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와주고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의 사회적 분위기 유도 및 해결을 통해 전 장애인의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巡廻訪問하여 진료, 간병, 장애진단 등 의료재활과 직업·교육의 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豫算支援

종합복지관과 봉사센터의 운영비는 國庫補助金 및 地方費로 충당하지만, 복지관을 委託運營하는 경우 수탁자부담금을 포함할 수 있다.

24)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義務教育 등] 내지 제8조[早期特殊教育施策 講究]에 근거하고 있다.

수탁자부담금은 복지관의 이용료와 자체수익사업이익금 및 법인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또한 재가장애인보호를 위한 정부의 보상금도 본 내용에 포함한다.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174억원(국고 70억원, 지방비 104.5억원)이며, 이 제도는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의 細部關心領域인 기타(5.3.99)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2) 障碍人再活院 및 再活病院

가) 運營

장애인재활원과 사회복지법인부설 재활의료시설의 운영은 障碍人을 對象으로 一般再活과 醫療再活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등 無醫地域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醫療保護對象 障碍人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認定한 障碍人은 無料로 診療를 받고 있다. 재활서비스에는 이외에도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운영과 장애인결연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이 있다.

나) 豫算支援

전국의 재활원과 14개의 재활의료병의원에 '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지원금액은 약 70억원(국고 52.5억원, 지방비 17.9억원)으로 국고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이다. 이 제도는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의 細部關心領域인 其他(5.3.99) 항목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3) 障碍人晝間 및 短期保護施設

가) 運營

他人의 도움없이는 日常生活을 영위할 수 없는 在家障碍人을 장애인복지시설에 晝間 또는 短期間 保護하여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안심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고자 한다.

나) 豫算支援

전국 10개 복지관에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22.4억원(국고 22억원²⁵⁾, 지방비 4천만원)이며 국고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이다. 본 급여는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항목 중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關心領域인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5.3)에 포함시켰다(表 III-6 참조).

다. 其他現物給與

1) 障碍人醫療費 支援

가) 運營

生活이 어려운 低所得障碍人의 醫療費를 정부가 지원하여 生計安定을 도모하고 醫療保障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支援對象은 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25) 국고에는 장애인민간단체지원금으로 민간경상이전비가 21억원 포함되어 있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은 除外된다.

나) 豫算支援

障礙人醫療費 支援은 本人負擔診療費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진료기관별로 살펴보면, 1차진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97년기준 750원)가 지원되며, 2차, 3차 진료기관의 경우 의료보호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障礙人用 補裝具는 4種²⁶⁾에 限하여 고시한 상한가에서 실구입가격의 20%를 지원한다.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4.4억원(국고 3.4억원, 지방비 1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현물급여(5.4)의 細部關心領域인 其他(5.4.99)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2) 障礙人補裝具 交附

가) 運營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製造, 購買, 修理, 檢診 및 適應訓練費를 지원(이하 “補裝具交附”라 한다)함으로써 이들이 신체적 기능을 補完하고 生活能力을 向上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登錄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장애인으로서 就業活動 등을 위해 補裝具 裝着이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認定하는 者이다. 교부품목으로는 의수족, 휠체어, 보조기, 그리고 흰지팡이이다.

26) 4종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전기후두(체외용) 이다.

나) 豫算支援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6억원(국고 4.35억원, 지방비 1.65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항목(5.4.99)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3) 障礙人子女 教育費支援

가) 運營

政府가 정상인에 비하여 所得活動에 制限을 받고 있는 低所得障礙人 家口에게 子女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家口主가 1~3급 장애인인 가구의 중·고등학생자녀 또는 1~3급 障礙人 중·고등학생이다.

나) 豫算支援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11억원(국고 8.1억원, 지방비 2.9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현물급여(5.4)의 세부관심영역인 其他(5.4.99)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6 참조).

〈表 III-6〉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5. 노인 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운영 지원				210,162
	5.1 시설보호	5.1.1 아동			
		5.1.2 65세 미만의 성인			
		5.1.3 65세 이상의 성인			
		5.1.99 기타	노인시설보호 장애인복지 시설보호	자치단체경상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경상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39,367 69,146
	5.2 가정봉사 서비스	5.2.1 아동			
		5.2.2 65세 미만의 성인			
		5.2.3 65세 이상의 성인			
		5.2.99 기타	재가노인지원 재가장애인보호	가정봉사원파견사업, 가정봉 사원양성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1,848 9,762

〈表 Ⅲ-6〉 계 속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5. 노인 과 장애인 복지 서비스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5.3.1 아동			
		5.3.2 65세 미만의 성인			
		5.3.3 65세 이상의 성인			
		5.3.99 기타	재가노인 주간보호	노인단기보호사업, 노인주간보 호사업, 경로당운영비지원, 경로당난방비지원, 민간경상 이전	14,576
			재 가 장 애 인 주간보호	장애인복지관운영비계, 장애인 체육관운영비, 재활병의원운 영비, 주간및단기보호시설운 영, 보상금	20,462
			장 애 인 민 간 단체지원	민간경상이전	2,091
			재활원운영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지원, 전산경비	3,700
			재활훈련	재활훈련	229
			재활병원· 재활치료	재활병의원 운영 및 재활치료	251
	5.4 기타 현물급여	5.4.1 아동			
		5.4.2 65세 미만의 성인			
		5.4.3 65세 이상의 성인	재가노인지원	경로승차권(교통비)	162,852
		5.4.99 기타	재가장애인 보호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교 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2,143
계					536,589

5. 家族現金給與(OECD, Category 7)

OECD가 요구하는 家族現金給與(Family Cash Benefits)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低所得母子家庭 아동양육비지원, 저소득가정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국가보훈사업의 학자금지급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低所得母子家庭 兒童養育費 支援

1) 運營

국가가 低所得母子家庭의 아동에게 健康하게 成長토록 養育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6歲 以下 아동(시설 및 거택보호를 받는 모자가정은 제외)을 그 對象으로 하고 있다.

2) 豫算支援

양육비는 지원대상아동의 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임하에 1日 500원(분유 80g)을 아동의 母에게 現金지급한다.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7.8억원(국고 5.8억원, 지방비 2억원)이며,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兒童에 대한 家族手當(7.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7 참조).

나. 低所得家庭子女學費 등 支援

1) 運營

국가가 低所得家庭子女에게 學費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貧

困의 惡循環을 防止하고 自活自立基盤을 조성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對象者는 低所得母子, 父女, 父子家庭의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在學生(신입생포함)이며 이들에게 授業料와 入學金을 지원하고 있다.

2) 豫算支援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의 책임하에 學父母에게 現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때 他法이나 기타 정부시책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支援받거나 免除되는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二重支援禁止).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전체예산은 약 84억원(국고 62억원, 지방비 22억원)이며,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家族支援給與(7.2)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7 참조).

다. 國家報勳事業의 學資金支給

1) 運營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거나 희생을 입은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가가 보상금지급과 교육보호, 생활보호 그리고 의료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家族現金給與(7)에 해당하는 教育保護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이외의 지원사업은 각각 관련 統計項目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豫算支援

교육보호에는 公納金免除와 學資金支給, 獎學金支給 그리고 轉役下

士官子女授業料補助가 있으며, 예산은 모두 보훈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교육보호대상자의 公納金 免除範圍는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학은 전액 학교부담이지만 사립대학은 학교와 국가가 반씩 부담하고 있다. 국가가 1996년도 교육보호로 19억원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산출하기 위하여 教育保護를 家族支援給與(7.2)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7 참조).

〈表 III-7〉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家族現金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국의 급여제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여종류	급여액
7. 가족 현금 급여	7.1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재가부녀및모자가정 지원	아동양육비	607
			재가부자가정지원	아동양육비	171
	7.2 가족지원급여		재가부녀및모자가정 지원	보상금, 자녀학비	7,000
			재가부자가정지원	아동교육비	1,392
			국가보훈	학자금지원	1,907
	7.3 기타피부양인에 대한 급여				
	7.4 편부모현금 급여				
	7.5 기타가족현금 급여				
	7.6 육아휴직		<출산유급휴직>		
계					11,077

6. 家族福祉서비스(OECD, Category 8)

OECD의 家族福祉서비스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低所得層保育兒童의 保育시설이용지원, 아동복지시설보호, 부녀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운영, 아동건전육성사업, 그리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低所得層保育兒童의 保育施設利用 등 支援

1) 運營

국가가 保護者의 勤勞 또는 疾病, 其他事情으로 因하여 직접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에게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호자에게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家庭의 福祉增進을 도모하는 데 있다. 支援對象은 6歲 未滿의 就學前 아동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저소득층 아동, 맞벌이 가정자녀, 입양아동,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이다.

2) 豫算支援

연령과 저소득층 종류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差等支援金(월 213,000~85,000원)과 민간경상이전, 시설별지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에 대한 지원총액(1996년도)은 약 2,375억원(국고 1,156억원, 지방비 1,219억원)이다. 이 제도는 가족복지서비스(8)의 공식주간보호(8.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나. 兒童福祉施設保護

1) 運營

아동복지시설보호는 施設兒童의 情緒涵養 및 社會적응능력을 向上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며 入所對象者는 생활보호대상아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入所對象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가 있어도 養育할 能力이 없는 아동 둘째, 保護者의 장·단기출타, 아동학대·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기에 不適當한 아동 셋째, 기타 아동복지법에 의해 保護를 받아야 하는 아동으로 하고 있다.

2) 豫算支援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455억원(국고 364억원, 지방비 91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가족복지서비스(8)'의 관심영역인 '공식주간보호(8.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다. 婦女福祉施設 運營

婦女福祉施設은 대상별·기능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效率性を 제고하기 위하여 類似한 施設別로 통합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예로는 母子一時保護施設·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一時保護施設·相談所의 통합 운영을 들 수 있다.

1) 運營

가) 母子保護 및 自立施設

低所得母子家庭의 基本生計保障과 自立基盤을 造成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母子保護施設과 母子自立施設이 運營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비(자립시설 제외) 지원, 교육비지원,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지원, 아동급식비(자립시설제외), 생업자금융자지원, 그리고 모자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알선 등의 자립지원 등이 있다. 입소대상자는 母子保護施設이나 母子自立施設 공히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無住宅低所得母子家庭이다(모자복지법 제4조). 두 시설의 差異點으로는 모자보호시설은 미혼모시설의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인 반면, 모자자립시설은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또는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모자가정이다.

나) 未婚母施設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하였을 경우 수용보호하여 安全하게 分娩토록 도와주고 신상상담, 정서교육을 통하여 健全한 社會人으로 復歸토록 한다. 入所對象者는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혜택과 숙박보호가 필요한 자이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다) 母子一時保護施設

배우자로부터 物理的·精神的으로 虐待받는 여성에게(아동포함)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인 休息을 주기 위하여 본 시설을 運營한다. 입소대상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母와 兒童이며, 보호기간은 30

일 이내이다.

라) 一時保護所

短期間の 一時保護와 相談을 실시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또는 취업 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알선을 통하여 요보호자 發生을 防止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소대상자는 要保護女性(윤락여성, 윤락우려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성폭력피해여성, 학대받는여성, 저소득여성 등)이다.

마) 自立自活施設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社會適應이 困難하거나 居住할 곳이 없는 者로서 本人이 希望하는 경우 숙식·직업알선 등을 제공하여 社會適應을 용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2) 豫算支援

부녀복지시설 운영(위의 (가)부터 (마)까지)에 지원된 '96년도 예산 기준금액은 약 93억원(국고 75억원, 지방비 18억원)이며,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예산지원 항목은 세출예산중 '모자보호 및 부녀직업보도시설'에서 지원된다. 이 제도는 '가족복지 서비스(8)'의 關心領域인 '공식주간보호(8.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라. 社會福祉館 運營

1) 運營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低所得層의 自立能力을 배양하여 中

産層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치료 등을 통한 地域社會住民의 福祉增進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地域住民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지만 주로 低所得住民이 많이 이용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綜合社會福祉館 中心²⁷⁾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각 人口對象別(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 豫算支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社會福祉館 運營과 建立 그리고 裝備購入費로 구성되어 있다.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317억원(국고 80억원, 지방비 237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家族福祉서비스(8)'의 關心領域인 '個人서비스(8.2)'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마. 兒童健全育成事業

아동건전육성 사업에는 不遇兒童結緣事業, 入養事業, 그룹홈示範運營, 그리고 少年少女家長世帶保護 등이 있다. 이들 사업중 마지막의 少年少女家長世帶保護는 現物給與的 性格뿐만 아니라 現金給與的 性格을 同時에 포함하고 있어 10절의 '其他給與(13)'에서 言及하기로 한다.

1) 運營

가) 不遇兒童結緣事業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不遇한 兒童과 지역사회 인사

27) 우리나라의 복지관현황(1996.12)을 보면, 전체 470개중 종합사회복지관이 67%(315개), 노인복지회관 9.1%(43개), 장애인복지관 9.1%(43개), 그리고 여성회관 14.7%(69개)로 구성되어 있다.

와의 결연으로 物質的, 精神的 支援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不遇兒童의 健全育成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정부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다. 對象者는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결함 및 빈곤가정 아동, 모자세대·거택보호자의 아동이다.

나) 國內·外 入養事業

태어난 가정에서 養育이 곤란한 아동(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정아동 등)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入養對象兒童으로는 보호자로부터 離脫된 또는 친권상실의 宣告를 받은 18세 미만의 兒童으로 부모·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의 同意가 있는 아동이다(入養促進 및 節次에 관한 特別法 제2조, 제4조).

다) 兒童福祉自立支援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延長兒童에 대하여 취업알선 및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이들의 健全育成 및 社會適應力 向上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은 정부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運營主體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이다. 對象者로는 시설퇴소연장아동 및 자립생활관 이용아동, 18세 이상으로서 시설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 그리고 시설보호중인 중고교생이다.

라) 그룹홈 示範運營

정부는 요보호아동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보호자와 함께 家庭形態를 構成하여 보호자가 이들의 日常生活을 支援, 指導함으로써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한 健全養育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시설

에서 보호받고 있는 要保護兒童이다.

2) 豫算支援

아동건전육성사업 지원비에는 결연기관운영비, 입양기관운영비, 입양아동양육보조, 입양아동의료비보조, 그리고 가정복지의 민간경상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 '96년도 예산기준 支援金額은 20억원(국고 15억원, 지방비 5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가족복지서비스(8)'의 關心領域인 '家族서비스(8.3)'와 '기타(8.4)'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바.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保護施設

1) 運營

性暴力被害者를 대상으로 그 피해를 相談하고 保護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社會復歸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豫算支援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약 2억원(국고 1억원, 지방비 1억원)이며,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예산지원 항목은 세출예산중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에서 지원된다. 이 제도는 '가족복지서비스(8)'의 關心領域인 '기타(8.4)'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8 참조).

〈表 III-8〉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家族福祉서비스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여(예산지원) 종류	급여액
8. 가족 복지 서비스	8.1 공식 주간보호		보육시설지원	민간경상이전, 시설별지원, 아동별지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 시설비, 보육정보센타운영비, 자치단체자본이전	237,460
			아동시설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아동직업훈련및영농훈련, 자치단체자본이전	45,545
			모자보호및부녀 직업보도시설	모자보호시설운영비,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자치단체자본이전	9,348
	8.2 개인 서비스		사회복지관운영	민간경상이전, 사회복지관운영, 사회복지상담소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자치단체자본이전	31,665
	8.3 가족 서비스		아동건전육성	민간경상이전	133
	8.4 기타		가정복지 아동건전육성	민간경상이전 결연기관운영,입양기관운영, 입양아동양육보조, 입양아동의료비지원	205 1,694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성폭력상담소운영비	223
계					326,273

7. 積極的인 勞動市場政策²⁸⁾(OECD, Category 9)

OECD의 積極的인 勞動市場政策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고용보험과 노동부의 고용훈련 및 지원사업,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사업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훈련과 재활사업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關心領域別로 보면, 勞動市場의 訓練(9.1)에는 고용촉진훈련과 단기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靑少年關聯事業(9.2)에는 유일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인력양성훈련이 있다. 雇傭補助프로그램(9.3)에도 유일하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의 각 사업별 장려금(지원금)이 있다. 障礙人을 위한 雇傭프로그램(9.4)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雇傭서비스와 行政(9.5)에는 노동부의 雇傭行政서비스의 경상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비가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勞動市場의 訓練

1) 運營

가) 雇傭促進訓練

低所得層에 대한 정부의 종래지원은 直接支援爲主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自活基盤確保爲主로 지원되고 있다. 雇傭促進訓練은 무

28) 이 부문만은 OECD가 우리나라의 두 기관(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동부)에 통계산출을 요청해와 研究結果에 差異가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에 알고서 통일된 결과를 OECD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정책과와 정책간담회의를 거쳐 제출(1998. 5. 18)하게 되었으며 이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기능·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訓練對象者는 생활보호대상자(14세 이상), 영세농어민(경지소유면적 1ha 미만), 고용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무직청소년,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고령자, 주부 등 주로 低所得層 및 無技能 潛在人力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훈련사업은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勞働部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며 종래 6個部處에서 실시하던 類似한 各種訓練을 '93년부터 勞働部主管으로 統合²⁹⁾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運營하고 있다.

政府는 訓練對象者가 주로 低所得層임을 감안하여 훈련기간도중 訓練受講料를 全額支援하고 있으며, 훈련생의 생계유지를 위해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등 훈련수당을 요건에 따라 每月支給하고 있다. 또한 훈련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시 취업지원수당도 지급하여 訓練成果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나) 短期適應訓練

일할 능력이 있는 主婦 및 50세 이상의 준·고령자중 就業을 希望하는 者들의 취업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1개월 이내의 短期間 職場適應訓練이다. 訓練內容은 직장인으로서의 基本的으로 갖추어야할 교양지식과 산업안전, 최소한의 단순기초기능을 교육하며 고령자 적합직종중 就業이 잘되는 간병인, 가사보조원 등의 직종에 대하여 실시하며 동 훈련은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勞働部가 主管하고 있다.

29) 직업훈련의 중복실시에 따른 예산낭비의 방지와 행정간소화, 인력수급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직업훈련 도모 등을 위해 '92년 9월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93년부터 노동부에서 통합실시하고 있다.

다) 일하는 女性의 집

女性의 就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사회교양교육 그리고 보육시설을 실시·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女性으로 주로 主婦가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에 12개소('96년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라) 事業內職業訓練支援

기업체의 自社職員에 대한 자체 職業訓練費用을 雇傭保險에서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에 대한 再投資를 유인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업체의 자체훈련시는 중소기업의 경우 훈련비용의 100%, 대기업의 경우 80%를 제공하고 기업체에서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기관에 委託訓練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은 90%, 대기업은 70%을 지원하고 있다.

마) 失職者 再就職訓練

再就業에 필요한 기능·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失職勤勞者에게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기회를 提供함으로써 실업자의 재취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30인 이상)으로부터 移職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원은 雇傭保險基金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실업자는 훈련대상이 될 수 없다.

바) 教育訓練 支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중 勞動部長官이 指定하는 教育訓練過程에 직원을 교육시킬 경우 사업주에게 교육훈련기관

에 지급한 1인당 비용의 70%(우선지원대상기업 90%)를 雇傭保險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사) 職業能力開發手當

求職給與와 再就職을 촉진할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있는 失職者에게 숙박료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雇傭保險의 실업급여에서 지원되고 있다.

2) 豫算支援

'96년도 노동부 주관지원사업(위의 (가), (나), (다))의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약 252억원이며, 고용보험중 직업능력개발사업(위의 (라)~(바))으로 약 86억원이, 직업능력개발수당((사))으로 약 3억원이, 그리고 위에서 언급은 없었지만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훈련지원비로 759억원이 지출되었다. 이 제도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9)의 관심영역인 '勞動市場의 訓練(9.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9 참조).

나. 技能人力養成訓練

1) 運營

OECD의 靑少年關聯事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능인력양성훈련이 있다. 이 훈련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인력개발 및 훈련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능습득을 獎勵하고 機能向上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훈련대상은 기능습득을 필요로 하는 靑少年이다.

2) 豫算支援

운영재원은 政府出捐金과 産業人力管理工團의 自體收益金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체수익금은 각 사업별로 배분하여 집행한 자료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政府出捐金만 살펴보면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약 619억원이다. 이 지원금액만을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9)의 關心領域인 '청소년관련사업(9.2)'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9 참조).

다. 雇傭保險의 雇傭安定事業

OECD의 고용보조프로그램(9.3)에 해당하는 우리의 제도로 唯一하게 雇傭保險의 雇傭安定事業이 있으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運營

가) 高齡者雇傭促進獎勵金

高齡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과 직업전환기회의 제공을 통해 이들에게 雇傭機會를 擴大함으로써 고령자의 복지증진을 圖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종류로는 고령자를 一定水準 이상 雇傭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高齡者多數雇傭促進獎勵金과 일정수준 이상의 고령자를 新規雇傭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는 高齡者新規雇傭促進獎勵金이 있다.

나) 育兒休職獎勵金

보육시설지원금과 함께 女性勤勞者の 職場生活과 子女養育, 가정생

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雇傭保險의 피보험자인 勤勞者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事業主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 職場保育施設支援金

保育對象兒童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에 최대장애가 되고 있는 育兒負擔을 덜어줌으로써 女性の經濟活動에의 參與機會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雇傭保險基金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職場保育施設設置費融資와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 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職場保育施設支援金이 있다.

라) 休業手當支援金 등

사업주가 不景氣에 근로자를 解雇하는 대신 休業을 선택하여 休業手當을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에서 지원하는 수당으로 실업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對象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이외에도 기업주가 이직훈련을 시킬 때 지급하는 職業轉換訓練費用支援金, 기업주가 업종을 전환하였으면서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재배치한 경우 지급하는 人力再配置支援金 등이 있다.

2) 豫算支援

雇傭保險의 雇傭安定事業에서 운영되고 있는 4種類의 장려금 및 지원금으로 지출한 '96년도 금액은 약 93억원이다. 이 지원금액은 積極的인 勞動市場政策(9)의 關心領域인 '고용보조프로그램(9.3)'에 포함시켜 통계를 生産하였다(表 III-9 참조).

라. 障礙人雇傭促進事業

OECD의 障礙人을 위한 雇傭프로그램(9.4)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障礙人雇傭促進事業이 유일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運營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은 障礙人의 雇傭活性化를 위하여 장애인기능인력양성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사업체의 지원확대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下部의 訓練機關과 福祉施設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정부출연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障礙人雇傭促進基金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법 제35조,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常時從業員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하여 障礙人義務雇傭率 2%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금이다.

OECD의 障礙人을 위한 고용프로그램(9.4)에는 職業再活과 障礙人保護作業으로 大別할 수 있다. 職業再活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勞動部의 지원장려금, 고용보조금, 시설개선무상지원, 훈련기관보조,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출연이 있다. 障礙人保護作業에는 보건복지부의 보호작업장운영지원이 해당된다. 이들 주요 프로그램을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支援獎勵金에는 장애인근로자를 기준고용률(2%)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종업원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支援金을,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獎勵金을 障礙人雇傭促進基金에서 지원하고 있다.

雇傭補助金에는 장애인을 신규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애의 정도에 따라 2년차까지 최저임금의 40~80%를 보조하고 있다. 施設改善無償支援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하도록 취업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의시설, 장애인용 장비·공구 등을 2억원('96)이내에서는 무상지원하고 장애인 雇傭施設·裝備購入 등의 소요비용은 5억원이내에서 대부하고 있다. 訓練機關 補助는 민간직업훈련원 등 직업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인정직업훈련원 수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훈련장비 구입 등 개선비용과 훈련보조금 및 훈련장려금, 훈련교사수당 등을 보조지원하는 것이다. '95년까지는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하여만 지원하던 것을 '96년부터 특수학교, 공공직업전문학교에도 확대하였기 때문에 '96년의 예산이 增額되었다.

그리고 韓國障礙人雇傭促進工團 출연으로 고용촉진, 교육홍보, 기술지도, 일산학교운영, 직업재활센터 건립이 있다. 이중 일산학교운영은 장애인전문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92년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활센터(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는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관련 연구개발, 직업재활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교육,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종합화와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성남과 부산 두 곳에 건립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障礙人保護作業場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28개('96년 기준)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월 350,000원씩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2) 支援豫算

장애인고용촉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총예산은(기금과 출연금 포함, 1996년) 150억원으로 이는 OECD요구통계중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9.4)'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9 참조).

마. 雇傭서비스와 行政

OECD의 雇傭서비스와 行政(9.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노동부의 雇傭保險事業運營費와 雇傭행정서비스의 경상비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운영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雇傭保險의 운영비지원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고급인력정보센터 경상보조금, 인력은행 경상비보조 등 고용보험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비용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勞働部 雇傭行政서비스의 經常費支援으로는 고령자인재은행 경상비보조,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비, 한국기술교육대학 출연금 지원,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운영비지원,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의 고용관련업무비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고용보험의 각 사업과 관련된 運營費는 비교적 간단하므로 본문에서 언급을 생략(다만, 表 III-9에서 항목을 나열함)하고, 勞働部의 다양한 支援事業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運營

高級人力情報센터는 회사 간부급사원, 고위공직자, 장성 등 지식층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노동부가 공동출연하여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다. 人力銀行(Job Center)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직업알선 및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안정 전문기관으로 서울,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

비, 채용박람회장소 임차료, 공공요금 등이 경상비로 보조되고 있다. 高齡者人才銀行(The Aged Manpower Bank)은 정부가 무료직업소개사업운영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중 36개소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등을 경상비로 보조하고 있다. 일하는 女性の 집(Working Women's Center)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사회교양교육을 실시하며, 전국 12개소('96년)의 일하는 여성의 집의 설치·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韓國技術教育大學은 직업훈련의 특성에 맞는 전문이론과 실기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직업훈련교사양성 전담기관으로 정부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출연하고 있다.

中央雇傭情報管理所는 '95년에 중앙직업안정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96년에 사육신축비용이 포함되어 사업비가 높게 나타났다.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련 업무비로는 6개청, 46개소의 지방노동관서 예산중 고용관련 업무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운영비, 직업훈련사업운영비, 직업안정국 운영비, 고용정책실 운영비 등이 있다.

2) 豫算支援

1996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勞動部가 564억원, 雇傭保險 30억원, 韓國産業人力管理公團 719억원, 障礙人雇傭促進公團이 87억원이 지원되어 총지원금액(기금과 출연금포함)은 1,400억원이었다. 이는 OECD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9)의 關心領域인 雇傭서비스와 行政(9.5)에 포함하여 통계를 생산하였다. 行政費用은 이미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ECD의 統計作成基準에 따르면 '積極的인 勞動市場 프로그램(9)'과 '保健部門의 公共支出(11)'에는 包含시키고 있어 이를 통계

산출에 포함하게 되었다(表 III-9 참조).

〈表 III-9〉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ALMP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국의 급여제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여종류	급여액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9.1 노동시장의 훈련	9.1.1 현금			
		9.1.2 서비스			
		a. 성인실업자와 실직우려자 훈련	(노동부)	고용촉진훈련 단기적응훈련 일하는 여성의 집	23,938 233 1,050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직훈련, 교육훈련지원,	8,568
		b. 성인취업자 훈련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업인력 관리공단)	직업능력개발수당 훈련비용	3 75,938
	9.2 청소년 관련사업	9.2.1 현금			
		9.2.2 서비스			
		a. 실업 및 취약 청소년 훈련	(산업인력 관리공단)	양성훈련	61,881
		b. 도제제도 및 일반청소년 훈련			
	9.3 고용보조 프로그램	9.3.1 현금			
		9.3.2 서비스			
		a. 민간부문의 정규고용에 대한 보조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 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휴업수당지원금	9,270
		b. 실업자 창업지원			
		c. 공공부문의 고용창출			

〈表 III-9〉 계 속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9.4.1 현금			
		9.4.2 서비스 a. 직업재활	(노동부)	지원장려금·고용보조금 지급 시설개선무상지원 훈련기관보조	3,693 366 1,779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촉진, 교육홍보, 기술 지도, 일산학교운영, 직 업재활센터 건립, 부산 직업전문학교신설	8,634
		b. 장애인 보호작업	(복지부)	보호작업장 운영비지원	538
	9.5 고용서비스 와 행정		(고용보험)	고급인력정보센터경상 보조금, 인력은행경상 비보조,	2,983
			(노동부)	고용보험사업운영비지원, 고령자인재은행경상비 보조,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비, 한국 기술교육대학출연금, 중앙고용정보관리소운 영 및 사업비, 고용보 험전산망 설치·운영비, 직업훈련사업운영비, 고용정책실운영비, 지 방노동관서고용관련업 무비, 노동연수원의 고 용관련 교육과정 업무 비, 노동연구원의 고용 관련 연구비 및 업무 비, 해외취업관련업무 비 등	56,437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운영비	8,739
			(산업인력 관리공단)	운영비	71,924
계					335,974

8. 失業給與(OECD, Category 10)

가. 우리나라의 制度

失業給與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勞働部에서 운영하는 雇傭保險과 各 事業場의 法定退職金制度를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雇傭保險

1) 運營

1993년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雇傭安定事業과 職業能力開發事業이 1995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失業給與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雇傭保險制度는 事業場規模와 勤勞者の 種類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적용의 강제성여부에 따라 當然適用과 任意適用으로 구분한다. 當然適用事業場은 1995년 1월 이후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실업급여만, 상시근로자가 70인 이상인 사업장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⁰⁾. 한편,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자, 일용직노동자, 시간제노동자, 특수직역연금의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선원)는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그 대상에서 除外된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30)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실업급여는 1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이후 IMF사태로 인한 산업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직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고용보험 전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범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전면확대(1998년 2월 20일 개정)되었고 실업급여에 한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本社와 建設工事は 별개의 단위로 적용된다. 즉 本社は 근로자가 30인 이상으로, 建設工事は 단위별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1996년 6월 말 현재 4만 1천개 사업장의 430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노동자 1,309만명의 32.8%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보험의 각 사업은 적용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職業安定機關인 지방노동관서에서 당해사업을 관장하게 된다³¹⁾. 失業給與의 請求는 실직자가 居住地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매년 保險事業의 管理運營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가 一般會計에서 부담하고 있다.

2) 給與

給與(事業)種類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가 있다. 이들을 順序別로 살펴보면, 먼저 雇傭安定事業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며, 職業能力開發事業은 현직 근로자나 실직자의 능력을 개발시켜 재취업을 돕는 사업으로서 실업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失業給與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들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雇傭安定事業은 雇傭調整支援事業과 潛在人力雇傭促進事業 등으로 나누어진다. 雇傭調整支援事業에는 불경기에 사업주가 해고대신 휴업을 택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지급하는 休業手當支援金, 기업주가 이직훈련을 시킬 때 지급해 주는 職業轉換訓練費用支援金, 기업주가 업종을 전환하였으면서도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재배치한 경우에 지급하는 人力再配置支援金,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하였을 때 고용주에게 지급해 주는 地域雇傭促進金 등이 있다. 이외에도 창업교육훈련지

31) 직업안정법 제4조의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금과 채용장려금 그리고 적응훈련지원금 등이 있다.

潛在人力雇傭促進事業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등이 있다. 이 외에 건설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建設勤勞者 退職金諸賦金の 支援이 신설되었으며,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과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職業能力開發事業에는 사내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유급휴가로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훈련시설비대부, 전문대학 재학 중인 근로자에게 주는 교육수강비 대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노동자에 대한 재취직훈련수당, 고령자수당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失業給與에는 구직급여와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附加的으로 지급하는 就職促進手當이 있다. 就職促進手當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취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에게 숙박료나 교통비로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먼 거리 여행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재취업하여 이사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要約하면 아래의 <表 III-10>과 같다.

1996년도 고용보험급여(사업)로 지출된 금액은 총 313억원으로 이를 급여(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에 122.5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85.7억원, 그리고 실업급여에 105억원이 지출되었다. 본 절의 통계산출에는 失業給與만 해당되며 雇傭安定事業과 職業能力開發事業은 앞의 7節(ALMP)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除外한다.

사회보장비지출을 산출함에 있어 OECD에서는 失業補償(10.1)과 勞動市場의 理由로 因한 早期退職給與(10.2)를 분리하여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他意에 의하여

실직을 당한 경우에 국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分類作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현행 제도실정상 두 급여간 구분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분류할 수 있는 失職事由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IMF體制下에서는 區分이 더욱 모호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雇傭保險의 失業給與의 주요 성격을 고려하여 失業補償(10.1)에 포함하였다(表 III-11 참조).

〈表 III-10〉 雇傭保險制度의 主要事業 內容

사업내용	급여 또는 지원 사업	
실업급여	구 직 급여	
	취직촉진수당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안정 사업	고용조정지원	휴업수당지원금,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채용장려금
	지역고용의 촉진사업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잠재적인 고용촉진	고령자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직장보육시설장려금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안정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금제부금의 지원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내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훈련시설자금 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 지원, 고령자수강비 장려금 교육수강비 대부	

다. 法定退職金制度

退職金이란 従業員의 退職으로 고용관계가 消滅한 경우에 事業主 또는 退職金管理機關이 근로계약에 定해진 규정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一時金 혹은 定期的인 給付를 말한다. 퇴직금을 一時金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지만 최근 일본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퇴직연금이 제도화 되어 있다.

1) 退職手當(OECD)과 法定退職金(우리나라)의 比較

OECD가 요구하는 퇴직수당에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위하여 OECD의 퇴직수당은 무엇이며 우리의 법정퇴직금제도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OECD의 退職手當이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에 의하여 雇傭關係가 消滅한 종사자에게 使用主 또는 社會保險管理機關이 생활보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급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法定退職金制度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하여 強制的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退職事由에 관계 없이 사용주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제도이다. 즉 OECD의 作成基準은 퇴직사유가 勞動市場에 의한 整理解雇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는 整理解雇 뿐만아니라 本人의 自發的 意思에 의한 移職에서 停年退職까지 포함하고 있어 支給事由의 범위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법정퇴직금제도의 機能은 失業手當의 역할뿐만 아니라 老後生活의 保障役割까지 複合的인 機能을 가진 制度이다. 結論的으로, OECD의 퇴직수당은 勞動市場에 의해 整理解雇된 勤勞者를 對象으로 실업위험에만 대비하는 社會보험임에 비하여 우리의 법정퇴직금은 退職事由에 관계없이 退職하는 勤勞者를 對象으로 失業危險에서 老後生活의 保障까지 대비하는 民間福祉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退職對象과 퇴직금(수당)의 役割에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법정퇴직금을 社會보장비 지출규모에 包含하였다.

그 배경은 아래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OECD의 統計作成基準에는 企業主가 法律에 의하여 強制的으로 負擔하는 社會保障의 支出財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OECD의 퇴직수당이 整理解雇를 당한자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지급하는 手當인 만큼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 또한 退職後 勤勞者の 生活安定과 失業時의 生活保障 내지 補助를 目的으로 지급하는 給與라는 점이다.

參考로 法定退職金の 性格을 살펴 봄으로서 위의 두번째 背景을 포괄적으로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一般的으로 법정퇴직금의 性格에 관해서는 功勞補償說, 賃金後拂說, 生活保障說(社會保障說)을 들 수 있으며, 結論的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정퇴직금의 性格을 社會(生活)保障說에 主안점을 두어 접근하였다. 먼저 功勞補償說이란 기업측에서 주장하는 견해로서 근로자가 재직시 기업에 공헌한데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說로 은혜적 급여의 性格을 갖는다. 다음으로 賃金後拂說이란 근로자측이 주장하는 견해로서 재직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이 본래 지불되어야 할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을 후불한다는 說로 사원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끝으로 社會(生活)保障說이란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이론으로 국가적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지 못한 현실정하에서 퇴직후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실업시의 생활보장 내지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說이다. 過去에는 근로자측에서 많이 주장하였으나 最近에는 경영자측에서도 社員の 福利厚生을 增進시킨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위의 3가지설은 퇴직금의 각기 다른 側面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떤 說을 취하고 어떤 說을 배격하는 것은 퇴직금의 性格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즉 공로보상설과 임금후불설은 각각 퇴직금 設定基準 및 賃金體系上的 性格을 반영하는 것임

에 비하여 社會(生活)保障說은 퇴직금의 目的을 설명하는 說이다. 궁극적으로 퇴직금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저축 및 국가의 사회보장체제와 補完關係를 유지하면서 기업보상체제의 하나로써 退職 以後의 소득을 補填해 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2) 運營

우리나라의 退職金制度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953년에 동법이 제정된 이후 8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退職金制度는 제정당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任意規定으로 하였으나 1961년 1차 개정에서 퇴직금을 法定으로 하되 사용자는 勤勞者에게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平均賃金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시 1975년도에 16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退職金支給은 기업에 따라서 法定支給率만 지급하거나 勞使協約이나 別途의 規定 등에 의하여 法定支給率에 累進率을 追加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은 最小의 義務事項을 규정한 법으로 기업주가 후자처럼 法の 最小規定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률적 强行規定(단체협약 등)의 뒷받침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支給率을 區分하지 않고 함께 계상하였다. 또한 우리의 退職金制度로는 勤勞基準法上的 법정퇴직금제도와 特殊職域年金(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및 군인연금)制度에 의한 퇴직 일시금 및 퇴직연금이 있다. 참고로 勤勞基準法에 退職金支給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급을 保障하기 위한 方法에 관한 규정이 없어 企業倒産의 경우 退職金確保는 어려운 실정이다.

3) 給與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失業給與는 약 105억원(1996년)이 지출되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연도별 法定退職金額은 국세청에 의뢰하여 통계를 생산하였으며, 1996년도에 지급한 총액은 5조 4,529억원으로 이를 OECD의 退職手當(10.3)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1 참조). 반면에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퇴직금은 老齡現金給與(1)에 포함하였다(表 III-1 참조). 여기서 국가나 地方自治團體 그리고 私立學校의 退職者中 특수직역연금의 適用對象이 아닌자에게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은 본 급여(10.3)에 포함하였다. 특히 특수직역연금 적용대상자의 퇴직금은 所得稅法 제12조에서 非課稅對象으로 규정하고 있어 國稅廳의 “퇴직소득원천징수”화일에는 根本적으로 資料가 入力되지 않아 二重計算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統計分類側面에서 볼 때, 법정퇴직금은 整理解雇(自發的 移職 포함) 등으로 早期退職하는 경우와 停年退職하는 경우로 分類하여 前者는 OECD의 失業給與(10)에 後者는 老齡現金給與(1)로 分類하여야 하지만 국세청의 자료화일에 退職事由別로 법정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 모두 失業給與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까지 정리해고자에게 지급하는 “退職手當”에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산출한 失業給與(10)가 一部 過大計上³²⁾된 점은 현재 統計分類의 限界點으로 指摘될 수 있다.

32) 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이직자 중 정년퇴직자는 1.2%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퇴직금('96)중 약 654억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자료: 노동부,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상·하반기, pp.428~429).

〈表 Ⅲ-11〉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失業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 심 영 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10. 실업 급여	10.1 실업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상병급여, 구직촉진수당(조기재 취직수당, 광역구직활 동비)	10,456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10.3 퇴직수당		법정퇴직금		5,452,948
계					5,463,404

9. 保健部門公共支出(OECD, Category 11)

OECD의 보건부문공공지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醫療保險과 醫療保護, 産業災害補償保險의 療養給與, 그리고 保健部門의 政府支出이 해당된다. 參考로 保健部門公共支出(Public Expenditure on Health)은 기존 우리나라의 國民醫療費의 통계작성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作成範圍에 있어서 國民醫療費는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을 포함함에 비하여 保健部門公共支出은 公共部門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아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 등

1) 運營

醫療保障制度는 醫療保險과 醫療保護制度로 二元化되어 있다. 먼저 醫療保險의 경우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래,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導入됨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 醫療保險制度는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지역의료보험이, 그리고 공무원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교 의료보험으로 형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醫療保護의 경우, 1978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보호제도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사람은 生活保護對象者와 醫療扶助對象者이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순자, 성병감염자 등), 2종(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등 3種類로 區分된다. 醫療保障의 傳達體系는 보건복지부의 감독하에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연합회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勤勞者가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렸을 경우(3日 以內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는 除外)에 療養費 全額이 지급되는 産業災害補償保險의 療養給與도 본 통계에 포함한다.

2) 給與

의료보험의 給與形態는 現物給與와 現金給與로 나눌 수 있다. 現物給與로는 요양급여, 분만급여, 자격상신후 계속 요양급여, 자격상신후 분만급여, 그리고 건강진단(공·교의료보험 대상자만 시행) 등이 있으며, 現金給與로는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분만수당, 그리고 본인부담

금의 보상금 등이 있다. 여기서 現金給與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을 산출하는데 除外하였다. 그 이유는 國際的으로 現金給與는 보건지출을 계산하는데 제외하는 것이 一般的 趨勢라는 점과 현금급여가 보건부문의 給與目的에 附合되게 支出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향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참고로 1996년도의 현금급여는 997억원에 이르고 있다. 醫療保護의 경우, 1種保護對象者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진료비가 全額無料이며 2種保護對象者는 외래진료비는 전액무료, 입원진료비는 정부와 본인이 분담하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상은 정부에서 대불한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다.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의 일정비율을 정부에서 부조하고 있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에 産業災害補償保險의 療養給與費를 포함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의 業務上 療養費는 제외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한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年金의 요양급여와 醫療保險의 요양비를 모두 포함하면 二重計算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自動車保險중 責任保險의 對人治療費가 除外되었지만 包含與否에 대하여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동차책임보험은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제5조)에 의한 強制保險으로 社會保障的 性格을 가진 보험이기 때문이다. 보건부문의 공공지출을 산출하는 입장에서 볼때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비록 責任保險이 民間部門에 의하여 運營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험이 強制保險과 社會保障的 性格을 가진 保險이란 성격을 고려할때 운영주체의 민간성에 미련을 가졌던 관련전문가들의 認識不足으로 보여진다. 물론 자동차보험이 앞으로 사회보험으로 정착되면 이런 논의는

필요 없을 것이다. 參考로 자동차보험이 社會保險이 되기 위하여서는 自動車文化에 관한 社會的 興件의 成熟과 國民들의 共感帶形成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財源마련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감수와 관련단체나 업계의 반발 등의 해결이 있는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1996년도에 지급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의 급여총액은 5조 8,080 억원이며, 이는 GDP(경상)의 1.5%이다. 이를 保險者別로 살펴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이 6,022억원,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4조 3,621억원, 의료보호에 대한 국가지원금이 5,007억원,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가 3,430억원이다. 사회보장비 산출을 위하여 OECD의 보건부문(11.1)에 포함시켜 통계를 산출하였다(表 III-12 참조).

나. 政府(公共)支出部門

1) 運營

OECD가 요구하는 보건부문의 급여는 公共部門에 限定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民間部門은 당연히 除外하였다. 따라서 공공부문중 앞에서 살펴본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를 제외한 政府部門의 豫算(국고 및 지방비 포함)을 어떻게 算出할 것인가가 현안과제이다. 保健部門公共支出의 산출은 各 行政部處別 保健事業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하는 방법과 UN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國民計定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後者를 택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부문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재 국민계정자료가 가장 유용한 자료라는 사실과 이미 '96년에 OECD에 「'96, '97HEALTH DATA」의 통계를 提出함에 있어 國民計定 資料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基礎資料를 활용함으로써 한 國家의 同一部門에 대한 통계수치가 다르다면 통계의 信賴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向後에는 多樣하고 細分化된 國·내외통계 생산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도 전자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政府支出部門의 통계 생산은 韓國銀行에서 매년 추계하는 國民計定の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중 “保健支出”을 이용하였다. 참고로 보건지출의 細部內譯은 최종소비지출, 사회보장수혜금 및 사회부조금, 충고정자본형성, 그리고 자본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민계정자료에 漏落 또는 다른 분야로 분류된 國防部の 保健醫療費와 法務部の 교정시설재소자 의료비, 在家老人支援의 健康診斷費를 추가·보완하여 본절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追加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防部에서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로는 의무물자, 의무장비, 의무시설의 보수 및 시설현대화가 있다. 둘째, 法務部の 교정시설재소자의 의료비를 들 수 있다. 재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비에는 일반환자와 특수환자(결핵, 나병, 정신병 등)의 치료, 중환자에 대한 사회병원으로 이송과 치료, 재소자에 대한 X-Ray촬영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전염병예방접종이 있다. 셋째, 保健福祉部の 在家老人支援의 健康診斷費 支援이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65세 이상의 生活保護對象 노인중 노인건강진단 希望者에 한하여 1次診斷(基本檢査)과 2次診斷(精密安全檢査)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整理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保健部門公共支出 = 의료보험 급여 + 의료보호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 일반정부의 보건지출(국민계정) + 군인보건의료비(국방부) +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법무부) + 생활보호대상자의 노인건강진단비(복지항목에 포함)

2) 給與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정부(공공)지출총액은 1조 216억원으로 이는 OECD의 사회보장비통계항목 중 보건부분의 공공지출(11.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2 참조).

〈表 III-12〉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保健部門 公共支出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 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 심 영 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11. 보건 부분	11.1 보건 부 문 의 공공지출	(생활보호) (의료보험) ¹⁾ 연합회, 공단	의료보호	500,686
		(산재보험)	요양급여,분만급여	4,964,382
		(법무부)	요양급여	342,974
		(국방부)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	5,812
		(보건복지부)	군인보건의료서비스(의무물자 등)	70,662
		(한국은행)	재가노인건강진단	311
			국민계정 최종소비지출,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금, 국민계정 총고정자본형성, 국민계정 자본이전	944,800
계				6,829,627

註: 1) 현금급여(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금보상금) 제외

10. 其他給與(OECD, Category 13)

OECD의 其他給與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공공부조제도,

귀순북한동포보호제도, 의사상자예우, 그리고 재해구호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公共扶助制度

1) 生計保護

가) 運營

1961년에 生活保護法이 제정된 후 생활보호대상자로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가 있다. 對象要件을 보면, 居宅保護對象者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高齡者, 18세 미만의 兒童, 妊産婦, 不具廢疾者 등 要保護對象者이다. 施設保護對象者는 거택보호대상자에 해당되거나 住居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수용이 필요한 자이다. 그리고 自活保護對象者는 失職, 其他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곤란한 요보호대상자로 하고 있다.

傳達體系를 보면 中央業務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地方業務는 행정자치부산하의 一般行政體系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업무수행체계가 多元的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豫算支援

생활보호대상자의 給與種類를 보면 居宅 및 施設保護對象者에게는 생계·의료·장제보호와 教育保護를, 自活保護對象者에게는 職業訓練(아래에서 별도언급), 생업자금융자, 취로사업 등의 自立自活을 위주로 한 支援事業과 의료·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居宅保護對象者에게는 자가소득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비를 1인당 월 72,513원에서 80,696원까지 차등 실시('96년기준)하고 있다. 여기에다 醫療保護費(18,

371원)와 學費支援額(3,851원)을 포함한 1인당 월 평균금액을 10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施設保護對象者에게는 생계비(주식, 부식, 연료, 피복비 등)와 의료보호비 및 학비지원비를 포함한 1인당 월 평균 92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自活保護對象者에게는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자활지원센터(10개소) 등의 自立自活을 위주로 한 지원사업으로 50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거택보호, 시설보호 그리고 자활보호로 지원되는 금액('96년도)은 3,794억원(국고 2,956억원, 지방비 838억원)이며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로 지원되고 있다. 이 지원금액은 其他給與(13)의 低所得(13.1)에 포함시켜 통계를 生産(表 III-13 참조)하였으며 여기에는 醫療保護, 教育保護, 그리고 脆弱階層支援金이 除外되어 있다.

2) 脆弱階層支援

가) 障礙人生計補助手當

(1) 運營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日常生活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重症·重複障礙人에 대하여 生計補助手當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 家庭의 生活安定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豫算支援

'96년도 예산기준을 보면, 1인당 월 4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본 수당의 급여는 全體登錄障礙人의 약 4.5%에 해당한다. 1996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를 합한 全體豫算은 약 72억원(국고 50.4억원, 지방비 21.6억원)이며, 국고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비 7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급여(13)의 細部關心領域인 현금급여(13.1.1)에 포함

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나) 老齡手當

(1) 運營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經濟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老人들에게 直接的이고 實質的인 노후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老後生活의 安定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노인복지법 제13조)로 施設保護對象者는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시설)에 수용·보호중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他施設保護對象者와 국립소록도병원도 包含한다.

(2) 豫算支援

노령수당은 年齡에 따라 1인당 월 3만원(65세~79세, '96년 기준)에서 50천원(80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1996년도 전체예산은 약 672억원(국고 470억원, 지방비 201억원)이며, 국고의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50%, 지방이 70%이다. 이 제도는 其他給與(13)의 關心領域인 低所得(13.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다) 少年·少女家長世帶保護

兒童健全育成事業에는 불우아동결연사업, 입양사업, 그룹홈시범운영, 그리고 소년소녀가정보호 등의 사업이 있음을 本章 6절(마)에서 이미 살펴 보았다. 이들 사업중 現金·現物給與的 生活保護性格을 가진 少年少女家長世帶保護事業만 살펴보고 가족복지서비스적 성격을 가진 앞의 세가지 사업은 이미 아동건전육성사업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除外한다.

(1) 運營

정부는 만 18세 미만의 少年·少女가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家庭의 生計를 책임져야 하는 世帯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生計·教育·醫療保護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여 健全한 社會人으로 育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保護對象者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함으로써 政府保護가 필요한자 중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에 적합한 자이다.

(2) 豫算支援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67억원(국고 52억원, 지방비 15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급여(13)'의 關心領域인 '저소득(13.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3) 教育保護

가) 運營

政府는 生活保護對象者 子女들에게 社會가 요구하는 最小限의 教育機會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貧困의 惡循環을 극복할 수 있도록 學費를 支援하고 있다. 1979년부터는 中學生子女에게, 1990년부터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實業系 高等學校學生까지 學費全額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부터는 성적이 30% 이내에 드는 人文系 高等學校에 재학 중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도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나) 豫算支援

'96년도 예산기준 지원금액은 702억원(국고 535억원, 지방비 167억원)으로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기타급여(13)'의 關心領域인 '저소득(13.1)'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4) 醫療保護

본장 9절 참조.

5) 浮浪人施設保護

가) 運營

一定한 주거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며 구걸하거나 露宿하는 浮浪人을 對象으로 복지적 차원에서 이들을 施設에 收容함으로써 健全한 社會人으로 復歸를 유도하고 社會의 統合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보호서비스로는 收容保護와 自活事業이 운영되고 있다.

나) 豫算支援

정부의 예산지원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人件費와 施設運營費, 自活事業費 그리고 機能補强費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도 전체예산은 약 144억원(국고 98억원, 지방비 46억원)이며, 이 제도는 기타급여(13)의 세부관심영역인 기타서비스(13.3.2)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나. 義士傷者 禮遇

1) 運營

他人의 急迫한 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자의 遺族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家族에 대하여 필요한 補償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社會正義의 實現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急迫한 危害는 범죄행위의 제지, 승용물의 사고, 천재지변 등이 있다.

2) 豫算支援

給與의 種類로는 보상금과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그리고 장제보호가 있다. 보상금액은 사건발생시점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는데 1995년 9월 1일부터 1996년 8월 31일 사이의 의사자는 34,578천원, 의상자는 等級(1~6급)에 따라 17,289천원에서 6,484천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1996년도 총예산은 7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급여는 기타항목(13.3)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다. 災害救護

1) 運營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非常災害가 발생하였을 때에 應急的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罹災民의 보호 및 재해의 복구와 社會秩序의 유지를 기함에 있다.

2) 豫算支援

給與의 種類에는 사망자·부상자에 대한 위로금과 생계보조금, 이재

민응급생계구호, 재해복구지원 그리고 기타지원이 있다. '96년도 罹災民救護費 支援基準에 따르면 위로금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사망·실종자의 생계보조금은 세대당 400~500만원, 이재민응급생계구호는 1인 1일당 1,903원, 재해복구지원으로 침수주택은 7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세입자보조비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支援豫算은 의연금 또는 국고로 부담한다. 이때의 국고는 保健福祉部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기타지원으로는 주택복구비와 무상양곡지급이 있으며, 住宅復舊費에는 국고와 지방비가, 무상양곡지급에는 국고지원 뿐이다. 이 경우 주택복구비는 내무부가, 무상양곡지급은 농림부가 부담한다. 1996년도 정부지출총액은 290억원(주택피해복구비 240억원, 이재민 50억원)으로 이는 '其他給與(13.3)'의 세부관심영역인 '現金給與(13.3.1)'에 포함시켰다(表 III-13 참조).

라. 歸順北韓同胞保護

우리나라의 사회보호대상자중 OECD가 요구하는 '原住民'(13.2)은 없으며 '移民者 및 亡命者(13.4)'에 해당하는 제도로 歸順北韓同胞保護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運營

北韓에서 대한민국으로 歸順한 同胞를 對象으로 정착을 돕는 한편 이들이 자유롭게 生業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豫算支援

給與의 種類에는 정착금의 지급과 생활보호, 주거지원, 교육보호 그리고 의료보호가 있다. '96년도 국고지원기준에 따르면 정착금과 민간

경상보조로 약 8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이민자 및 망명자 항목(13.4)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하였다(表 III-13 참조).

〈表 III-13〉 OECD基準에 따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1996)

- 其他給與 部門 -

(단위: 백만원)

OECD의 사회보장비 통계작성영역			한 국 의 급 여 제 도		
부 문	관심영역	세부관심영역	급여제도/기관	급 여 종 류	급여액
13. 기타 급여	13.1 저소득	13.1.1 현금급여	생계보호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379,351
			교육보호	중학생수업료및입학금, 실업계 고교생수업료및입학금, 인문 계 고교생수업료및입학금	70,194
			취약계층지원		
			재가장애인보호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7,200
			재가노인지원	노령수당	67,158
			아동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6,698
		13.1.2 서비스			
	13.2 원주민	13.2.1 현금급여			
		13.2.2 서비스			
	13.3 기타	13.3.1 현금급여	의사상자예우, 재해구호	보상금 주택피해복구비 이재민	709 23,962 5,055
			13.3.2 서비스	부랑인시설보호	부랑인시설운영비, 부랑아동 시설 운영비, 부랑인자활사업 비, 자치단체자본이전
	13.4 이민자 및 망명자	13.4.1 현금급여	귀순북한동포 보호	보상금, 민간경상이전	797
		13.4.2 서비스			
	계				

11. 疾病給與 및 住居給與(OECD, Category 4, 12)

OECD의 疾病給與 및 住居給與는 우리나라가 아직 導入하지 않고 있는 制度이다. 疾病給與(4)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의료보험의 傷病手當(1978년 폐지)과 각 사업장의 有給傷病休暇給與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包含與否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앞(II장 2절의 ‘나’항 4))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住居給與(12)에 대하여도 앞(II장 2절의 ‘나’항 12))에서 未導入을 기술하였다. 다만, OECD의 統計作成基準中 中央政府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地方政府나 非營利組織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 기관들이 받을 策定賃貸料가 낮아질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하여 OECD에서는 새로운 관심영역의 設定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통계생산을 요구하지 않고있다. 參考로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건설교통부의 賃貸住宅建設事業의 財政支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給與는 本 研究에서 統計生産을 할 수 없었던 部門이었다.

IV.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國際比較

本章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을 綜合적으로 提示하고 이 결과를 多樣하게 國際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生産項目

OECD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산출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規模는 과연 얼마나 되며 各 部門別로 支出規模와 構成百分率は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經常 社會保障費(1996년) 支出은 법률에 의하여 기업주가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法定退職金 5조 4,530 억원을 포함할 경우 20조 5,627억원으로 나타났다(表 IV-1, 附表 21, 22 참조). 이는 國內總生産 대비 5.28%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한 것이다. 한편 法定退職金을 除外한 社會保障費 支出規模는 15조 1,097억 원으로 GDP 대비 3.88%이다(表 IV-6 참조). 다음으로 GDP 대비 社會保障비지출의 비율을 보면, 1990년의 3.90%에서 1996년 5.28%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社會保障비 지출금액은 年平均 19.7% 씩 높게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IV-1〉 우리나라의 年度別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단위: 백만원, %)

사회보장비 지출부문	지출규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 노령연금급여	1,111,711	1,420,934	1,968,440	2,573,226	3,192,330	4,187,112	4,389,787(21.3)
2. 장애연금급여	147,173	212,796	252,421	275,269	321,565	360,180	407,547(2.0)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365,722	509,275	671,569	629,115	730,001	854,112	1,012,363(4.9)
4. 질병급여	-	-	-	-	-	-	-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²⁾	102,064	103,924	121,272	157,177	341,666	427,299	536,590(2.6)
6. 유족급여	290,239	401,058	442,005	479,196	552,148	606,683	674,484(3.3)
7. 가족연금급여	2,079	4,913	5,088	7,027	8,265	10,740	11,077(0.1)
8. 가족복지서비스	57,807	83,824	105,778	146,798	176,595	251,021	326,274(1.6)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112,881	110,846	178,743	225,758	195,317	266,244	335,974(1.6)
10. 실업급여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63,404(26.6)
• 실업보상 ³⁾	-	-	-	-	-	-	10,456(0.05)
• 퇴직수당 ⁴⁾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26.5)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33.2)
12. 주거급여 ⁵⁾	-	-	-	-	-	-	-
13. 기타급여 ⁶⁾	335,323	335,836	328,239	358,840	362,789	450,658	575,548(2.8)
계	7,001,683	8,204,062	10,168,499	11,814,173	14,433,978	17,906,353	20,562,674(100.0)
GDP(경상)에 대한 비율	3.90	3.80	4.23	4.42	4.72	5.09	5.28

註: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고유사업)에 의한 지방비는 제외되었음.

2)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의 현물급여를 포함.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임.

4) 우리나라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임.

5)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금은 OECD가 앞으로 요구할 계획임.

6) 공공부조사업 중 대부분의 현금급여를 포함.

참고로 사회보장비 지출을 산출하기 위하여 포함되었던 우리나라의 社會保障制度를 要約하면 <表 IV-2>와 같다.

〈表 IV-2〉 社會保障費支出 部門別 우리나라의 관련 給與制度

OECD의 부문	우리나라의 관련 급여제도
1. 노령연금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노령(퇴직)연금 등
2. 장애연금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가보훈의 장애(상이)연금 등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
4. 질병급여	• 관련제도 없음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 <각 사업장의 유급병가휴가 기간 중 지급된 급여> • (교육부)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운영지원 • (노동부) 장애인직업훈련실시기관지원 • (보건복지부) 노인·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지출
6. 유족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가보훈의 유족연금 등
7. 가족연금급여	• (보건복지부) 편부모가정지원(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등) • (각 사업장)의 [출산유급휴가], (보훈처) 국가보훈의 학자금지원
8. 가족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사업, 복지관운영 등 지원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사업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각 지방노동관서운영비 지원 • (산업인력관리공단) 직업능력·고용촉진 등의 사업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술훈련·고용촉진·시설확충사업
10. 실업급여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지급액
11. 보건부문공공지출	• (국민계정) 일반정부의 목적별 주요지출 중 보건지출 • 의료보험, 의료보호의 현물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 (법무부) 교정시설재소자의료비, • (국방부) 군인보건의료서비스, (건설교통부) <자동차책임보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12. 주거급여	• 관련제도 없음.
13. 기타급여	• (보건복지부)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와 일부 현물급여 • (내무부) 재해구호

註: [] 표는 기초자료의 한계로 미생산통계임.

< > 표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OECD통계로 분류하는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생산한 11개 부문의 사회보장비 가운데 構成百分率(1996년도)은 保健部門公共支出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失業給

與³³⁾ 26.6%, 老齡現金給與 21.3%,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 4.9%順이며, 家族現金給與는 0.1%로 가장 낮았다. 여기서 失業給與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法定退職金이 包含³⁴⁾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除外한 실업급여의 백분율은 0.05%(GDP 대비 0.003%)밖에 안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규모 중 법정퇴직금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既存의 社會保障費는 過小評價되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OECD가 요구하는 全體 13개부문의 96개항목 중 11個部門의 51個項目을 산출하여 제시하였으며, 두 개 部門(疾病給與, 住居給與)을 포함한 45個項目은 基礎資料의 限界로 생산할 수 없었거나 아직 우리나라에 制度가 導入되지 않아 제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OECD가 요구하는 전체통계중 生産·提出한 統計는 53.1%(96)이며, OECD가 公表한 最近의 資料(1993년)와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46.9%로 OECD국가의 平均提出率³⁵⁾ 36.7%보다 높은 수준이다(表 IV-3, 附表 20 참조). 한편, 생산되고 있지 않은 45個統計를 原因別로 보면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制度는 施行되고 있으나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細分化를 할 수 없는 것이 13個項目(13.5%)이며 둘째, 基礎資料가 없어 생산할 수 없는 것이 1個項目(1.0%)이며 셋째, 制度가 導入되지 않아 통계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 31個項目(32.3%)이다. 앞으로 첫 번째 원인에 대하여는 給與制度의 內實化와 통계의 信賴性에 대한 부단한 努力이 필요하다고 본다.

33) OECD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을 합산하였다.

34) 법정퇴직금은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와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전자는 실업급여(10)에, 후자는 노령연금급여(1)로 분류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사유별 자료가 없어 실업급여(10)에 함께 계상하였다.

35) 전체 96개 통계에 대한 OECD회원국이 제출한 평균통계항목수의 백분율이다.

〈表 IV-3〉 OECD國家의 社會保障統計 平均提出率

(단위: %)

국 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OECD 국가(한국 포함)	42.25	37.83	38.79	37.29	—	—	—
OECD 국가(한국 제외)	41.93	37.33	38.37	36.73	—	—	—
한 국	50.00	50.00	48.96	47.92	47.92	52.08	53.13

2.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負擔形態

國民經濟의 흐름은 生産, 分配, 支出의 세 측면에서 三面等價의 原則으로 파악하듯이 社會保障費의 支出도 機能, 制度, 財源의 三面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機能側面은 앞에서 살펴본 (表 IV-1)의 13部門이 해당되며, 制度側面은 지금까지 OECD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분류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制度別로 再分類하였으며(表 IV-4 참조), 그리고 財源側面은 부담주체별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表 IV-5 참조). 機能側面은 이미 본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1996년도 경상 사회보장비의 지출을 制度側面에서 보면(表 IV-4 참조), 公共扶助가 1조 7,716억원을 지출하여 8.6%를, 社會福祉서비스가 2조 2,646억원(11.0%)을, 社會保險이 11조 736억(53.9%)을, 그리고 民間部門(事業主 부담)이 5조 4,530억원(26.5%)을 지출하였다. 또한 財源(負擔主體)側面을 보면(表 IV-5 참조), 政府가 4조 362억원을 지출하여 19.6%를, 社會保險이 11조 736억(53.9%)을, 그리고 事業主가 5조 4,530억원(26.5%)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이 社會保障費의 지출을 機能, 制度, 그리고 財源의 三面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

으며 金額이 서로 一致하였다.

制度側面과 財源側面을 綜合的으로 살펴보면, 전체 社會보장비 지출 중 公共部門이 총 15조 1,097억원을 지출하여 73.5%를, 民間部門(事業主 負擔)이 5조 4,530억원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출 비중은 社會保險, 事業主, 그리고 政府順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주요 OECD국가의 社會보장비 구성은 社會保險이 70~80%,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가 20~30%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4大 社會保險의 全國民 擴大³⁶⁾와 기타 社會복지제도의 成熟化³⁷⁾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財源(負擔主體)別 年平均增加率을 살펴보면, 政府가 17.6%, 社會保險이 20.2%, 事業主가 20.3%로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表 IV-5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 社會保障費 支出의 25%를 차지하는 法定退職금은 OECD국가와 달리 기업주가 재원을 관리하고 있어 企業倒産의 경우 退職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6) 현재 4대사회보험의 가입자를 보면(1995년 기준), 공공연금은 15세 이상 취업자의 약 4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전체 근로자의 각각 65%, 34%이며, 의료보험은 급여일수 초과 등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피보험자와 보험적용누락자를 고려하면 아직 100%가 되지 않고 있다.

37) 절대빈곤층의 극히 일부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공공부조를 받고 있을 뿐이다.

〈表 IV-4〉 社會保障制度別 支出現況(1996)

(단위: 백만원)

	급 여 제 도		급여종류/기관	급여총액
합 계				20,562,673
공 공 부 조	계			1,771,556
	생 활 보 호		생계보호	379,351
			일시구호 등	709
			교육보호	70,194
			노동부(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	25,221
			부랑인시설보호	14,423
			의료보호	500,686
			국가보훈	751,158
	재 해 구 호		내무부(주택복구비,이재민)	29,017
귀순북한동포보호		정착금	797	
사 회 보 지 서 비 스	계			2,264,604
	가 정 보 지		노인복지	285,801
			장애인복지	114,985
			아동복지	291,530
			가정복지	18,947
			사회복지관	31,665
	근 로 보 지		교육부(장애인특수학교)	210,162
			노동부(고용서비스 등, 직업훈련기관지원)	62,275
			산업인력관리공단	209,74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7,373
			복지부(장애인보호작업장)	538
	보 건	국민계정	정부의 소비+투자	944,800
			법무부(재소자의료비)	5,812
		보 건 의 료	국방부(군인보건의료서비스)	70,662
			복지부(재가노인건강진단)	311

〈表 IV-4〉 계 속

(단위: 백만원)

	급 여 제 도	급여종류/기관	급여총액
사 회 보 험	계		11,073,565
	연 금	국민연금	1,117,645
		공무원연금	2,397,589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35,648
		군인연금	871,684
	의 료 보 장	직장·지역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공단)	4,964,382
		의료보호(생활보호에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1,355,337
	고 용 보 험		31,280
사업주	법 정 퇴 직 금		5,452,948

註: 경상경비-행정비용(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운영비)임.

〈表 IV-5〉 社會保障費의 財源(負擔主體)別 支出現況(1990~1996년)

(단위: 10억원,%)

연 도	공 공 부 문		사업주 ³⁾	총 계
	정 부 ¹⁾	사회보험 ²⁾		
1990	1,526	3,679	1,797	7,002
1991	1,786	4,297	2,121	8,204
1992	2,140	5,423	2,605	10,168
1993	2,430	6,398	2,987	11,814
1994	2,868	7,581	3,985	14,434
1995	3,414	9,570	4,922	17,906
1996	4,036	11,074	5,453	20,563
(구성백분율)	(19.6)	(53.9)	(26.5)	(100.0)
(연평균증가율)	(17.6)	(20.2)	(20.3)	(19.7)

註: 1)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출금액임.

2) 4대 사회보험의 급여액임.

3) 법정퇴직금 지급액임.

3. 社會保障費 支出의 國際比較

이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규모가 國際적으로 어느水準에 있으며, 部門別로 主要 會員國과 比較하여 보고 끝으로 그 差異點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기로 한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포괄범위가 국가마다 상이함으로 국가간 社會保障費支出의 單純比較에는 限界가 있음을 밝혀둔다.

가. 社會保障費 支出比較

우리나라의 經常 社會保障費(1996년) 支出은 20조 5,627억원으로 國內總生産 대비 5.28%임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 연도별로 經常 및 實質 社會保障費 支出을 알아보기로 한다. <表 IV-6>의 實質 社會保障費 및 實質 1人當 社會保障費 支出은 1990년 가격기준 GDP Deflator에 의해 조정되었다. 먼저 經常 社會保障費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0년 7조 20억원이었던 것이 1996년말 현재 20조 5,627억원으로 19.7%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實質 社會保障費의 경우에도 1996년말 현재 14조 5,422억원에 이르고 있어 13.0%의 年平均增加率을 보였다. 이는 全國民醫療保險의 導入(1989년)과 法定退職金의 증가, 國民年金(특례노령연금 1993년) 및 雇傭保險(고용안정사업 1995년, 실업급여 1996년)의 給與實施, 그리고 低所得層에 대한 정부의 支援擴大(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과 재활병원운영 지원, 저소득가정 지원) 등에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社會保障費를 人口數로 나눈 1人當 社會保障費의 경우 1996년 현재 경상지출이 약 45만원(561\$), 실질지출이 약 32만원(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6〉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1990~1996년)

연 도	법정퇴직금 포함					법정퇴직금 제외				
	총계(10억원)		GDP 대비 비율 (%)	1인당(원)		총계(10억원)		GDP 대비 비율 (%)	1인당(원)	
	경상	실질 ¹⁾		경상	실질 ¹⁾	경상	실질 ¹⁾		경상	실질 ¹⁾
1990	7,002	7,002	3.90	163,326	163,326	5,204	5,204	2.90	121,400	121,400
1991	8,204	7,451	3.80	189,489	172,106	6,083	5,525	2.82	140,506	127,617
1992	10,168	8,706	4.23	232,434	199,001	7,563	6,475	3.15	172,877	148,011
1993	11,814	9,629	4.42	267,321	217,866	8,828	7,194	3.30	199,744	162,791
1994	14,434	11,155	4.72	323,331	249,869	10,449	8,075	3.42	234,074	180,892
1995	17,906	13,099	5.09	397,098	290,489	12,984	9,498	3.69	287,939	210,636
1996	20,563	14,542	5.28	451,478	319,291	15,110	10,686	3.88	331,752	234,619
연평균 증가율	19.7	13.0	—	18.5	11.8	19.4	12.7	—	18.2	11.6

註: 1) 실질 사회보장비=(경상 사회보장비÷GDP Deflator)×100

社會保障費支出 水準을 OECD회원국과 比較하기 위하여 OECD가 공표한 최근년도인 1993년과 比較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4.4%로 미국의 15.6%, 일본의 12.4%(1992년), 독일의 28.3%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은 30%를 넘어 우리의 7배 이상이 된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는 OECD회원국의 15~3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이를 OECD회원국과의 經濟水準을 고려하여 두 가지 側面에서 分析하여 보자.

먼저 經濟水準이 같은 年度와 比較해 보면, 1993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7,750달러)와 비슷한 1975년의 미국은 14.50%, 일본(1978년)이 11.2%, 독일(1975년)이 26.23%로 우리나라보다 3~6배나 높다. 社會保障費를 人口數로 나눈 1인당 사회보장비의 경우 1993년 현재 우

리나라의 經常支出이 약 27만원(333\$)으로 미국 1,064\$, 일본 968\$, 서독 1,985\$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음을 알 수 있다(表 IV-7 참조).

다음으로 1993年度를 基準으로 우리의 經濟水準과 비슷한 그리이스(8,883달러)는 社會保障費가 17.24%, 포르투갈(8,315달러)은 16.37%, 그리고 우리보다 經濟水準이 낮은 멕시코(4,414달러)는 3.83%였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그 나라의 經濟水準에 따라 다르지만 一定한 比例關係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어느 水準에서는 더 이상 增加하지 않음도 알 수 있다.

〈表 IV-7〉 OECD 主要會員國의 1人當 經常社會保障費(1993)

(단위: GDP에 대한 %)

	사회보장 지출총액 (자국통화:십억)	인구수 (천명)	환율(\$) (NCU per US\$)	1인당 사회보장비 (US\$)
한 국('93)	11,814원	44,195	802.67	333
('96)	20,563원	45,545	804.45	561
일 본('78)	3,737¥	114,920	210.44	968
미 국('75)	230US\$	215,973	1.00	1,064
서 독('75)	241DM	61,829	2.46	1,985

資料: 1)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2) OECD, *New Orientations for Social Policy*, 1994.

나. 社會保障 部門別 支出比較

社會保障費 支出規模는 각국이 導入하고 있는 制度와 그 成熟度 등에 따라 다르고, 給與水準 또한 각 제도가 포함하고 있는 給與種類 및 保障範圍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量的인 비교는 限界가 있다.

그러나 GDP에 대한 總給與比率과 給與의 構成比를 통해 각국의 社會保障水準을 把握해 볼 수 있다. <表 IV-8>에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1993년 현재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GDP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출비율이 높은 국가로는 스웨덴으로서 38.3%를 지출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20%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은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의 12~15%에 머물어 있는데, 이것은 老齡人口 比率이 유럽국가들보다 낮은 12% 水準이라는 점과도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DP의 20% 이상을 社會保障費로 支出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미국, 일본 등과는 달리 대부분 住居給與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영국, 스웨덴, 프랑스 등은 給與 構成比의 3% 이상을 주거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은 疾病給與가 실시되고 있으나 GDP에 대비해 볼때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疾病給與와 住居給與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家族現金給與 조차 아주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미 실시하고 있는 社會保障制度를 除外하면, 선진국과의 급여수준의 差異는 다소 좁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8〉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部門別 支出比率(1993)

(단위: GDP에 대한 %)

금 여 부 문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서독)	스웨덴	프랑스
총 지 출	4.42	12.44	15.64	22.84	28.27 (24.67)	38.03	28.73
노령·장애·유족	1.24	6.00	7.07	9.03	13.01 (11.89)	12.87	12.66
산업재해	0.24	0.21	0.70	0.09	0.86 (0.81)	0.79	0.55
질병급여	-	0.06	· ·	0.21	0.40 (0.38)	1.08	0.53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0.06	0.20	0.06	0.53	0.26 (0.18)	3.78	0.70
가족현금	0.00	0.20	0.35	1.81	1.37 (1.16)	2.78	2.12
가족복지서비스	0.05	0.22	0.29	0.48	0.75 (0.55)	2.61	0.41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0.08	0.09	0.21	0.57	1.59 (1.16)	2.95	1.22
실업급여	1.12	0.27	0.58	1.24	2.75 (1.67)	2.89	2.11
보건부문공공지출	1.49	5.07	5.85	5.78	6.43 (6.04)	6.22	7.28
주거급여	-	-	-	1.54	0.24 (0.17)	1.17	0.92
기타급여	0.13	0.12	0.55	1.56	0.59 (0.60)	0.91	0.22

註: - 표는 계도미도입.

· · 표는 자료없음.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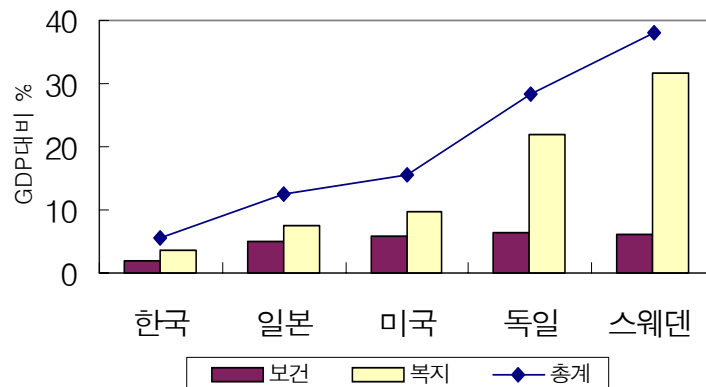
다. 保健·福祉部門의 支出比較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福祉水準을 2大 軸인 福祉部門과 保健部門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福祉部門은 <表 IV-1>의 13個 部門 중 保健部門公共支出(11) 部門만 除外한 것이며, 반대로 保健部門은 保健部門公共支出(11) 部門만 包含한 것이다. [圖 IV-1]은 主要國家別 보건

과 복지부문간의 지출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福祉部門의 社會保障費 總規模는 1996년말 현재 13조 7,330억원으로 國內總生産(경상 GDP)의 3.52%이다. 이는 전년보다 11.3% 늘어난 것으로 사회보장으로 받은 국민 1인당 1년간의 급여액이 30만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福祉部門 支出規模를 GDP에 대비해 보면, 1993년에 2.9%로 미국의 9.8%, 일본의 7.4%(1992년), 독일의 21.8%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25%가 넘어 우리의 8배 이상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가 OECD회원국의 12~40%에 불과한 낮은 水準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保健部門의 總規模는 1996년말 현재 6조 8,296억원으로 國內總生産(경상 GDP)의 1.75%이다. 이는 전년보다 22.6% 늘어난 것으로 사회보장으로 받은 국민 1인당 급여액이 15만원인 것으로 계산된다. 保健部門의 지출규모를 GDP에 대비해 보면, 1993년에 1.5%로 미국의 5.9%, 일본의 5.0% (1992년), 독일의 6.4%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벨지움,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는 7%를 넘어 우리의 5배 이상이 된다. 우리나라 保健部門의 社會保障費는 OECD회원국의 21~28%에 不過한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福祉部門과 保健部門이 각각 3.52%, 1.75%로 福祉部門에 대한 保健部門의 比率은 약 50% 수준임을 알 수 있다. [圖 IV-1]에서 예시한 선진국 중 일본과 미국은 그 비율이 60%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독일과 스웨덴은 30%로 앞의 比較國家에 비하여 약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社會保障費支出水準이 높아질수록 保健部門에 비하여 福祉部門의 比率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다(表 IV-9 참조).

〔圖 IV-1〕 主要 國家別 保健과 福祉部門間 支出比率의 差異(1993)

〈表 IV-9〉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部門別 支出比率(1993)
(단위: GDP에 대한 %)

	총 지 출	복지부문지출	보건부문지출
한 국	4.42	2.93	1.49
일 본	12.44	7.37	5.27
미 국	15.64	9.79	5.85
독일(서독)	28.27(24.67)	21.84(18.63)	6.43(6.04)
스 웨 덴	38.03	31.81	6.22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라. 民間部門의 支出比較

우리는 지금까지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을 統合한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公共부문과 民間부문으로 구성된 社會保障費 支出중 우리나라 民間部門의 支出給與에 대하여 알

아보기로 한다. 여기서 民間部門의 支出이란 기업이 法律에 의하여 勤勞者の 老齡, 疾病, 死亡, 職業病, 그리고 失業 등의 社會的 危險에 대한 소득상실이나 이들의 지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強制的 給與(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³⁸⁾를 말한다.

<表 IV-10>은 OECD 主要會員國의 民間部門의 給與가 7個部門에서 支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별로 制度差異가 있어 單純比較는 어렵지만 표 <表 IV-10>에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1993년 현재 民間部門의 社會保障費 支出比率(GDP 대비)을 보면, 독일(1.39%)과 우리나라(1.12%)가 높다.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가 0.5%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은 0.5% 미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일부가 企業에 依存하고 있으며 企業(또는 고용주)의 寄與度 또한 그 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지출로는 우리나라를 除外하고, 모두 疾病給與部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미국과 덴마크는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를, 영국은 老齡現金給與를, 독일은 家族現金給與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失業給與部門만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는 아래의 ‘마’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38)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민간부문의 지출급여에 대하여 OECD에서는 강제적(Mandatory Employer-provided Private Social Benefit)인 성격의 급여와 임의적(Voluntary Employer-provided Private Social Benefit)인 성격의 급여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는 전자로만 국한하고 있다.

〈表 IV-10〉 OECD 主要會員國의 社會保障支出中
民間部門의 支出比率(1993)

(단위: GDP에 대한 %, %)

급 여 부 문	한 국	미 국	영 국	독 일	스웨덴	덴마크
총 지출(A)	4.42	15.64	22.84	28.27	38.03	30.96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B)	1.12	0.47	0.23	1.39	0.62	0.61
(B/A×100, %)	(25.3)	(3.0)	(1.0)	(4.9)	(1.6)	(2.0)
노령연금급여	-	-	0.21	-	-	-
산업재해 및 직업병	-	0.25	-	-	-	0.16
질병급여	-	0.01	0.03	1.31	0.62	0.43
유족급여	-	0.02	-	-	-	-
가족연금	-	-	-	0.08	-	-
실업급여	1.12	-	-	-	-	-
보건부문공공지출	-	0.1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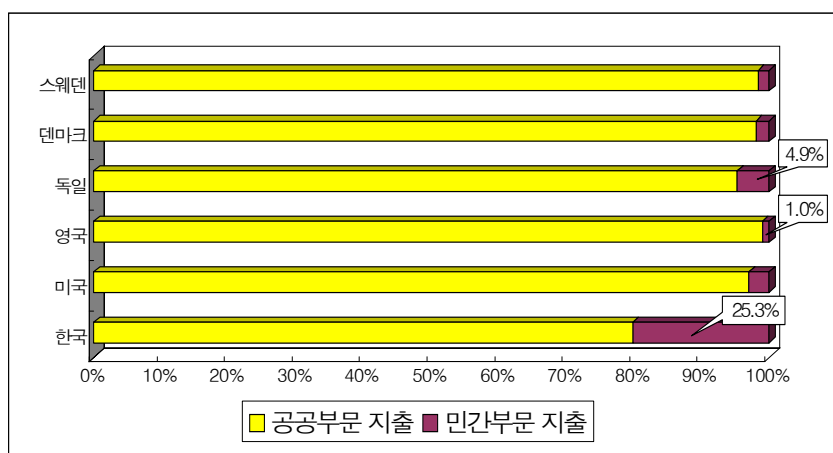
註: - 표는 제도가 없거나 지출이 없음.

資料: OECD, *The Growing Role Of Private Social Benefits*, 1998.

한편 [圖 IV-2]는 民間部門의 支出이 있는 OECD會員國의 社會保障費 支出에 대한 民間部門支出의 構成百分率을 제시하였다. 즉 GDP에 대한 社會保障費 支出比率에 대한 民間部門의 支出比率의 構成百分率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25.3%로 가장 높으며, GDP에 대한 社會保障費 支出比率이 가장 높던 독일은 4.9%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외의 국가들은 1~3%의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民間部門의 支出이 다른 會員國과는 달리 한 部門에만 支出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外國과 比較하였을 때 우리의 公共部門의 役割이 相對적으로 微弱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지출수준이 向後 더 增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라에 4대사회보험은 도입되었지만 그 機能이 相對적으로 微弱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회보험의 給與水準이나 適用範圍가 擴大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민들의 財源부담도 동시에 考慮되어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圖 IV-2〕 社會保障費 支出에 대한 民間部門의 支出 百分率



마. 失業給與의 支出比較

OECD가 요구한 13개부문의 통계중 唯一하게 失業給與部門만 본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다음의 두가지 理由 때문이다. 첫째는 OECD基準의 ‘失業給與’部門에 우리나라의 法定退職金의 포함이 國際基準에 妥當한가에 대한 論議를 거쳐 포함한 결과, 사회보장급여에서 25%나 차지하는 역할의 重要性 때문이다. 둘째는 최근 IMF체제 이후 각 職場의 整理解雇과 企業倒産 등으로 고용보험과 法定退職金에 대한 국민들의 關心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의 수준과 외국과의 比較를 위해서다.

OECD의 失業給與에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중단을 보상하는 차원의

失業補償(10.1)뿐만 아니라 해고시 지출하는 退職手當(10.3)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보다 範圍가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한 ‘退職手當(10.3)’에 우리나라의 ‘法定退職金’을 포함하게 된 것은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保障主體의 差異일 뿐 保障內容은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그 동안 실직자나 퇴직자의 소득보장을 企業에 의존하여 온 반면 OECD국가는 社會保險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산출을 明瞭化하기 위하여 법정퇴직금중 停年退職者에 대한 지출금은 ‘老齡現金給與(1)’에 포함하고 整理解雇 등의 경우 지출금은 ‘退職手當’(10.3)에 分類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퇴직사유별 기초자료가 없어 ‘퇴직수당’에 모두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실업급여(10)가 一部 過大計上된 점은 현재 우리 통계의 限界點이다(III장 8절 나 참조).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장비지출 중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지출수준과 OECD회원국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OECD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失業給與는 1996년 GDP 대비 1.40%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運營主體와 保障方法이 서로 다른 雇傭保險과 法定退職金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分離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실업자에게 지출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失業給與는 105억원(1996년)으로 GDP 대비 0.003%에 해당한다. 사회보장에 대한 각국의 制度와 成熟度 그리고 失業率에 차이가 있어 單純比較는 어렵지만, 각 나라별로 통계자료가 수집된 1993년도를 보면, 실업급여가 OECD회원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 0.58%, 일본 0.27%(1992)에 비해 90~193배나 낮다. 특히 상위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아일랜드는 3.5%를 넘어 우리의 1,100배 이상이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OECD회원국의 5~11%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失業에 대비할 인프라가 제대로 準備되지 않은 상태에

서 IMF의 시련이 닥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아직 걸음마 단계(1995년 7월 도입)이기 때문에 政府가 초긴축재정기조 아래에서도 모든 여력을 失業對策에 쏟아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雇傭保險 支給水準은 年齡과 被保險其間을 고려하여 30~210일³⁹⁾까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둘째,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退職手當(한국은 법정퇴직금임)은 한국을 포함하여 4개 會員國⁴⁰⁾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자료가 수록된 최근년도인 1993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2조 9,870억원(1993년)⁴¹⁾으로 GDP 대비 1.1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핀란드(0.58%), 스웨덴(0.06%), 노르웨이(0.05%)의 순이었다. 이 또한 각 國家間 制度差異가 있어 單純比較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위의 3개국에 비하여 약 2~22배가 높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失業給與는 社會保險인 雇傭保險보다 企業主가 부담하는 法定退職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실직자(정년퇴직자 포함)들은 退職金없이 당장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앞의 3개국의 給與財源은 우리와는 달리 公共部門에서 지출하고 있다.

39) 고용보험의 실시기간이 아직 3년 미만임으로 현재의 급여일수는 25세 미만이 3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120일임(고용보험법 41조).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최저급여일수가 '30세 미만 60일'로 변경(1998년 3월 1일 이후)되었다.

40)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은 엄격히 보아 OECD가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10.2)'과 '퇴직수당(10.3)'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하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3개국의 급여비율에도 (10.2)와 (10.3)을 합하여 놓았다.

41)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에는 정리해고자(자발적 이직포함)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에 비하여 아래의 3개 선진국에는 정리해고자(자발적 이직포함)의 퇴직수당만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3개국에 비하여 정년퇴직자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退職手當이 극히 一部過大(노동부의 노동력유동실태조사('93)에 의하면 정년퇴직자는 1.1%에 불과함)계상된 점은 있다.

바. 社會保障費가 낮은 理由

지금까지 각 부문별 國際比較를 정리해 보면, 先進國은 물론 우리보다 所得水準이 뒤떨어진 國家(예: 터어키)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社會保障費支出 水準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낮은 理由에 대해서 概略적으로 아래와 같이 指摘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의 사회보장비지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年金保險制度의 未成熟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아직 급여지출면에서 볼 때 導入段階에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된지가 20년이 채 안되어 지출규모가 낮은 실정⁴²⁾으로, 특히 特例老齡年金이 1993년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雇傭保險은 1995년 7월에 도입되어 걸음마 단계이다.

둘째, 政府支出 역시 다른 OECD국가들에게는 없는 南北分斷에 따른 國防費 부담으로 財政擴大에 限界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醫療保險은 全國民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保險給與範圍가 制限되어 있음에따라 높은 本人負擔金이 지출됨에도 이것이 除外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低負擔·低福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經濟主體들이 부담한 사회보장재원의 부담수준과 사회보장비 지출수준을 1人當 所得水準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3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7,550弗로, 外國의 7천불소득대를 기준하여 주요국의 사회보장재원부담과 사회보장지출을 살펴보면 <表 IV-11>과 같다. 여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先進國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시기의 年度別 時差가 약 15年 以上

42)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사회보장비 지출 중 연금보험의 비중이 45%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8%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라는 사실이며, 더욱이 類似한 1인당 GDP를 보인 시점에서 조차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과 社會保障負擔額(\$)이 너무나 낮다는 사실이다. 즉, 主要國과 比較하였을 때 우리의 社會保障費支出 程度는 19~39%, 財源負擔程度는 26~37%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表 IV-11〉 1人當 7千弗所得帶의 社會保障의 財源負擔과 支出比較
(단위: \$, %)

국 가	연 도	인 구 (천명)	1 인 당 (\$)			사회보장비 지출(%)
			GDP	급여액	재원부담액	
한 국	1993	44,195	7,550	333	417 ¹⁾	4.41
일 본	1978	114,920	8,626	968	1,417 ²⁾	11.22
미 국	1975	215,973	7,341	1,064	-	14.50
서 독	1975	61,829	7,568	1,985	1,584 ²⁾	26.23
노르웨이	1975	4,007	7,781	1,517	1,438 ²⁾	19.50
영 국	1979	56,227	7,485	1,226	1,136 ²⁾	16.38

資料:1) 노인철, 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에서 재구성한 것임.

2)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84 - 1986, 1992.에서 재구성한 것임.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과 사회보장을 위한 財源負擔은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低負擔 - 低福祉’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差異는 우리나라가 OECD 主要國家들(表 IV-11에 예시된 5개국)에 비하여 人口를 고려한 經濟水準만을 비교할 때의 상황으로, 결국 우리의 낮은 사회보장재원부담과 더불어 지출수준도 낮은 關係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疾病給與와 住居給與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여섯째, 일부제도의 民間支出(예: 유급의 산전산후휴가 등)과 地方自治團體 固有事業의 지출이 漏落되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특히 社會保障制度의 歷史와 民主主義政治의 實踐經驗 등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짧은 점이다. 이와 같이 上記의 낮은 原因을 고려할 때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의 社會保障 費支出水準이 낮은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論 및 政策建議

본 研究의 目的은 社會保障費支出 水準을 算出하고 이를 OECD에 韓國의 公式統計로 提出하는 데 있다. 나아가 社會保障費 支出規模와 部門別 支出水準을 OECD會員國과 比較·分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支出水準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研究結果를 몇 가지로 要約하고 앞으로 社會보장비의 效率的인 統計生産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結論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OECD基準에 따른 一般政府의 公共支出과 社會保險의 給與, 그리고 法律에 의하여 使用者가 부담하는 法定退職金을 資料로 하여 最近 7個年(1990~1996)의 社會보장비 지출을 算出·分析하였다. 國內總生産 대비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 比率(5.28%)은 주요 OECD국가들의 GDP대비 社會보장비규모의 15~3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지만, 그 增加率は 급격하게 상승(연평균 19.7%)하고 있어 多角的인 分析和 關心이 필요하다.

본 研究의 結果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OECD가 提出을 要求한 統計는 13개 부문의 96개 항목으로 이중 본 연구에서 생산한 통계항목은 11개 부문의 51개 항목(53.1%)이다. 생산할 수 없는 통계는 2개部門(疾病給與(4), 住居給與(12))을 포함하여 45개 항목들이 있으며, 未生産原因을 보면, 制度自體가 導入되

지 않아 통계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 31개 항목(32.3%), 基礎資料가 없어 생산할 수 없는 것이 1개 항목(1.0%) 그리고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細分化 할 수 없는 것이 13개 항목(13.5%)이다.

둘째, OECD基準에 따라 산출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는 1996년말 현재 20조 5,627억원으로 國內總生産(경상GDP)의 5.28%였다. 여기서 法律에 의하여 企業主가 強制的으로 부담하는 法定退職金 5조 4,530억원을 除外하면 3.88%가 된다.

셋째,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보장으로 받은 給與部門을 百分率로 보면 保健部門公共支出(11)이 3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失業給與(10) 26.6%, 老齡現金給與(1) 21.3%,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3) 4.9% 順이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家族現金給與(7)로 0.1%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된 급여는 保健部門公共支出과 失業給與 그리고 老齡現金給與로 나타났다. 여기서 失業給與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法定退職金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이것을 除外한다면 失業給與는 GDP의 0.003%로 가장 낮은 급여가 된다. 따라서 法定退職金을 사회보장비에 포함하지 않으면 保健部門公共支出과 老齡現金給與가 주된 급여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지출비중만 단순히 비교해볼 때 先進國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OECD會員國家 중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의 主要國家를 보면 保健部門公共支出과 老齡現金給與가 주된 급여인 반면 失業給與는 매우 낮다.

넷째, GDP 對比 社會保障費支出의 비율을 보면, 1990년의 3.90%에서 1996년 5.28%로 緩慢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비 지출금액은 年平均 19.7%씩 높게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社會保障費支出 水準을 OECD회원국과 비교하기 위하여 OECD가 공표한 最近年度인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는 4.4%로 미국의 15.6%, 일본의 12.4% (1992년), 독일의 28.3%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은 30%를 넘어 우리의 7배 이상으로 이는 OECD회원국의 15~3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다.

여섯째, 社會保障費支出에 대한 民間部門의 支出 百分率을 보면, 우리나라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이 4.9%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外의 국가들은 1~3%의 水準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民間部門의 支出水準은 여러부분에 걸쳐 支出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 部門(법정퇴직금)에만 支出하는데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外國과 比較하였을 때 먼저, 우리의 公共部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政府의 지출수준이 더 增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4대사회보험은 도입되었지만 그 기능이 相對적으로 미약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社會保險의 對象者適用 및 給與範圍가 擴大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곱째, OECD會員國과의 經濟水準을 고려하여, 먼저 經濟水準이 같은 年度와 比較해 보면, 1993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7,750달러)와 비슷한 1975년의 미국은 14.50%, 일본(1978년)이 11.2%, 독일(1975년)이 26.23%로 우리나라보다 3~6배나 높다. 社會保障費를 人口數로 나눈 1人當 사회보장비의 경우 1993년 현재 약 27만원(333\$)으로 미국은 1,064\$, 일본이 968\$, 서독이 1,985\$로 우리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93년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經濟水準과 비슷한 그리스(8,883달러)는 사회보장비가 17.24%, 포르투갈(8,315달러)은 16.37%, 그리고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멕시코(4,414달러)는 3.83%였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한 比例關係는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더구나 어느 水準에서는 더 이

상 增加하지 않음도 알 수 있었다.

여덟째, 制度別로 사회보장비의 支出百分率을 보면 社會保險 53.9%, 公共扶助 8.6%, 社會福祉서비스 11.0%, 其他(법정퇴직금) 26.5%이다. 여기서 OECD國家와 비교하기 위하여 기타(법정퇴직금)를 사회보험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형태는 單純히 構成比만 볼 때 先進國型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주요 OECD국가의 社會保障費 構成은 社會保險이 70~80%, 公共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가 20~30%이다. 그러나 構成內容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는 OECD회원국의 15~3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며 4大社會保險의 全國民 擴大와 內實化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OECD基準에 따라 國際比較possible한 국내통계를 생산하여 보았으며 OECD國家와 비교한 결과 지출수준은 最下位에 있으며, 給與財源의 負擔形態 또한 民間部門에 비하여 公共部門의 역할이 미흡함을 알았다.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水準이 낮은 理由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먼저 年金保險과 雇傭保險이 아직 급여지출면에서 볼 때 導入段階에 있으며, 政府支出 역시 南北分斷에 따른 國防費負擔으로 社會保障費支出을 擴大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特性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基礎資料蒐集의 限界에 따른 給與制度의 漏落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정에 의한 지방비와 사용자 부담하는 각 사업장의 ‘유급병가휴가’ 및 ‘출산유급휴가’의 급여, 그리고 조세환급금의 누락이다. 向後 이 분야에 대한 별도의 生産方案에 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增加率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全國民醫療保險의 導入(1989년)과 低所得層에 대한 政府의 支援擴大 그리고 法定退職金의 增加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雇傭保險의 內實化(이른테면, 전사업장 조기확대)

와 企業倒産에 따른 법적보장을 받을 수 없는 現行 法定退職金制度의 補完策(퇴직금의 적립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의 1/4을 차지하는 법정 퇴직금의 包含與否 뿐만 아니라 分類上의 限界點도 노출되었다.

OECD가 작성을 요구한 ‘退職手當’에 우리나라의 ‘法定退職金’을 포함하게 된 것은 OECD국가와 비교해 볼 때 保障主體의 差異일 뿐 保障內容은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그 동안 整理解雇者(自發的 移職 포함)나 停年退職者의 소득보장을 企業에 의존하여 온 반면 OECD국가는 社會保險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停年退職者에 대한 법정퇴직금은 ‘老齡現金給與’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退職事由別 기초자료가 없어 ‘퇴직수당’에 포함되어 실업급여가 一部 過大計上된 점은 현재 統計分類上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지출 통계가 신뢰성과 國際比較可能性을 갖추면서 동시에 OECD에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時宜性을 갖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 대해 政府의 끊임없는 努力과 關心 그리고 支援이 그 어느 때보다 要求된다 하겠다.

2. 政策建議

가. 算出範圍의 確定과 調査票의 開發

앞으로 사회보장비를 效率的으로 生産하기 위하여 본 研究에서 파악한 制度範圍와 過程을 토대로 調査票開發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본 研究에서 논의의 불충분으로 包含하지 않은 制度와 基礎資料의 限界로 漏落한 制度(재원 포함), 그리고 OECD가 요구하는 항목으로 細分化 할 수 없는 制度의 파악과 산출에 대한 後續研究가 필요하다

고 본다. 包含하지 않은 制度로는 自動車責任保險의 對人治療費와 醫療保險의 급여중 現金給與를 들 수 있으며, 漏落한 制度로는 有給休暇給與와 有給産前産後給與, 障礙人補裝具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과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감면제도, 그리고 地方自治團體의 자체재정에 의한 地方費가 있다. 마지막으로 細分化 할 수 없는 制度로는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5)의 細部關心領域인 ‘아동(5.1.1)’, ‘65세 미만의 성인(5.1.2)’, ‘65세 이상의 성인(5.1.3)’으로 대상을 分類하여 作成하도록 要求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對象을 年齡代別로 區分하여 作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상술한 내용들에 대한 생산방안이 수립된 후 調査票開發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나. 事業內容別로 細分化된 決算書作成

社會保障費를 산출함에 있어서 政府가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豫算資料보다 實際支出된 決算資料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통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決算資料는 예산자료처럼 事業內容別로 細分化되어 있지 않아 OECD요구 통계를 산출하는데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OECD가 요구하는 통계는 사업을 機能別로 分類·作成하는 통계임으로 세출항목이 세분화될수록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제통계는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복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점차 既存 통계항목의 多樣化와 細分化 그리고 신규통계의 개발이 增加할 것으로 豫想됨에 따라 事業內容別로 더 細分化된 決算書가 필요할 것이다. 基礎統計의 生産基盤 確立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先行的으로 事業內容別로 細分化된 결산서작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歲出豫算의 區分은 豫算會計法 및 同法施行令에서 中央官署의 組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章, 款, 項으

로 區分하고 있으며(동법 제20조), 일반적으로 豫算實務上 더 세분화된 細項, 目, 細目까지 區分하여 사용하고 있다. 歲入歲出決算의 작성도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歲入·歲出 金額에 대하여 명백히 하도록 할 뿐이다(同法 제43조 2항).

현재 政府의 歲出決算은 ‘目’까지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정경제원은 각 부처로부터 ‘細目’까지 작성된 결산서를 On-Line(또는 Diskette)으로 제공받고 있으나 아직은 漏落, 省略된 細目이 많아 參考資料로 활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기능별로 세분화된 결산서가 작성되기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두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첫째는 歲出決算書의 科目區分을 더 세분화하여 ‘細目’까지 明示되도록 豫算會計法의 ‘豫算의 區分’(동법 제20조)과 동법시행령 ‘豫算의 科目區分’(동법시행령 제9조)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재정경제원이 각 부처로부터 實務次元에서 미비하지만 ‘細目’까지 작성된 결산서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를 차츰 改善·補完하는 方案을 들 수 있다.

다. 中央行政機關間 指定協助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관련 통계생산은 保健福祉部가 주로 관장하고 있지만 그외에도 8個의 行政機關이 관련되어 있다. 效果的인 통계생산방법은 각 관련 기관들이 一定한 樣式에 의하여 每年 보건복지부에게 통계를 생산·제출하는 ‘機關間 業務協助’가 필요하다고 본다. 參考로 ‘機關間 業務協助’란 直接業務를 담당하는 行政機關과 관련機關間的 공동목적을 위한 雙方協議에 의하여 관련사항의 相互協力과 調和를 維持하도록 하는 協助를 말한다. 행정기관간 ‘업무협조’를 指定받기 위하여 적용범위, 대상업무, 그리고 업무협조의 종류 등이 ‘事務管理規定’에 정하여 있다. 먼저 適用範圍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

속기관, 地方自治團體와 郡(사무관리규정 제2조)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對象業務로는 둘 이상의 행정기관이 共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와 다른 행정기관의 行政支援을 필요로 하는 업무 등으로 업무협조 범위(동규정 제55조)를 定하고 있다.

끝으로 業務協助의 種類로는 指定協助와 隨時協助(동규정 제57조)가 있다. OECD요구 통계는 每年 生産·提出하여야 함으로 指定協助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指定協助란 행정기관 사이에 常例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協助業務名·處理期間·協助要請機關 및 協助機關 등이 총리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OECD요구 통계는 보건복지부(중앙행정기관)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상례적으로 요청하는 업무협조임으로 ‘總理令指定協助’의 지정형태가 된다(동규정 제58조).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통계를 효과적으로 생산·취합할 수 있는 中央行政機關間 指定協助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사회보장비 지출통계의 時宜性和 信賴性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라. 國民計定體系의 活用性 增大

앞으로 여러 行政府處와 民間(企業 등)에 分散되어 있는 통계를 包括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關係機關과 韓國銀行은 國民計定體系(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關聯情報를 集中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UN의 國民計定體系(1993)에는 OECD의 사회보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第2次所得分配計定(Secondary Distribution of Income Account)⁴³⁾”이 設定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도 “第2次所得分配計定”에 해당하는 “制度部門別 所得支出計定”이란 이름으

43) 소득분배의 두 번째 단계를 나타내는 계정으로서 각 制度單位 또는 制度部門이 支給 또는 受取하는 모든 경상이전을 기록하고 있다.

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나 一部(社會保障受惠金, 社會扶助金)만 산출되고 있을 뿐, 자료수집이 어려운 非基金型 被雇傭者社會保險受惠金 등은 生産에서 除外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통계는 아직 OECD의 통계생산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韓國銀行 뿐만 아니라 관련機關들도 국민계정체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相關情報을 集中시키려는 無斷한 努力과 協助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直·간접적인 給여와 民間부문의 給여에 대하여 多樣하고 細分화된 統計를 生産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未포착(또는 누락된)된 統計의 파악 또는 추계의 精確도도 높아질 것이다. 특히 國家가 低所得層 등에 대하여 生活보호로 지원하는 조세감면, 저금리의 지원·용자, 그리고 요금할인 및 면제 등에 대한 間接的인 支援金額(정책적 가격 및 이자율과 시장의 가격 및 이자율과의 차액)까지도 산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나아가 향후 社會保障費 支出뿐만 아니라 相關變數의 움직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衛星計定(Satellite Accounts)의 導入도 段階別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계훈방·도세록, 『OECD의 보건통계작성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고경환, 「OECD의 사회보장비에 관한 통계작성기준의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4.
- 김성태,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보상제도 연구』, 서울대대학원, 198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1995.
- 국방부, 보건환경관리의무기획과 내부자료, 1997.
- 교육부,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 ,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6.
- 국가보훈처, 『보훈통계연감』, 각년도.
- 국세청, 법인과 내부자료, 1997.
- 김용하 외, 『사회보험 관리효율성 개선방안 — 부과 및 징수체계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내무부, 『재해연보』, 1996.
- 노동부, 『'97예산(안) 설명자료』, 1996.
- ,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1996.
- ,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 , 『노사개혁백서』, 1997.
- ,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 노인철·김수봉, 『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농림수산부, 『예산내역서』, 1996.
- 법무부,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3권, 1997.
- 보건복지부, 『1997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7.
- , 『1997년도 보육사업지침』, 1997.
- , 『1997년도 여성복지사업지침』, 1997.
- , 『보건복지관련 주요 법령집』, 1995.
- ,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 , 『세입세출예산』, 각년도.
- ,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각년도.
- ,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7.
- 보건복지부·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호통계』, 1997.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소관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예산』, 각년도.
- , 『세입세출예산』, 각년도.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황 및 분석』, 1997.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1996.
- 식품의약품안전본부, 예산관련 내부자료, 1997.
- 신종각·임재영, 「1995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와 추이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의료보험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각년도.
-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 재정경제원, 『1998년도 예산편성기준』, 1997.

- , 『예산개요』, 각년도.
- 재정경제원, 한국개발연구원,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 1997.
- 조상원 외, 『법전』, 현암사, 1997.
- 총무처, 『사무관리실무편람』, 1996.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9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의 1998년도 보건부문통계 제출요구현황』, 1996.
- ,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6.
- 한국복지연구회편, 『한국사회복지연감』, 1997.
- 한국산업안전공단, 『'96사업계획추진지침』, 1996.
- , 『사업계획서 및 예산현황』, 1997.
- , 『예산개요』, 1996.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97 사업계획 및 예산』, 1996.
- , 『수입지출예산각목명세서』, 각년도.
- 한국은행, 『1993 국민계정체계』, 1997.
- , 『경제통계연보』, 1996.
- , 『세계은행요람』, 1997.
- , 『신국민계정』, 1996.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계획 및 예산』, 각년도.
- , 『장애인고용 현황자료』, 1997.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각목명세서』, 각년도.
- 홍정기, 『국민의료비의 시계열 및 간접의료비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환경부, 『'98년도 환경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997.
- , 『환경예산 개요』, 1996.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 *OECD Health Data 1996*, 1996.

———, *The Growing Role Of Private Social Benefits*, 1998.

———, *Net public social expenditure*, 199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Schmähl, W., *Sozialausgaben, Handwörterbuch der Wirtschaftswissenschaft*, 1977.

附 錄

1. 施設保護의 서비스 內容 등
2. 政府歲出科目 內譯
3. OECD國家의 各 部門別 社會保障費
4.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Raw Data(1996)
5. 會員國別 社會保障費 統計提出率
6. OECD에 提出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98. 5.18 最終提出)
 - 英 文
 - 國 文

附錄 1. 施設保護의 서비스 內容 등

〈附表 1〉 老人의 施設保護別 서비스 內容

시 설 별	사 업 내 용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가) 입소자의 생활의욕증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거나 기능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교양·오락설비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가) 내지 (나)는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의 (가) 내지 (나)와 같음 (다)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소자를 위하여 진료기관을 정하는 등 관할지역내에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실비노인복지주택	(가) 실비노인복지주택내에 상담지도원이 기거하면서 순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항상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 긴급사태에의 대처 ④ 관계기관등과의 연락 ⑤ 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나) 실비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사업중 가정봉사원과견사업과 주간보호사업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資料: 보건복지부, 『1997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1997.

〈附表 2〉 障碍人施設保護別 入所対象者

시 설 별	입소대상 장애인
○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나. 한 손의 무지를 지골관절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 골관절이상 상실한 자 다. 한 다리를 리스후랑관절이상 상실한 자 라.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마.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바.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가. 두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 이하인 자 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라.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을 상실한 자
○ 청각, 언어장애인 재활시설	-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나.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자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 언어장애인 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나.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附表 2〉 계 속

시 설 별	입소대상 장애인
○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용이 현저히 곤란한 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인등록결과 정신지체 1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등록결과 정신지체 2~3급장애인으로서 지체장애를 수반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자 - 장애인등록결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1~2급 장애인으로서 기타장애를 수반 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자
○ 장애인 근로시설	-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자로 시설의 작업공정상 적합한 장애인중 시설내에서 직업을 주어 재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資料: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7.

附錄 2. 政府歲出科目 內譯

〈附表 3〉 歲出科目 區分 (全會計 및 基金)

목번호	목	내역	비고
100	1. 인 건 비		
101	기 본 급	01. 봉 급 02. 상여금	
102	수 당	01. 초과근무수당 02. 정액수당 03. 기타수당	
103	비정규직 보 수	01.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200	2. 물 건 비		
201	관 서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 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의 회선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03. 피복비	

〈附表 3〉 계 속

목번호	목	내역	비고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들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대 ② 부식대 등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12. 기타 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1.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02. 국외여비 1.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03. 외빈초청여비	
204	업무추진비	01. 일반업무비 02. 특정업무비 03. 직급보조비 04. 정원가산금	
205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보상금	
206	연구개발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207	시험연구비		

〈附表 3〉 계 속

목번호	목	내역	비고
300	3.경상이전		
301	보 상 금	01. 보상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공무원연금법및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4.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02.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상금 2.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02	배 상 금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보상금(정발보상금)	
303	출 연 금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예: 한국과학기술원 법 제 10조에 의한 출연금 등) 02. 금융성 및 민간기금출연금 - 외국환평형기금등 공공융성기금 및 민간기금(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발전기금 포함)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원금	
304	민간경상이전	01.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연료대, 동부대경비(운반비 및 광고료 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附表 3〉 계 속

목번호	목	내역	비고
305	자치단체 경상이전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 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2. 민간경상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 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 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중 물가안정 또 는 기타 정책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 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 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03.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 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 액 국고로 회수되는 제사업비 04.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등 지급여 2. 기타직(103-01목)등에 대한 퇴직금 05. 보험금 - 보험금, 재보험금등 보험지급금 06. 이차보전금 - 특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 손 포함)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 금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02. 자치단체교부금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교부금	

〈附表 3〉 계 속

목번호	목	내역	비고
		03.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307	해 외 경상이전	01. 해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400	4.자본지출 경 비		
401	기본조사 설 계 비		
402	실시설계비		
403	토지매입비		
404	시 설 비		
405	감 리 비		
406	시설부대비		
407	자산취득비		
411	민 간 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 급하는 보조금 02.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 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 를 위한 사후관리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	01. 자치단체 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 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03. 지방양여금	

〈附表 3〉 계 속

목번호	목	내역	비고
600	6.보전지출		
601	국내차입금 상 환	0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0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04.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05. 국공채 원금상환	
602	해외차입금 상 환	01. 차관원금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의 상환은 704-01목에 계상) 02. 기타 해외채무원금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① 외무부 소관: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 은행으로 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700	7.정부내부 거 래		
701	전 출 금	01. 전출금 02. 연금부담금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03. 기금전출금 04. 국채원금상환전출금 내부거래로서 정부부문기금등의 채무원금을 상환해 주기 위하여 무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주는 자금	
704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01. 전대차관 원금상환 02. 전대차관 이자상환	

附錄 3. OECD 國家의 各 部門別 社會保障費

〈附表 4〉 OECD會員國別 總 社會保障費¹⁾²⁾

(단위: 자국의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3.90	3.80	4.23	4.42	4.72	5.09	5.28
Australia	11.68	13.97	14.42	15.56	16.38	..			
Austria	22.34	24.22	23.85	24.22	24.71	25.78			
Belgium	25.63	28.48	26.60	27.22	27.01	..			
Canada	13.29	16.46	17.95	19.14	19.77	19.75			
Denmark	27.63	26.47	28.25	29.14	29.94	30.96			
Finland	18.87	23.58	25.31	30.60	34.78	35.39			
France	23.46	27.00	25.95	26.52	27.29	28.73			
Germany	-	-	-	25.89	27.26	28.27			
Western Germany	24.98	25.51	23.83	23.38	23.68	24.67			
Greece	10.88	16.38	17.47	17.17	16.77	17.24			
Ireland	19.35	22.85	19.33	20.26	20.39	20.06			
Italy	18.23	21.60	23.03	23.38	24.68	25.00			
Japan	11.09	12.08	12.37	12.25	12.44	..			
Luxembourg	27.40	27.18	27.43	28.94	29.47	30.96			
Mexico	..	2.17	3.03	3.57	3.83	..			
Netherlands	28.71	29.02	28.84	28.88	29.79	30.20			
New Zealand	18.20	19.63	22.38	21.65	22.51	..			
Norway	18.86	20.28	26.89	28.09	29.48	29.32			
Portugal	11.65	11.96	13.74	14.88	15.60	16.37			
Spain	16.49	18.71	19.82	20.67	21.41	22.52			
Sweden	30.42	31.64	32.62	34.79	37.07	38.03			
Switzerland	..	17.41	17.43	..	20.63	..			
Turkey	4.40	4.63	6.45	7.79	7.16	7.11			
Unite Kingdom	18.32	21.04	19.78	21.05	22.84	23.42			
United States	12.4	12.98	14.12	14.99	15.55	15.64			

註: - : 해당숫자 없음

.. : 해당숫자 미상

: : 다른 항목에 포함

1) OECD에서는 '94년 이후 통계를 회원국과의 재수집·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곧 공표할 예정이다.

2) 총사회보장비는 총 13개부문을 포함한 지출비율임

資料: 한국외 국가)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5〉 OECD會員國別 福祉部門의 社會保障費¹⁾²⁾

(단위: 자국의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2.41	2.46	2.78	2.93	3.22	3.50	3.52
Australia	7.13	8.45	8.79	9.84	10.65	..			
Austria	16.92	18.81	18.29	18.58	18.80	19.65			
Belgium	20.09	22.40	19.80	20.14	19.80	..			
Canada	8.01	10.25	11.16	11.92	12.45	12.56			
Denmark	21.83	21.18	22.94	23.69	24.46	25.37			
Finland	13.73	17.85	18.86	23.21	27.35	28.49			
France	17.51	20.50	19.35	19.74	20.30	21.45			
Germany	-	-	-	19.61	20.66	21.84			
Western Germany	18.66	19.12	17.89	17.39	17.51	18.63			
Greece	7.91	13.09	13.83	13.90	13.37	13.73			
Ireland	12.18	16.84	14.35	14.90	15.21	14.93			
Italy	12.66	16.18	16.71	16.81	18.22	18.73			
Japan	6.14	7.07	7.33	7.23	7.37	..			
Luxembourg	21.06	21.13	20.44	21.89	22.17	23.41			
Mexico	..	0.36	0.72	0.85	0.93	..			
Netherlands	22.81	23.11	23.11	22.85	23.26	23.44			
New Zealand	12.21	14.16	16.29	15.61	16.65	..			
Norway	12.90	14.61	20.39	21.32	22.47	22.50			
Portugal	7.91	8.50	10.15	10.94	11.61	12.25			
Spain	11.97	14.11	14.38	15.05	15.72	16.79			
Sweden	21.74	23.62	24.91	27.33	30.61	31.81			
Switzerland	11.25	12.66	12.32	..	14.86	..			
Turkey	3.49	3.52	5.43	5.54	5.80	5.68			
Unite Kingdom	13.43	16.13	14.79	15.69	17.06	17.67			
United States	8.89	8.83	9.08	9.55	9.85	9.79			

註: 1) OECD에서는 '94년 이후 통계를 회원국과의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곧 공표할 예정임.

2) 복지부문은 총 13개부문중 보건부문공공지출(11)만 제외한 것임.

資料: 한국의 국가)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6〉 OECD會員國別 保健部門의 社會保障費¹⁾²⁾

(단위: 자국의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1.49	1.34	1.45	1.49	1.49	1.58	1.75
Australia	4.55	5.51	5.63	5.72	5.74	· ·			
Austria	5.42	5.41	5.55	5.64	5.91	6.13			
Belgium	5.54	6.08	6.80	7.08	7.21	7.36			
Canada	5.28	6.21	6.79	7.22	7.31	7.19			
Denmark	5.80	5.30	5.31	5.45	5.48	5.59			
Finland	5.14	5.73	6.45	7.39	7.42	6.90			
France	5.95	6.50	6.60	6.78	6.99	7.28			
Germany	-	-	-	6.28	6.60	6.43			
Western Germany	6.32	6.39	5.94	5.99	6.18	6.04			
Greece	2.97	6.28	3.64	3.26	3.40	3.51			
Ireland	7.17	6.01	4.97	5.36	5.17	5.13			
Italy	5.57	5.42	6.32	6.57	6.46	6.27			
Japan	4.95	5.01	5.04	5.02	5.07	5.27			
Luxembourg	6.34	6.05	6.99	7.06	7.31	7.56			
Mexico	· ·	1.81	2.30	2.72	2.90	· ·			
Netherlands	5.91	5.91	5.73	6.03	6.53	6.76			
New Zealand	5.99	5.47	6.09	6.04	5.86	5.84			
Norway	5.96	5.67	6.50	6.77	7.01	6.82			
Portugal	3.74	3.45	3.59	3.94	3.99	4.12			
Spain	4.53	4.60	5.45	5.61	5.70	5.73			
Sweden	8.67	8.01	7.71	7.46	6.46	6.22			
Switzerland	· ·	4.74	5.11	5.46	5.76	· ·			
Turkey	0.91	1.11	1.02	2.24	1.36	1.42			
Unite Kingdom	4.89	4.90	4.99	5.37	5.78	5.75			
United States	3.55	4.15	5.05	5.44	5.71	5.85			

註: 1) OECD에서는 '94년 이후 통계를 회원국과의 확인하는 과정에 있으며 곧 공표할 예정임.

2) 보건부문은 총 13개부문중 보건부문공공지출(11)만 나타낸 것임.

資料: 한국의 국가)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7〉 OECD 國家의 老齡現金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62	0.66	0.82	0.96	1.04	1.19	1.13
Australia	3.27	3.12	3.06	3.18	3.20	..			
Austria	8.40	9.29	9.38	9.48	9.52	9.78			
Belgium	6.39	6.95	6.93	7.25	7.04	..			
Canada	2.83	3.44	3.89	4.17	4.35	4.41			
Denmark	5.98	5.92	6.53	6.71	6.77	6.77			
Finland	4.80	6.63	6.60	7.68	8.49	8.76			
France	7.79	8.81	8.73	8.99	9.31	9.73			
Germany	-	-	-	7.40	7.82	8.24			
Western Germany	7.60	7.33	7.07	6.90	6.96	7.26			
Greece	5.21	8.23	9.01	8.99	8.45	8.69			
Ireland	4.14	4.35	3.88	3.95	3.93	3.85			
Italy	7.32	9.03	9.62	9.82	10.62	10.93			
Japan	3.81	4.62	4.99	4.93	5.02	..			
Luxembourg	7.53	7.10	7.36	7.89	8.13	8.44			
Mexico	..	0.22	0.25	0.28	0.29	..			
Netherlands	6.77	6.88	7.54	7.45	7.49	7.53			
New Zealand	6.95	7.47	7.31	7.61	7.19	..			
Norway	4.50	4.71	5.84	5.89	6.00	6.00			
Portugal	3.53	3.73	4.45	4.75	4.87	5.21			
Spain	4.86	6.05	6.04	6.17	6.39	6.76			
Sweden	7.40	7.93	8.05	8.48	9.19	9.47			
Switzerland	7.94	8.73	8.52	..	9.80	..			
Turkey	1.29	1.42	2.22	2.58	2.79	2.92			
Unite Kingdom	5.07	5.57	5.23	5.60	5.84	5.88			
United States	4.63	5.12	5.08	5.24	5.24	5.21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8〉 OECD 國家의 障礙現金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08	0.10	0.11	0.10	0.11	0.10	0.10
Australia	0.85	0.93	1.05	1.14	1.18	..			
Austria	1.19	1.51	1.59	1.61	1.61	1.63			
Belgium	2.12	2.41	1.97	2.02	1.93	..			
Canada	0.37	0.43	0.49	0.52	0.56	0.60			
Denmark	1.78	1.61	1.64	1.66	1.64	1.69			
Finland	2.76	2.80	3.05	3.60	4.03	4.09			
France	1.02	1.12	0.98	0.97	0.95	0.97			
Germany	-	-	-	1.64	1.64	1.77			
Western Germany	1.83	1.93	1.58	1.59	1.56	1.66			
Greece	0.93	1.85	1.87	0.97	1.90	1.90			
Ireland	0.53	0.70	0.74	0.78	0.80	0.81			
Italy	1.01	1.18	1.43	1.34	1.38	1.50			
Japan	0.25	0.27	0.30	0.30	0.30	..			
Luxembourg	3.19	3.23	2.51	2.52	2.51	2.49			
Mexico	..	..	..	..	..	..			
Netherlands	4.61	4.35	4.59	4.65	4.67	4.69			
New Zealand	0.46	0.46	0.58	0.68	0.74	..			
Norway	1.96	2.07	2.79	2.86	2.92	2.86			
Portugal	1.61	1.81	1.89	1.97	1.98	2.04			
Spain	1.16	1.35	1.27	1.33	1.38	1.47			
Sweden	1.95	2.05	2.12	2.20	2.40	2.57			
Switzerland	0.12	0.15	0.21	..	0.26	..			
Turkey	0.09	0.07	0.10	0.13	0.18	0.13			
Unite Kingdom	0.86	1.19	1.49	1.67	1.89	2.07			
United States	0.78	0.71	0.74	0.79	0.86	0.90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9〉 OECD 國家의 産業災害 및 職業病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20	0.24	0.28	0.24	0.24	0.24	0.26
Australia	..	..	..	..	..	..			
Austria	0.31	0.30	0.25	0.26	0.24	0.25			
Belgium	0.85	0.69	0.55	0.56	0.54	..			
Canada	0.34	0.47	0.52	0.55	0.56	0.54			
Denmark	0.18	0.24	0.23	0.24	0.23	0.30			
Finland	0.20	0.24	0.26	0.28	0.31	0.31			
France	0.76	0.68	0.59	0.58	0.57	0.55			
Germany	-	-	-	0.82	0.85	0.86			
Western Germany	0.92	0.87	0.81	0.80	0.81	0.81			
Greece	0.02	0.02	0.02	0.01	0.01	0.01			
Ireland	0.11	0.13	0.13	0.13	0.12	0.11			
Italy	0.45	0.56	0.52	0.53	0.55	0.53			
Japan	0.26	0.28	0.23	0.21	0.21	..			
Luxembourg	1.06	0.94	0.79	0.82	0.85	0.94			
Mexico	..	0.02	0.02	0.03	0.03	..			
Netherlands	..	..	..	..	..	..			
New Zealand	0.46	0.64	1.44	1.32	1.27	..			
Norway	0.04	0.02	0.02	0.02	0.02	0.02			
Portugal	0.26	0.31	0.33	0.47	0.42	0.37			
Spain	0.45	0.41	0.47	0.48	0.49	0.50			
Sweden	0.23	0.23	0.75	0.81	0.84	0.79			
Switzerland	0.06	0.09	0.15	..	0.19	..			
Turkey	0.03	0.01	0.02	0.02	0.02	0.02			
Unite Kingdom	0.24	0.19	0.19	0.09	0.09	0.09			
United States	0.45	0.53	0.66	0.70	0.70	0.70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0〉 OECD 國家의 疾病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	-	-	-	-	-	-
Australia	0.12	0.16	0.17	0.09	0.09	..			
Austria	0.26	0.21	0.18	0.20	0.22	0.23			
Belgium	1.36	1.08	0.88	0.91	0.84	..			
Canada	0.05	0.05	0.06	0.06	0.06	0.06			
Denmark	2.09	1.17	1.25	1.11	1.13	1.12			
Finland	0.23	0.61	0.62	0.72	0.76	0.65			
France	0.62	0.60	0.50	0.51	0.52	0.53			
Germany	-	-	-	0.40	0.40	0.40			
Western Germany	0.46	0.35	0.36	0.39	0.39	0.38			
Greece	0.17	0.20	0.12	0.10	0.11	0.13			
Ireland	1.81	1.87	1.19	1.17	1.11	0.99			
Italy	0.33	0.27	0.24	0.20	0.21	0.18			
Japan	0.09	0.08	0.06	0.06	0.06	..			
Luxembourg	0.93	0.86	0.86	0.88	0.96	1.03			
Mexico	..	..	..	..	..	..			
Netherlands	3.23	2.33	2.79	2.48	2.61	2.65			
New Zealand	0.35	0.53	0.89	0.99	1.18	..			
Norway	1.72	1.72	2.16	2.26	2.22	2.10			
Portugal	0.55	0.50	0.58	0.61	0.75	0.78			
Spain	0.84	0.74	0.85	0.92	0.99	1.04			
Sweden	2.38	2.07	2.57	2.20	1.32	1.08			
Switzerland	0.30	0.27	0.26	..	0.27	..			
Turkey	0.46	0.32	0.61	0.70	0.74	0.68			
Unite Kingdom	0.30	0.26	0.24	0.21	0.21	0.18			
United States	..	..	..	..	..	..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1〉 OECD 國家의 老人과 障礙人福祉서비스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06	0.05	0.05	0.06	0.11	0.12	0.14
Australia	0.09	0.13	0.47	0.54	0.56	..			
Austria	..	..	..	..	..	..			
Belgium	0.12	0.13	0.11	0.11	0.12	..			
Canada	..	..	..	..	..	..			
Denmark	2.77	2.72	2.60	2.60	2.59	2.31			
Finland	0.92	1.02	1.16	1.36	1.38	1.45			
France	0.63	0.64	0.65	0.67	0.68	0.70			
Germany	-	-	-	0.23	0.24	0.26			
Western Germany	0.26	0.23	0.22	0.17	0.17	0.18			
Greece	..	..	..	..	..	..			
Ireland	0.54	0.58	0.49	0.48	0.48	0.47			
Italy	0.19	0.19	0.21	0.22	0.22	0.21			
Japan	0.16	0.17	0.18	0.19	0.20	..			
Luxembourg	0.27	0.25	0.52	0.56	0.62	0.70			
Mexico	..	0.02	0.07	0.10	0.09	..			
Netherlands	0.56	0.48	0.56	0.55	0.55	0.56			
New Zealand	0.03	0.02	0.11	0.11	0.10	..			
Norway	0.91	1.17	3.02	3.16	3.38	3.33			
Portugal	0.05	0.07	0.10	0.08	0.08	0.09			
Spain	0.06	0.09	0.14	0.13	0.14	0.16			
Sweden	1.76	1.80	2.06	2.07	3.23	3.78			
Switzerland	0.04	0.04	0.05	..	0.06	..			
Turkey	0.29	0.07	0.06	0.05	0.14	0.14			
Unite Kingdom	0.53	0.49	0.55	0.51	0.53	0.54			
United States	0.12	0.06	0.04	0.03	0.05	0.06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2〉 OECD 國家의 遺族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16	0.19	0.18	0.18	0.18	0.17	0.17
Australia	0.60	0.55	0.33	0.33	0.31	..			
Austria	3.32	3.31	3.08	3.09	3.08	3.12			
Belgium	3.18	3.21	2.77	2.79	2.72	..			
Canada	0.21	0.34	0.42	0.45	0.49	0.50			
Denmark	0.15	0.03	0.02	0.02	0.02	0.02			
Finland	0.88	1.01	1.02	1.18	1.32	1.33			
France	1.97	2.08	1.94	1.93	1.95	1.96			
Germany	-	-	-	2.91	2.92	3.00			
Western Germany	3.85	3.67	3.11	2.95	2.91	2.97			
Greece	0.90	1.66	1.66	1.60	1.59	1.62			
Ireland	1.26	1.47	1.24	1.26	1.26	1.24			
Italy	1.68	2.24	2.41	2.49	2.66	2.72			
Japan	0.44	0.60	0.66	0.67	0.68	..			
Luxembourg	4.37	4.09	3.80	4.50	4.37	4.36			
Mexico	..	0.05	0.12	0.14	0.14	..			
Netherlands	1.17	1.02	1.19	1.19	1.21	1.20			
New Zealand	0.30	0.23	0.21	0.17	0.17	-			
Norway	0.62	0.49	0.48	0.46	0.46	0.46			
Portugal	0.72	0.92	1.00	1.09	1.15	1.25			
Spain	1.70	1.88	1.92	1.99	2.09	2.19			
Sweden	0.63	0.68	0.70	0.74	0.80	0.83			
Switzerland	0.48	0.45	0.35	..	0.35	..			
Turkey	0.41	0.38	0.99	0.72	0.79	0.84			
Unite Kingdom	1.75	1.52	1.26	1.32	1.30	1.27			
United States	0.96	0.96	0.93	0.96	0.96	0.96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3〉 OECD 國家의 家族現金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001	0.002	0.002	0.003	0.003	0.003	0.003
Australia	0.97	1.17	1.37	1.58	1.75	..			
Austria	2.94	2.53	2.15	2.11	2.34	2.42			
Belgium	3.02	2.62	2.19	2.15	2.11	..			
Canada	0.65	0.61	0.52	0.60	0.51	0.90			
Denmark	1.12	0.94	1.52	1.55	1.60	1.67			
Finland	1.09	1.50	1.90	2.32	2.71	2.62			
France	2.24	2.42	2.03	1.97	1.98	2.12			
Germany	-	-	-	1.40	1.40	1.37			
Western Germany	1.79	1.25	1.22	1.18	1.19	1.16			
Greece	0.34	0.35	0.16	0.12	0.11	0.12			
Ireland	1.07	1.42	1.42	1.51	1.55	1.57			
Italy	0.98	0.81	0.65	0.54	0.53	0.49			
Japan	0.23	0.25	0.19	0.17	0.20	..			
Luxembourg	2.04	1.76	2.18	2.32	2.38	2.84			
Mexico	..	..	..	..	..	..			
Netherlands	2.08	1.80	1.24	1.23	1.29	1.28			
New Zealand	2.20	2.34	2.63	0.58	1.52	..			
Norway	1.24	1.39	2.00	2.20	2.41	2.46			
Portugal	0.73	0.69	0.64	0.63	0.74	0.62			
Spain	0.47	0.25	0.12	0.12	0.14	0.15			
Sweden	1.86	1.94	2.30	2.62	2.74	2.78			
Switzerland	0.93	0.96	0.96	..	1.02	..			
Turkey	0.94	1.24	1.42	1.31	1.12	0.95			
Unite Kingdom	1.77	1.83	1.66	1.65	1.81	1.81			
United States	0.40	0.35	0.33	0.35	0.35	0.35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4〉 OECD 國家의 家族福祉서비스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03	0.04	0.04	0.05	0.06	0.07	0.08
Australia	0.05	0.06	0.22	0.28	0.30	..			
Austria	0.31	0.27	0.25	0.25	0.25	0.24			
Belgium	0.15	0.14	0.12	0.09	0.10	..			
Canada	0.11	0.10	0.08	:	:	:			
Denmark	1.81	1.80	1.90	1.90	1.98	2.05			
Finland	0.80	1.11	1.38	1.56	1.53	1.56			
France	0.29	0.37	0.35	0.35	0.37	0.41			
Germany	-	-	-	0.72	0.73	0.75			
Western Germany	0.55	0.53	0.57	0.54	0.54	0.55			
Greece	0.01	0.02	0.02	0.01	0.01	0.01			
Ireland	0.06	0.07	0.05	0.05	0.06	0.06			
Italy	0.12	0.12	0.10	0.08	0.08	0.08			
Japan	0.27	0.24	0.23	0.23	0.22	..			
Luxembourg	0.22	0.27	0.37	0.40	0.43	0.53			
Mexico	..	0.04	0.10	0.14	0.13	..			
Netherlands	0.54	0.43	0.54	0.56	0.57	0.60			
New Zealand	0.01	0.02	0.04	0.07	0.11	..			
Norway	0.68	0.70	0.94	1.14	1.31	1.39			
Portugal	0.09	0.11	0.13	0.13	0.16	0.13			
Spain	0.03	0.03	0.03	0.03	0.04	0.04			
Sweden	2.31	2.46	2.47	2.60	2.57	2.61			
Switzerland	..	..	..	..	..	..			
Turkey	..	..	..	..	..	..			
Unite Kingdom	0.52	0.44	0.41	0.44	0.48	0.51			
United States	0.31	0.24	0.24	0.27	0.28	0.29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5〉 OECD 國家의 積極的인 勞動市場 프로그램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06	0.05	0.07	0.08	0.06	0.08	0.09
Australia	..	0.46	0.30	0.38	0.77	..			
Austria	..	0.28	0.31	0.35	0.29	0.32			
Belgium	-	1.35	1.23	1.20	1.22	..			
Canada	0.31	0.68	0.57	0.66	0.70	0.70			
Denmark	0.54	0.99	1.26	1.46	1.65	1.98			
Finland	1.00	1.01	1.05	1.38	1.79	1.71			
France	0.46	0.68	0.80	0.89	1.00	1.22			
Germany	-	-	-	1.33	1.69	1.59			
Western Germany	-	0.82	1.04	1.15	1.14	1.16			
Greece	..	0.17	0.41	0.42	0.32	0.31			
Ireland	-	1.51	1.45	1.45	1.42	1.38			
Italy	..	0.45	0.69	0.70	0.93	0.93			
Japan	..	..	0.12	0.10	0.09	..			
Luxembourg	0.30	0.58	0.36	0.29	0.27	0.23			
Mexico	..	..	0.01	0.01	0.01	..			
Netherlands	1.09	1.07	1.04	1.10	1.15	1.24			
New Zealand	0.64	1.43	0.89	0.77	0.78	..			
Norway	..	0.60	0.92	0.94	1.04	1.16			
Portugal	..	..	0.64	0.72	0.85	0.84			
Spain	0.19	0.34	0.76	0.76	0.58	0.53			
Sweden	1.25	2.20	1.75	2.44	3.10	2.95			
Switzerland	0.03	0.20	0.22	0.24	0.30	..			
Turkey	..	..	0.02	0.01	0.01	0.01			
Unite Kingdom	0.56	0.73	0.60	0.57	0.57	0.58			
United States	0.15	0.11	0.22	0.23	0.23	0.21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6〉 OECD 國家의 失業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1.00	0.98	1.08	1.12	1.30	1.40	1.40
Australia	0.71	1.29	1.21	1.74	1.85	..			
Austria	..	0.90	0.93	1.04	1.07	1.47			
Belgium	2.57	3.48	2.66	2.75	2.88	..			
Canada	1.24	1.87	1.91	2.28	2.27	1.98			
Denmark	5.01	4.48	4.40	4.73	5.02	5.50			
Finland	0.68	1.41	1.16	2.26	3.95	5.02			
France	1.30	2.38	1.87	1.94	2.01	2.11			
Germany	-	-	-	2.01	2.14	2.75			
Western Germany	0.79	1.44	1.13	0.99	1.12	1.67			
Greece	0.25	0.36	0.45	0.58	0.78	0.84			
Ireland	1.74	0.50	2.80	3.09	3.47	3.50			
Italy	0.59	1.33	0.84	0.88	1.03	1.16			
Japan	0.43	0.36	0.24	0.24	0.27	..			
Luxembourg	0.88	1.73	1.23	1.23	1.17	1.34			
Mexico	-	-	-	-	-	-			
Netherlands	1.71	3.44	2.49	2.49	2.57	2.55			
New Zealand	0.51	0.63	1.93	1.96	2.05	..			
Norway	0.36	0.48	1.15	1.19	1.43	1.49			
Portugal	0.31	0.31	0.37	0.46	0.60	0.91			
Spain	2.16	2.91	2.63	2.97	3.33	3.79			
Sweden	0.39	0.91	0.92	1.66	2.71	2.89			
Switzerland	0.06	0.28	0.13	0.36	0.95	..			
Turkey	..	..	..	..	..	..			
Unite Kingdom	1.06	1.74	0.72	1.06	1.24	1.20			
United States	0.63	0.39	0.43	0.47	0.65	0.58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7〉 OECD 國家의 住居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	-	-	-	-	-	-
Australia	0.28	0.37	0.27	0.26	0.25	..			
Austria	..	..	..	..	..	..			
Belgium	..	..	..	..	..	..			
Canada	..	..	..	..	..	..			
Denmark	0.40	0.48	0.68	0.74	0.79	0.83			
Finland	0.21	0.18	0.19	0.26	0.39	0.39			
France	0.43	0.71	0.76	0.76	0.77	0.92			
Germany	-	-	-	0.20	0.26	0.24			
Western Germany	0.20	0.21	0.19	0.18	0.17	0.17			
Greece	0.07	0.22	0.12	0.11	0.08	0.09			
Ireland	0.73	0.96	0.65	0.65	0.64	0.62			
Italy	0.00	0.01	0.00	0.00	0.00	0.00			
Japan	..	..	..	..	..	..			
Luxembourg	0.02	0.03	0.05	0.05	0.06	0.07			
Mexico	..	0.00	0.00	0.00	0.00	..			
Netherlands	0.27	0.32	0.34	0.36	0.34	0.34			
New Zealand	..	0.14	0.17	0.26	1.41	..			
Norway	0.43	0.16	0.16	0.18	0.22	0.19			
Portugal	0.00	0.00	0.00	0.00	0.00	0.11			
Spain	-	0.02	0.11	0.11	0.10	0.10			
Sweden	1.14	0.69	0.69	0.88	0.98	1.17			
Switzerland	..	..	..	..	..	..			
Turkey	..	..	..	..	..	..			
Unite Kingdom	0.14	1.30	1.30	1.25	1.54	1.84			
United States	..	..	..	..	..	..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表 18〉 OECD 國家의 其他給與

(단위: GDP에 대한 %)

국 가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Korea	-	-	0.19	0.16	0.14	0.13	0.12	0.13	0.15
Australia	0.17	0.19	0.33	0.34	0.39	..			
Austria	0.19	0.22	0.18	0.18	0.16	0.20			
Belgium	0.33	0.34	0.39	0.31	0.29	..			
Canada	1.90	2.27	2.69	2.63	2.96	2.88			
Denmark	..	0.80	0.90	0.97	1.04	1.12			
Finland	0.16	0.33	0.47	0.61	0.70	0.60			
France	..	..	0.15	0.17	0.19	0.22			
Germany	-	-	-	0.51	0.53	0.59			
Western Germany	0.30	0.43	0.55	0.51	0.53	0.60			
Greece	..	..	..	..	..	..			
Ireland	0.19	0.30	0.31	0.36	0.37	0.34			
Italy	-	..	..	..	..	..			
Japan	0.21	0.21	0.14	0.13	0.12	..			
Luxembourg	0.26	0.30	0.39	0.41	0.41	0.43			
Mexico	..	0.01	0.15	0.16	0.23	..			
Netherlands	0.77	0.98	0.79	0.80	0.80	0.81			
New Zealand	0.22	0.25	0.10	0.09	0.13	..			
Norway	0.44	1.10	0.90	1.03	1.05	1.05			
Portugal	0.05	0.04	0.02	0.02	0.02	0.02			
Spain	0.04	0.04	0.04	0.04	0.05	0.05			
Sweden	0.45	0.67	0.55	0.64	0.73	0.91			
Switzerland	0.22	0.25	0.30	..	0.38	..			
Turkey	..	..	..	..	..	..			
Unite Kingdom	0.63	0.88	1.15	1.33	1.56	1.70			
United States	0.45	0.36	0.41	0.49	0.52	0.55			

資料: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of OECD Members Countries*, 1996.

附錄 4.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Raw Data(1996)

〈附表 19〉 우리나라 社會保障費의 Raw Data(1996)

(단위: 천원)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400	0	0	0				가족보건
1400	1412	0	0	2,357,966			가족계획시설
1400	1412	211	0	2,357,966			가족계획시설
1400	1412	211	201	19,456			관서운영비
1400	1412	211	202	13,946			여비
1400	1412	211	304	1,566,981			민간경상이전
1400	1412	211	305	682,583	682,583		자치단체경상이전
1400	1412	211	307	75,000			해외경상이전
1400	1413	0	0	2,764,515			모자보건관리
1400	1413	211	0	2,764,515			모자보건관리
1400	1413	211	201	2,550,292			관서운영비
1400	1413	211	202	3,912			여비
1400	1413	211	305	210,311	315,469		자치단체경상이전
1600	0	0	0				보건교육
1600	1611	0	0				보건교육
1600	1611	241	0	243,000			보건교육및홍보
1600	1611	241	304	143,000			민간경상이전
1600	1611	241	412	100,000	50,000		자치단체자본이전
1600	1611	243	0	44,000			국민건강관리
1600	1611	243	201	30,000			관서운영비
1600	1611	243	304	14,000			민간경상이전
1600	1611	244	0	205,333			구강보건사업
1600	1611	244	201	50,000			관서운영비
1600	1611	244	412	155,333	77,667		자치단체자본이전
1700	0	0	0				전염병관리
1700	1711	0	0	5,774,116			결핵관리
1700	1711	211	0	5,774,116			결핵관리
1700	1711	211	103	0			비정규직보수
1700	1711	211	201	2,872,793			관서운영비
1700	1711	211	202	4,344			여비
1700	1711	211	206	0			연구개발비

註: Bottom Up 방식으로 '보건부분의 공공지출(11)'을 산출하기 위하여 예산항의 일부(1400~6100, 8200과 8300의 일부, 8600~8700, 8900)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나 '국민계정'과 일부차이가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위 방식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음.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700	1711	211	301	5,000			보상금
1700	1711	211	304	1,828,534			민간경상이전
1700	1711	211	305	113,445	49,847		자치단체경상이전
1700	1711	211	407	950,000			자산취득비
1700	1712	0	0				공주결핵병원
1700	1712	111	0	1,945,815			인건비
1700	1712	111	101	1,139,128			기본급
1700	1712	111	102	349,768			수당
1700	1712	111	103	40,567			비정규직보수
1700	1712	111	205	416,352			복리후생비
1700	1712	151	0	448,942			경상경비
1700	1712	151	103	15,840			비정규직보수
1700	1712	151	201	250,522			관서운영비
1700	1712	151	202	7,718			여비
1700	1712	151	204	174,062			업무추진비
1700	1712	151	407	800			자산취득비
1700	1712	241	0	78,342			운영지원
1700	1712	241	102	78,342			수당
1700	1712	299	0	3,558			전산경비
1700	1712	299	201	3,558			관서운영비
1700	1713	0	0				공주병원진료사업
1700	1713	211	0	15,760,130			공주병원진료사업
1700	1713	211	201	146,224			관서운영비
1700	1713	211	206	28,240			연구개발비
1700	1713	211	304	188,129			민간경상이전
1700	1713	211	404	13,402,226			시설비
1700	1713	211	405	448,015			감리비
1700	1713	211	406	24,096			시설부대비
1700	1713	211	407	1,523,200			자산취득비
1700	1714	0	0				마산결핵병원
1700	1714	111	0	3,367,713			인건비
1700	1714	111	101	1,975,412			기본급
1700	1714	111	102	617,124			수당
1700	1714	111	103	53,513			비정규직보수
1700	1714	111	205	721,664			복리후생비
1700	1714	151	0	683,710			경상경비
1700	1714	151	103	10,560			비정규직보수
1700	1714	151	201	386,543			관서운영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700	1714	151	202	11,675			여비
1700	1714	151	204	273,832			업무추진비
1700	1714	151	407	1,100			자산취득비
1700	1714	241	0	112,000			운영지원
1700	1714	241	102	112,000			수당
1700	1714	299	0	5,590			전산경비
1700	1714	299	201	5,590			관서운영비
1700	1715	0	0				마산결핵병원진료사업
1700	1715	211	0	1,628,294			마산결핵병원진료사업
1700	1715	211	201	375,935			관서운영비
1700	1715	211	206	47,520			연구개발비
1700	1715	211	304	340,108			민간경상이전
1700	1715	211	402	6,185			설시설계비
1700	1715	211	404	817,035			시설비
1700	1715	211	405	4,948			감리비
1700	1715	211	406	1,563			시설부대비
1700	1715	211	407	35,000			자산취득비
1700	1716	0	0				목포결핵병원
1700	1716	111	0	1,812,276			인건비
1700	1716	111	101	1,085,031			기본급
1700	1716	111	102	332,441			수당
1700	1716	111	205	394,804			복리후생비
1700	1716	151	0	424,014			경상경비
1700	1716	151	103	7,504			비정규직수당
1700	1716	151	201	243,356			관서운영비
1700	1716	151	202	7,926			여비
1700	1716	151	204	164,228			업무추진비
1700	1716	151	407	1,000			자산취득비
1700	1716	241	0	47,000			운영지원
1700	1716	241	102	47,000			수당
1700	1716	299	0	3,866			전산경비
1700	1716	299	201	3,866			관서운영비
1700	1717	0	0				목포병원진료사업
1700	1717	211	0	949,966			목포병원진료사업
1700	1717	211	201	223,232			관서운영비
1700	1717	211	206	30,240			연구개발비
1700	1717	211	304	200,494			민간경상이전
1700	1717	211	404	460,000			시설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700	1717	211	407	36,000			자산취득비
1700	1718	0	0	6,621,213			나병관리
1700	1718	211	0	6,621,213			나병관리
1700	1718	211	201	458,031			관서운영비
1700	1718	211	202	2,049			여비
1700	1718	211	301	2,128,179			보상금
1700	1718	211	304	2,169,220			민간경상이전
1700	1718	211	305	1,863,734	1,221,688		자치단체경상이전
1700	1719	0	0				소록도병원
1700	1719	111	0	4,137,800			인건비
1700	1719	111	101	2,448,349			기본급
1700	1719	111	102	761,494			수당
1700	1719	111	205	927,957			복리후생비
1700	1719	151	0	1,397,799			경상경비
1700	1719	151	103	124,360			비정규직보수
1700	1719	151	201	898,465			관서운영비
1700	1719	151	202	27,346			여비
1700	1719	151	204	346,678			업무추진비
1700	1719	151	407	950			자산취득비
1700	1719	299	0	9,139			전산경비
1700	1719	299	201	3,803			관서운영비
1700	1719	299	407	5,336			자산취득비
1700	1720	0	0				나환자치료
1700	1720	211	0	3,406,841			나환자치료
1700	1720	211	102	47,146			수당
1700	1720	211	201	489,869			관서운영비
1700	1720	211	206	38,880			연구개발비
1700	1720	211	304	1,150,358			민간경상이전
1700	1720	211	402	34,448			설시설계비
1700	1720	211	404	1,567,000			시설비
1700	1720	211	405	18,425			감리비
1700	1720	211	406	5,490			시설부대비
1700	1720	211	407	55,225			자산취득비
1700	1721	0	0	1,951,725			성병및에이즈관리
1700	1721	211	0	1,951,725			성병및에이즈관리
1700	1721	211	201	1,722,189			관서운영비
1700	1721	211	202	10,296			여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700	1721	211	204	9,240			업무추진비
1700	1721	211	206	0			연구개발비
1700	1721	211	304	160,000			민간경상이전
1700	1721	211	412	50,000	50,000		자치단체자본이전
1700	1723	0	0	2,015,351			급성전염병관리
1700	1723	211	0	2,015,351			급성전염병관리
1700	1723	211	201	363,833			관서운영비
1700	1723	211	202	20,414			여비
1700	1723	211	204	686			업무추진비
1700	1723	211	301	239,939			보상금
1700	1723	211	305	1,390,479	2,585,379		자치단체경상이전
1700	1724	0	0				검역소
1700	1724	241	0	1,604,013			검역전염병관리
1700	1724	241	102	109,593			수당
1700	1724	241	201	55,335			관서운영비
1700	1724	241	202	18,900			여비
1700	1724	241	402	13,549			실시설계비
1700	1724	241	403	519,750			토지매입비
1700	1724	241	404	573,528			시설비
1700	1724	241	405	7,163			감리비
1700	1724	241	406	2,142			시설부대비
1700	1724	241	407	304,053			자산취득비
1700	1724	299	0	17,372			전산경비
1700	1724	299	201	17,372			관서운영비
1800	0	0	0				질병관리
1800	1811	0	0				특수질환관리
1800	1811	241	0	128,286			혈우병환자치료지원
1800	1811	241	304	128,286			민간경상이전
1800	1811	242	0	44,729			성인병관리
1800	1811	242	304	44,729			민간경상이전
1800	1811	242	305	0			자치단체경상이전
1800	1812	0	0	22,926,694			암질환관리
1800	1812	211	0	22,926,694			암질환관리
1800	1812	211	206	1,000,000			연구개발비
1800	1812	211	304	750,000			민간경상이전
1800	1812	211	401	261,176			기본조사설계비
1800	1812	211	402	492,518			실시설계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800	1812	211	404	15,000,000			시설비
1800	1812	211	405	400,000			감리비
1800	1812	211	406	23,000			시설부대비
1800	1812	211	407	5,000,000			자산취득비
1800	1813	0	0				정신질환시설
1800	1813	211	0	16,424,187			정신질환시설
1800	1813	211	201	1,760			관서운영비
1800	1813	211	202	2,352			여비
1800	1813	211	305	12,822,019	3,384,433		자치단체경상이전
1800	1813	211	412	3,598,056	3,598,056		자치단체자본이전
1800	1814	0	0				서울정신병원
1800	1814	111	0	7,486,561			인건비
1800	1814	111	101	4,211,099			기본급
1800	1814	111	102	1,235,999			수당
1800	1814	111	103	497,188			비정규직보수
1800	1814	111	205	1,542,275			복리후생비
1800	1814	151	0	1,167,219			경상경비
1800	1814	151	103	15,744			비정규직보수
1800	1814	151	201	539,765			관서운영비
1800	1814	151	202	8,000			여비
1800	1814	151	204	596,040			업무추진비
1800	1814	151	407	7,670			자산취득비
1800	1814	241	0	305,000			병원운영지원
1800	1814	241	102	305,000			수당
1800	1814	299	0	16,914			전산경비
1800	1814	299	201	6,235			관서운영비
1800	1814	299	202	209			여비
1800	1814	299	407	10,470			자산취득비
1800	1815	0	0				서울병원진료사업
1800	1815	211	0	4,145,596			서울병원진료사업
1800	1815	211	102	447,842			수당
1800	1815	211	103	53,704			비정규직보수
1800	1815	211	201	838,333			관서운영비
1800	1815	211	202	14,041			여비
1800	1815	211	206	229,600			연구개발비
1800	1815	211	304	844,959			민간경상이전
1800	1815	211	403	900,000			토지매입비
1800	1815	211	404	702,932			시설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800	1815	211	405	0			감리비
1800	1815	211	407	114,185			자산취득비
1800	1816	0	0				나주정신병원
1800	1816	111	0	4,545,064			인건비
1800	1816	111	101	2,581,280			기본급
1800	1816	111	102	813,336			수당
1800	1816	111	103	192,193			비정규직보수
1800	1816	111	205	958,255			복리후생비
1800	1816	151	0	672,127			경상경비
1800	1816	151	103	10,080			비정규직보수
1800	1816	151	201	299,296			관서운영비
1800	1816	151	202	6,253			여비
1800	1816	151	204	354,948			업무추진비
1800	1816	151	407	1,550			자산취득비
1800	1816	241	0	123,000			병원운영지원
1800	1816	241	102	113,000			수당
1800	1816	241	407	10,000			자산취득비
1800	1816	299	0	7,766			전산경비
1800	1816	299	201	7,228			관서운영비
1800	1816	299	202	202			여비
1800	1816	299	206	336			연구개발비
1800	1817	0	0				
1800	1817	211	0	1,722,174			진료사업
1800	1817	211	102	94,010			수당
1800	1817	211	103	30,688			비정규직보수
1800	1817	211	201	577,075			관서운영비
1800	1817	211	202	5,026			여비
1800	1817	211	206	77,760			연구개발비
1800	1817	211	304	567,611			민간경상이전
1800	1817	211	404	310,000			시설비
1800	1817	211	407	60,004			자산취득비
1800	1818	0	0				부곡정신병원
1800	1818	111	0	3,839,200			인건비
1800	1818	111	101	2,250,146			기본급
1800	1818	111	102	586,133			수당
1800	1818	111	103	167,461			비정규직보수
1800	1818	111	205	835,460			복리후생비
1800	1818	151	0	559,076			경상경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800	1818	151	103	7,069			비정규직보수
1800	1818	151	201	224,867			관서운영비
1800	1818	151	202	5,979			여비
1800	1818	151	204	319,672			업무추진비
1800	1818	151	407	1,489			자산취득비
1800	1818	241	0	70,362			병원운영지원
1800	1818	241	102	69,362			수당
1800	1818	241	407	1,000			자산취득비
1800	1818	299	0	3,880			전산경비
1800	1818	299	201	3,880			관서운영비
1800	1819	0	0				부곡병원진료사업
1800	1819	211	0	1,343,471			부곡병원진료사업
1800	1819	211	102	60,907			수당
1800	1819	211	103	16,111			비정규직보수
1800	1819	211	201	315,447			관서운영비
1800	1819	211	202	4,053			여비
1800	1819	211	206	60,480			연구개발비
1800	1819	211	304	398,473			민간경상이전
1800	1819	211	404	381,000			시설비
1800	1819	211	407	107,000			자산취득비
1800	1820	0	0				춘천정신병원
1800	1820	111	0	2,591,628			인건비
1800	1820	111	101	1,507,141			기본급
1800	1820	111	102	417,584			수당
1800	1820	111	103	110,485			비정규직보수
1800	1820	111	205	556,418			복리후생비
1800	1820	151	0	490,254			경상경비
1800	1820	151	103	4,263			비정규직보수
1800	1820	151	201	256,043			관서운영비
1800	1820	151	202	5,060			여비
1800	1820	151	204	223,981			업무추진비
1800	1820	151	407	907			자산취득비
1800	1820	241	0	116,145			춘천정신병원운영
1800	1820	241	102	113,255			수당
1800	1820	241	407	2,890			자산취득비
1800	1820	299	0	3,690			전산경비
1800	1820	299	201	3,581			관서운영비
1800	1820	299	404	9			시설비
1800	1820	299	407	100			자산취득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800	1821	0	0				춘천병원진료사업
1800	1821	211	0	867,487			춘천병원진료사업
1800	1821	211	102	71,767			수당
1800	1821	211	103	34,524			비정규직보수
1800	1821	211	201	296,435			관서운영비
1800	1821	211	202	4,443			여비
1800	1821	211	206	43,200			연구개발비
1800	1821	211	304	349,118			민간경상이전
1800	1821	211	403	0			토지매입비
1800	1821	211	404	48,000			시설비
1800	1821	211	406	5,000			시설부대비
1800	1821	211	407	15,000			자산취득비
1800	1822	0	0				정신질환진료시설확충
1800	1822	211	0	4,879,183			정신질환진료시설확충
1800	1822	211	201	4,700			관서운영비
1800	1822	211	202	12,025			여비
1800	1822	211	206	0			연구개발비
1800	1822	211	412	4,862,458	4,862,458		자치단체자본이전
1900	0	0	0				의정및약정
1900	1911	0	0				의정사업
1900	1911	241	0	807,000			혈액관리사업
1900	1911	241	411	807,000			민간자본이전
1900	1911	243	0	292,917			원폭피해자진료
1900	1911	243	201	475			관서운영비
1900	1911	243	202	1,065			여비
1900	1911	243	304	255,588			민간경상이전
1900	1911	243	305	35,789	0		자치단체경상이전
1900	1911	243	411	0			민간자본이전
1900	1911	244	0	197,460			병원서비스개선
1900	1911	244	201	155,000			관서운영비
1900	1911	244	202	38,460			여비
1900	1911	244	204	2,000			업무추진비
1900	1911	244	301	2,000			보상금
1900	1911	245	0	230,200			의료제도연구
1900	1911	245	202	5,200			여비
1900	1911	245	206	0			연구개발비
1900	1911	245	304	225,000			민간경상이전
1900	1911	248	0	211,519			병원선운영
1900	1911	248	305	211,519	211,519		자치단체경상이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900	1911	249	0	145,842			공중보건장학생
1900	1911	249	301	145,842			보상금
1900	1912	0	0	9,320,286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1900	1912	211	0	9,320,286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
1900	1912	211	201	53,013			관서운영비
1900	1912	211	202	24,557			여비
1900	1912	211	206	550,000			연구개발비
1900	1912	211	304	210,000			민간경상이전
1900	1912	211	305	1,663,756	10,000		자치단체경상이전
1900	1912	211	307	225,000			해외경상이전
1900	1912	211	401	0			기본조사설계비
1900	1912	211	412	6,593,960	5,592,080		자치단체자본이전
1900	1912	211	412	27,932,317	13,966,159		농특세관리특별회계
1900	1913	0	0	29,020,459			민간병원등차관상환
1900	1913	211	0	29,020,459			민간병원등차관상환
1900	1913	211	201	2,677			관서운영비
1900	1913	211	202	2,496			여비
1900	1913	211	304	1,903,404			민간경상이전
1900	1913	211	704	27,111,882			전대차관원리금상환
1900	1914	0	0	3,985,415			응급의료체계구축
1900	1914	211	0	3,985,415			응급의료체계구축
1900	1914	211	201	243			관서운영비
1900	1914	211	202	3,022			여비
1900	1914	211	204	10,000			업무추진비
1900	1914	211	304	3,251,000			민간경상이전
1900	1914	211	305	135,150	135,150		자치단체경상이전
1900	1914	211	401	0			기본조사설계비
1900	1914	211	405	0			감리비
1900	1914	211	411	586,000			민간자본이전
1900	1916	0	0	1,650,000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00	1916	211	0	1,650,000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00	1916	211	304	1,650,000			민간경상이전
1900	1917	0	0	2,759,200			한의학연구소
1900	1917	211	0	2,759,200			한의학연구소
1900	1917	211	303	2,759,200			출연금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1900	1919	0	0	7,200,000			신약개발지원
1900	1919	211	0	7,200,000			신약개발지원
1900	1919	211	206	0			연구개발비
1900	1919	211	303	7,200,000			출연금
1900	1920	0	0	626,365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관리
1900	1920	211	0	626,365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관리
1900	1920	211	103	504			비정규직보수
1900	1920	211	201	43,690			관서운영비
1900	1920	211	202	18,145			여비
1900	1920	211	204	4,050			업무추진비
1900	1920	211	304	400,000			민간경상이전
1900	1920	211	305	41,976	41,976		자치단체경상이전
1900	1920	211	307	3,000			해외경상이전
1900	1920	211	403	0			토지구입비
1900	1920	211	404	0			시설비
1900	1920	211	405	0			감리비
1900	1920	211	407	0			자산취득비
1900	1920	211	412	115,000	115,000		자치단체자본이전
9100	0	0	0	4,500,000			타회계전출금
9100	9111	0	0	4,500,000			국립의료원특회전출금
9100	9111	211	0	4,500,000			국립의료원특회전출금
9100	9111	211	701	4,500,000			전출금
2600	0	0	0				위생사업
2600	2611	0	0				식품행정
2600	2611	241	0	39,461			식품행정
2600	2611	241	201	17,900			관서운영비
2600	2611	241	202	9,361			여비
2600	2611	241	301	12,200			보상금
2600	2612	0	0				식품위생관리
2600	2612	211	0	1,863,041			식품위생관리
2600	2612	211	103	166,800			비정규직보수
2600	2612	211	201	776,072			관서운영비
2600	2612	211	202	432,687			여비
2600	2612	211	204	24,232			업무추진비
2600	2612	211	301	10,000			보상금
2600	2612	211	304	30,000			민간경상이전
2600	2612	211	305	23,250	23,250		자치단체경상이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2600	2612	211	407	300,000			자산취득비
2600	2612	211	411	100,000			민간자본이전
2600	2613	0	0				수출입식품관리
2600	2613	211	0	1,489,072			수출입식품관리
2600	2613	211	201	997,435			관서운영비
2600	2613	211	202	98,462			여비
2600	2613	211	407	393,175			자산취득비
2600	2614	0	0				수출입식품전산경비
2600	2614	299	0	4,193,043			수출입식품전산경비
2600	2614	299	201	226,311			관서운영비
2600	2614	299	202	8,782			여비
2600	2614	299	206	3,812,968			연구개발비
2600	2614	299	404	12,811			시설비
2600	2614	299	407	132,171			자산취득비
1100	0	0	0				사회복지행정
1100	1101	0	0				기관운영
1100	1101	245	0	554,657			국제협력
1100	1101	245	201	224,397			관서운영비
1100	1101	245	202	22,022			여비
1100	1101	245	204	24,988			업무추진비
1100	1101	245	301	18,000			보상금
1100	1101	245	307	245,250			해외경상이전
1100	1101	299	0	515,143			전산경비
1100	1101	299	201	226,981			관서운영비
1100	1101	299	202	1,597			여비
1100	1101	299	206	220,076			연구개발비
1100	1101	299	404	6,750			시설비
1100	1101	299	407	59,739			자산취득비
1100	1102	0	0	5,290,346			보건사회연구원
1100	1102	211	0	5,290,346			보건사회연구원
1100	1102	211	303	5,290,346			출연금
6100	0	0	0				보건연구
6100	6111	0	0				국립보건원
6100	6111	111	0	7,790,466			인건비
6100	6111	111	101	4,772,012			기본급
6100	6111	111	102	1,067,179			수당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6100	6111	111	103	223,641			비정규직보수
6100	6111	111	205	1,727,634			복리후생비
6100	6111	151	0	2,136,546			보건원경상경비
6100	6111	151	103	3,836			비정규직보수
6100	6111	151	201	461,645			관서운영비
6100	6111	151	202	13,297			여비
6100	6111	151	204	925,365			업무추진비
6100	6111	151	207	729,403			시험연구비
6100	6111	151	407	3,000			자산취득비
6100	6111	241	0	246,839			보건요원훈련
6100	6111	241	102	142,056			수당
6100	6111	241	201	91,461			관서운영비
6100	6111	241	202	4,028			여비
6100	6111	241	204	4,294			업무추진비
6100	6111	241	407	5,000			자산취득비
6100	6111	242	0	442,011			국가고시
6100	6111	242	103	23,925			비정규직보수
6100	6111	242	201	365,213			관서운영비
6100	6111	242	202	11,954			여비
6100	6111	242	204	30,739			업무추진비
6100	6111	242	407	10,180			자산취득비
6100	6111	299	0	33,339			전산경비
6100	6111	299	201	10,634			관서운영비
6100	6111	299	202	300			여비
6100	6111	299	407	22,405			자산취득비
6100	6112	0	0				보건연구시설관리
6100	6112	211	0	1,755,851			보건연구시설관리
6100	6112	211	102	71,867			수당
6100	6112	211	201	535,943			관서운영비
6100	6112	211	202	3,004			여비
6100	6112	211	207	163,051			시험연구비
6100	6112	211	404	150,000			시설비
6100	6112	211	405	0			감리비
6100	6112	211	406	0			시설부대비
6100	6112	211	704	831,986			전대차관원리금상환
6100	6113	0	0	852,673			검정및시험
6100	6113	211	0	852,673			검정및시험
6100	6113	211	202	45,003			여비
6100	6113	211	204	4,400			업무추진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6100	6113	211	207	693,000			시험연구비
6100	6113	211	404	50,170			시설비
6100	6113	211	407	60,100			자산취득비
6100	6115	0	0	275,000			해외유입전염병및감염병
6100	6115	211	0	275,000			해외유입전염병및감염병
6100	6115	211	201	45,000			관서운영비
6100	6115	211	207	180,000			시험연구비
6100	6115	211	407	50,000			자산취득비
6100	6116	0	0				국립보건원마산분원
6100	6116	111	0	195,750			인건비
6100	6116	111	101	124,311			기본급
6100	6116	111	102	27,471			수당
6100	6116	111	205	43,968			복리후생비
6100	6116	151	0	93,513			경상경비
6100	6116	151	103	2,910			비정규직보수
6100	6116	151	201	24,992			관서운영비
6100	6116	151	202	2,664			여비
6100	6116	151	204	24,030			업무추진비
6100	6116	151	207	19,965			시험연구비
6100	6116	151	404	18,807			시설비
6100	6116	151	407	145			자산취득비
6100	6116	241	0	28,772			운영지원
6100	6116	241	102	3,772			수당
6100	6116	241	407	25,000			자산취득비
6100	6116	299	0	708			전산경비
6100	6116	299	201	708			관서운영비
6100	6120	0	0	90,000			독성약리수탁시험
6100	6120	211	0	90,000			독성약리수탁시험
6100	6120	211	207	90,000			시험연구비
9700	0	0	0				국민계정
9700	9710	0	0	614,900,000		11100	국민계정 최종 소비지출
9700	9720	0	0	0		11100	국민계정 보조금
9700	9730	0	0	12,300,000		11100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금
9700	9740	0	0	79,400,000		11100	기타 경상이전
9700	9750	0	0	194,300,000		11100	국민계정 총고정 자본형성
9700	9760	0	0	43,900,000		11100	국민계정 자본이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200	0	0	0				생활보호
3200	3211	0	0	305,539,576			생계보호
3200	3211	211	0	305,539,576			생계보호
3200	3211	211	201	25,477			관서운영비
3200	3211	211	202	6,496			여비
3200	3211	211	305	247,089,849	68,676,181	13110	거택보호
3200	3211	211	305	48,417,754	15,167,710	13110	시설보호
3200	3211	211	601	10,000,000			국내차입금상환
3200	3212	0	0	1,517,897			일시구호등
3200	3212	241	0	713,418			일시구호
3200	3212	241	201	3,180			관서운영비
3200	3212	241	202	872			여비
3200	3212	241	301	709,366		13310	보상금
3200	3212	242	0	804,479			귀순북한동포등
3200	3212	242	201	2,270			관서운영비
3200	3212	242	202	4,872			여비
3200	3212	242	204	272			업무추진비
3200	3212	242	301	602,065		13410	보상금
3200	3212	242	304	195,000		13410	민간경상이전
3200	3213	0	0	53,549,120			교육보호
3200	3213	211	0	53,549,120			교육보호
3200	3213	211	201	14,416			관서운영비
3200	3213	211	202	1,443			여비
3200	3213	211	305	17,797,692	5,727,586	13110	중학생수업료및입학금
3200	3213	211	305	32,483,513	9,999,223	13110	실업계고교생수업료및입학금
3200	3213	211	305	3,252,056	934,030	13110	인문계고교생수업료및입학금
3200	3214	0	0	9,776,665			부랑인시설보호
3200	3214	211	0	9,776,665			부랑인시설보호
3200	3214	211	201	301			관서운영비
3200	3214	211	202	906			여비
3200	3214	211	305	4,958,261	1,746,200	13320	부랑인시설운영비
3200	3214	211	305	2,685,790	993,201	13320	부랑아동시설운영비
3200	3214	211	305	297,174	74,294	13320	부랑인자활사업비
3200	3214	211	412	1,834,233	1,834,233	13320	자치단체자본이전
3200	3215	0	0				의료보호
3200	3215	211	0	500,685,619		11100	의료보호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300	0	0	0				기타사회복지
3300	3311	0	0				사회행정
3300	3311	121	0	386,590			사회복지심의관실경상경비
3300	3311	121	201	24,610			관서운영비
3300	3311	121	202	6,410			여비
3300	3311	121	204	354,006			업무추진비
3300	3311	121	407	1,564			자산취득비
3300	3311	122	0	30,898			사회복지경상경비
3300	3311	122	201	12,034			관서운영비
3300	3311	122	202	18,864			여비
3300	3311	123	0	22,220			장애인복지경상경비
3300	3311	123	201	22,220			관서운영비
3300	3311	241	0	0			사회복지정책
3300	3311	241	202	0			여비
3300	3312	0	0	12,361,054			사회복지관운영
3300	3312	211	0	12,361,054			사회복지관 운영
3300	3312	211	202	13,000		08200	여비
3300	3312	211	304	1,312,840		08200	민간경상이전
3300	3312	211	305	3,515,312	10,545,943	08200	종합사회복지관운영
3300	3312	211	305	654,854	1,964,537	08200	사회복지관운영
3300	3312	211	305	10,625	31,874	08200	사회복지상담소운영
3300	3312	211	305	4,186,373	1,806,617	08200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3300	3312	211	412	2,668,050	4,954,950	08200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13	0	0	300,000			보건복지사무소
3300	3313	211	0	300,000			보건복지사무소
3300	3313	211	202	16,640			여비
3300	3313	211	305	267,360			자치단체경상이전
3300	3313	211	412	16,000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14	0	0	22,573,504			사회복지전문요원
3300	3314	211	0	22,573,504			사회복지전문요원
3300	3314	211	201	12,928			관서운영비
3300	3314	211	202	2,213			여비
3300	3314	211	204	1,026			업무추진비
3300	3314	211	305	22,557,337	6,916,975		자치단체경상이전
3300	3315	0	0	46,935,238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300	3315	211	0	46,935,238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300	3315	211	202	1,936			여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300	3315	211	305	37,430,822	12,710,431	05199	자치단체경상이전
3300	3315	211	412	9,502,480	9,502,480	05199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16	0	0	18,334,451			재가장애인보호
3300	3316	211	0	18,334,451			재가장애인보호
3300	3316	211	201	18,400			관서운영비
3300	3316	211	202	7,450			여비
3300	3316	211	206	0			연구개발비
3300	3316	211	301	238,980		05399	보상금
3300	3316	211	305	6,720,842	10,375,740	05399	장애인복지관운영비계
3300	3316	211	305	1,074,786	1,791,310	05399	재활병의원운영비
3300	3316	211	305	111,000	39,000	05399	주간맞단기보호시설운영
3300	3316	211	305	41,460	69,370	05399	장애인체육관운영비
3300	3316	211	305	5,040,000	2,160,000	13110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3300	3316	211	305	435,000	165,000	05499	장애인보장구교부
3300	3316	211	305	341,871	102,668	05499	장애인의료비
3300	3316	211	305	805,095	293,037	05499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3300	3316	211	412	3,499,567	6,262,610	05299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17	0	0	2,091,092			장애인민간단체지원
3300	3317	211	0	2,091,092			장애인민간단체지원
3300	3317	211	304	2,091,092		05399	민간경상이전
3300	3318	0	0	4,124,568			재활원운영
3300	3318	111	0	3,312,757			인건비
3300	3318	111	101	2,052,476		05399	기본급
3300	3318	111	102	523,573		05399	수당
3300	3318	111	205	736,708		05399	복리후생비
3300	3318	151	0	693,596			경상경비
3300	3318	151	103	3,975		05399	비정규직보수
3300	3318	151	201	379,335			관서운영비
3300	3318	151	202	3,739		05399	여비
3300	3318	151	204	305,839		05399	업무추진비
3300	3318	151	407	708		05399	자산취득비
3300	3318	241	0	66,875			운영지원
3300	3318	241	102	61,346		05399	수당
3300	3318	241	407	5,529		05399	자산취득비
3300	3318	299	0	51,340			전산경비
3300	3318	299	201	45,312			관서운영비
3300	3318	299	407	6,028		05399	자산취득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300	3319	0	0	1,130,222			재활훈련
3300	3319	211	0	1,130,222			재활훈련
3300	3319	211	102	13,150		05399	수당
3300	3319	211	103	12,658		05399	비정규직보수
3300	3319	211	201	901,020			관서운영비
3300	3319	211	202	10,323		05399	여비
3300	3319	211	204	1,990		05399	업무추진비
3300	3319	211	304	141,181		05399	민간경상이전
3300	3319	211	404	40,000		05399	시설비
3300	3319	211	407	9,900		05399	자산취득비
3300	3320	0	0	842,434			재활병원재활치료
3300	3320	211	0	842,434			재활병원재활치료
3300	3320	211	201	591,509			관서운영비
3300	3320	211	206	51,840		05399	연구개발비
3300	3320	211	304	145,975		05399	민간경상이전
3300	3320	211	407	53,110		05399	자산취득비
3300	3324	0	0	110,349,456			보육사업
3300	3324	200	0	110,349,456			사업비
3300	3324	211	0	110,349,456			보육사업
3300	3324	211	201	50,400			관서운영비
3300	3324	211	202	18,043			여비
3300	3324	211	206	60,000			연구개발비
3300	3324	211	304	220,000		08100	민간경상이전
3300	3324	211	305	67,127,781	70,478,701	08100	시설별지원
3300	3324	211	305	21,301,643	18,102,229	08100	아동별지원
3300	3324	211	305	336,432	309,888	08100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3300	3324	211	305	552,384	368,256	08100	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
3300	3324	211	305	50,221	33,481	08100	보육정보센터운영비
3300	3324	211	404	200,000		08100	시설비
3300	3324	211	412	20,432,552	37,946,166	08100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25	0	0	347,485			가정복지
3300	3325	121	0	75,634			가정복지경상경비
3300	3325	121	201	25,270			관서운영비
3300	3325	121	202	6,726			여비
3300	3325	121	204	42,360			업무추진비
3300	3325	121	407	1,278			자산취득비
3300	3325	122	0	31,648			가정의례경상경비
3300	3325	122	201	28,133			관서운영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300	3325	122	202	3,515			여비
3300	3325	123	0	25,730			노인복지경상경비
3300	3325	123	201	25,730			관서운영비
3300	3325	124	0	6,123			아동복지경상경비
3300	3325	124	201	6,123			관서운영비
3300	3325	241	0	13,000			가정복지운영
3300	3325	241	202	3,000			여비
3300	3325	241	304	10,000		08400	민간경상이전
3300	3325	242	0	195,350			여성단체지원
3300	3325	242	304	195,350		08400	민간경상이전
3300	3327	0	0	58,204,927			재가노인지원
3300	3327	211	0	58,204,927			재가노인지원
3300	3327	211	201	4,200			관서운영비
3300	3327	211	202	5,762			여비
3300	3327	211	204	75,998			업무추진비
3300	3327	211	304	512,230	491,040	05399	민간경상이전
3300	3327	211	305	5,725,440	2,734,560	05399	경로당운영비지원
3300	3327	211	305	2,783,095	1,329,408	05399	경로당단방비지원
3300	3327	211	305	47,010,432	20,147,328	13110	노령수당
3300	3327	211	305	240,090	70,583	11100	노인건강진단
3300	3327	211	305	180,000	270,000	05399	노인주간보호사업
3300	3327	211	305	220,000	330,000	05399	노인단기보호사업
3300	3327	211	305	1,848,000		05299	가정봉사원양성/파견사업
3300	3327	211	305		162,852,000	05430	노인교통비지원
3300	3328	0	0	26,459,905			노인시설보호
3300	3328	211	0	26,459,905			노인시설보호
3300	3328	211	305	11,636,580	3,529,183	05199	자치단체경상이전
3300	3328	211	412	14,823,325	9,378,325	05199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29	0	0	32,706,533			아동시설보호
3300	3329	211	0	32,706,533			아동시설보호
3300	3329	211	305	29,505,765	9,900,178	08100	아동복지시설운영
3300	3329	211	305	415,768	153,623	08100	아동직업훈련및영농훈련
3300	3329	211	412	2,785,000	2,785,000	08100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30	0	0	6,251,257			아동건전육성
3300	3330	211	0	6,251,257			아동건전육성
3300	3330	211	201	4,900			관서운영비
3300	3330	211	202	7,008			여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300	3330	211	204	4,890			업무추진비
3300	3330	211	304	133,163		08300	민간경상이전
3300	3330	211	305	660,081	660,081	08400	결연기관운영
3300	3330	211	305	152,010	152,010	08400	입양기관운영
3300	3330	211	305	5,243,705	1,454,089	13110	소년가장보호
3300	3330	211	305	39,000	21,000	08400	입양아동양육보조
3300	3330	211	305	6,500	3,500	08400	입양아동의료비지원
3300	3331	0	0	5,481,796			모자보호및부녀직업보도시설
3300	3331	211	0	5,481,796			모자보호및부녀직업보도시설
3300	3331	211	305	2,403,439	788,215	08100	모자보호시설운영비
3300	3331	211	305	1,448,436	1,448,436	08100	부녀직업보도시설운영비
3300	3331	211	412	1,629,921	1,629,921	08100	자치단체자본이전
3300	3332	0	0	5,794,202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
3300	3332	211	0	5,794,202			재가부녀및모자가정지원
3300	3332	211	201	39,160			관서운영비
3300	3332	211	202	21,299			여비
3300	3332	211	204	3,194			업무추진비
3300	3332	211	301	575,000		07200	보상금
3300	3332	211	305	4,585,712	1,839,702	07200	자녀학비
3300	3332	211	305	454,761	152,019	07100	아동양육비
3300	3332	211	305	111,326	111,326	08400	성폭력상담소운영비
3300	3332	211	307	3,750			해외경상이전
3300	3333	0	0	1,152,136			재가부자가정지원
3300	3333	211	0	1,152,136			재가부자가정지원
3300	3333	211	201	9,807			관서운영비
3300	3333	211	202	8,282			여비
3300	3333	211	305	124,480	46,778	07100	아동양육비
3300	3333	211	305	1,009,567	382,590	07200	아동교육비
3400	0	0	0	16,888,914			국민연금
3400	3411	0	0	200,834			국민연금
3400	3411	121	0	39,413			연금제도경상경비
3400	3411	121	201	8,050			관서운영비
3400	3411	121	202	30,363			여비
3400	3411	121	204	1,000			업무추진비
3400	3411	121	407	0			자산취득비
3400	3411	122	0	49,524			연금재정경상경비
3400	3411	122	201	32,956			관서운영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3400	3411	122	202	14,978			여비
3400	3411	122	204	1,590			업무추진비
3400	3411	241	0	9,014			연금제도
3400	3411	241	201	8,000			관서운영비
3400	3411	241	202	1,014			여비
3400	3411	241	204	0			업무추진비
3400	3411	242	0	31,263			기금관리
3400	3411	242	202	1,263			여비
3400	3411	242	206	30,000			연구개발비
3400	3411	244	0	71,620			농어민연금
3400	3411	244	201	66,620			관서운영비
3400	3411	244	204	5,000			업무추진비
3400	3412	0	0	16,688,080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
3400	3412	211	0	16,688,080			국민연금관리공단운영
3400	3412	211	301	16,688,080			보상금
7000	0	0	0				공적연금
7000	7100	0	0				국민연금
7000	7100	101	0	67,615,839		01110	특례노령연금
7000	7100	102	0	16,966,671		02110	장해연금
7000	7100	103	0	3,964,684		02110	장해일시보상금
7000	7100	104	0	51,559,986		06110	유족연금
7000	7100	105	0	975,570,884		01110	반환일시금
7000	7100	106	0	1,966,670		06110	사망일시금
7000	7200	0	0				공무원연금
7000	7200	201	0	798,778,000		01200	퇴직일시금
7000	7200	202	0	83,895,000		06200	유족일시금
7000	7200	203	0	743,792,000		01200	퇴직연금
7000	7200	204	0	45,020,000		06200	유족연금
7000	7200	205	0	3,475,000		02200	장해연금
7000	7200	206	0	11,485,000		06200	유족보상금
7000	7200	207	0	2,212,000		02200	장해보상금
7000	7200	208	0	165,515,000		01200	퇴직연금공제일시금
7000	7200	209	0	2,260,000		01200	퇴직급여가산금
7000	7200	210	0	0		06200	유족급여가산금
7000	7200	211	0	3,663,000		06200	유족연금부가금
7000	7200	212	0	1,668,000		06200	유족연금특별부가금
7000	7200	213	0	535,826,000		01200	퇴직수당
7000	7200	214	0	4,114,000			공무상요양비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7000	7200	215	0	200,000			재해부조금
7000	7200	216	0	18,658,000			사망조위금
7000	7300	0	0				사학연금
7000	7300	301	0	62,461,857		01200	퇴직연금
7000	7300	302	0	14,521,370		01200	퇴직연금공제일시금
7000	7300	303	0	85,180,677		01200	퇴직연금일시금
7000	7300	304	0	77,767,635		01200	퇴직일시금
7000	7300	305	0	0		01200	퇴직급여가산금
7000	7300	306	0	3,811,768		06200	유족연금
7000	7300	307	0	644,341		06200	유족연금부가금
7000	7300	308	0	275,986		06200	유족연금특별부가금
7000	7300	309	0	6,709,334		06200	유족연금일시금
7000	7300	310	0	3,672,768		06200	유족일시금
7000	7300	311	0	0		06200	유족급여가산금
7000	7300	312	0	0		06200	유족보상금
7000	7300	314	0	360,950			직무상요양비
7000	7300	315	0	119			직무상요양일시금
7000	7300	316	0	107,097		02200	장해연금
7000	7300	317	0	1,177,382		02200	장해보상금
7000	7300	319	0	157,485			재해부조금
7000	7300	320	0	8,295,358			사망조위금
7000	7300	321	0	0			기타
7000	7300	322	0	79,318,108		01200	퇴직수당급여
7000	7400	0	0				산재보험
7000	7400	401	0	342,974,000		11100	요양급여
7000	7400	402	0	435,728,944		03000	휴업급여
7000	7400	403	0	347,751,326		03000	장해급여
7000	7400	404	0	179,501,753		03000	유족급여
7000	7400	405	0	32,782,487		03000	상병보상연금
7000	7400	406	0	16,598,240		03000	장례비
7000	7500	0	0				고용보험
7000	7500	501	0	6,437,000		0932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7000	7500	502	0	1,440,000		09320	육아휴직장려금
7000	7500	503	0	1,377,000		09320	직장보육시설지원금
7000	7500	504	0	16,000		09320	휴업수당지원금
7000	7500	505	0	2,494,000		09500	인력은행지원
7000	7500	506	0	489,000		09500	고급인력정보센터지원
7000	7500	507	0	321,000		09120	사업내직업훈련지원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7000	7500	508	0	379,000		09120	교육훈련 등
7000	7500	509	0	2,308,000			직업훈련시설, 장비대부
7000	7500	510	0	0		09120	고령자수강장려금
7000	7500	511	0	4,716,000			교육수강비용대부
7000	7500	512	0	844,000		09120	실직자재취직훈련
7000	7500	513	0	9,968,000		10100	구직급여
7000	7500	514	0	28,000		10100	상병급여
7000	7500	515	0	460,000		10100	취직촉진수당
7000	7500	516	0	3,000		09120	실업급여중 직업능력개발수당
7000	7600	0	0	871,684,274			군인연금
7000	7600	601	0	564,977,830		01300	퇴역연금
7000	7600	602	0	32,162,838		01300	퇴역연금일시금
7000	7600	603	0	4,968,195		02400	상이연금
7000	7600	604	0	79,878,855		06200	유족연금
7000	7600	605	0	91,096,447		01300	퇴직일시금
7000	7600	607	0	92,887,885		01300	퇴직수당
7000	7600	608	0	4,855,459		06200	사망조위금
7000	7600	609	0	802,544		06200	유족일시금
7000	7600	610	0	54,221		01300	기여금반환
7000	7700	0	0				의료보험
7000	7710	0	0				의료보험(연합회,공단)
7000	7710	701	0	4,747,234,068		11100	요양급여
7000	7710	702	0	217,148,249		11100	분만급여
7000	7710	703	0	18,246,177			요양비
7000	7710	704	0	42,883			분만비
7000	7710	705	0	40,558,660			장제비
7000	7710	706	0	11,424,446			본인부담금보상금
7000	7710	707	0	0			분만수당
7000	7710	708	0	29,380,553			건강진단
7000	7800	0	0				국가보훈
7000	7800	801	0	374,675,718		02400	보훈보상금(상이군경)
7000	7800	802	0	338,041,466		06199	보훈보상금(군경유족)
7000	7800	803	0	26,162,812		06199	보훈보상금(애국지사및그유족)
7000	7800	804	0	10,371,262		06199	보훈보상금(기타)
7000	7800	806	0	1,906,761		07200	보훈학자금
7000	7900	0	0	5,452,948,074		10300	퇴직금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8200	0	0	0				농림수산부
8200	8210	0	0	0			재해대책무상양곡대지원
8200	8220	0	0	40,000,000			농어촌생활용수
8300	0	0	0				내무부
8300	8310	0	0	23,961,829		13310	주택피해복구비
8300	8320	0	0	5,055,339		13310	이재민
8400	0	0	0				법무부
8400	8410	0	0	5,811,529		11100	교정시설채소자의료비
8500	0	0	0				교육부
8500	8510	0	0	210,162,120		05000	특수교육기관 운영
8500	8520	0	0	142,020,296			학교보건
8600	0	0	0				한국산업안전공단
8600	8610	0	0	58,064			보건관리지원
8600	8620	0	0	2,100			안전보건진단
8600	8630	0	0	0			보건기준작성및근로자건강관리
8600	8640	0	0	624,573			직업병예방및근로자건강보호
8600	8650	0	0	42,710			영세사업장작업환경개선지원
8600	8660	0	0	41,054			영세사업장보건관리지원
8700	0	0	0				환경부
8700	8710	0	0	626,845,000			수질보전(환경부,내무부)
8700	8720	0	0	5,562,000			대기보전
8900	0	0	0	35,742,000			식품의약품안전본부
9000	0	0					산업인력관리공단
9000	9010	0		61,881,000		09220	양성훈련
9000	9020	0		71,924,000		09500	운영비
9000	9030	0		75,938,000		09120	훈련비용
9500	0	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9500	9510	0		1,109,000		09420	고용촉진사업
9500	9520	0		1,697,000		09420	교육홍보사업
9500	9530	0		888,000		09420	기술지도
9500	9540	0		3,442,000		09420	일산학교운영
9500	9550	0		1,283,000		09420	직업재활센터건립
9500	9560	0		215,317		09420	부산직업전문학교신설

〈附表 19〉 계 속

항	세항	세세항	목	국 비	지방비	SOCX NO	
9500	9570	0		8,738,683		09500	운영비
9600	0	0	0	70,662,000			국방부(군인보건의료서비스)
9600	9610	0	0	16,250,000		11100	의무물자
9600	9620	0	0	7,176,000		11100	의무장비
9600	9630	0	0	47,236,000		11100	의무시설
9800	0	0	0				노동부
9800	9810	0	0				공공직업안정업무와 행정
9800	9810	901	0	129,000		09500	고령자인재은행 경상비보조
9800	9810	902	0	4,809,000		09500	고용보험전산망 설치,운영비
9800	9810	903	0	2,160,000		09500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비
9800	9810	904	0	3,124,000		09500	기술교육대학 출연금
9800	9810	905	0	112,000		09500	직업훈련사업운영비
9800	9810	906	0	3,809,000		09500	고용정책실운영비
9800	9810	907	0	4,039,000		09500	중앙고용정보관리소운영및사업비
9800	9810	908	0	32,074,000		09500	지방노동관서고용관련업무비
9800	9810	909	0	440,000		09500	노동연수원의 고용관련 교육과정업무비
9800	9810	910	0	1,787,000		09500	노동연구원의 고용관련 연구비 및 업무비
9800	9810	911	0	236,000		09500	해외취업 관련 업무비
9800	9810	912	0	3,718,000		09500	고용보험사업운영지원비
9800	9820	0	0				노동시장훈련
9800	9820	912	0	23,938,000		09120	고용촉진훈련
9800	9820	913	0	233,000		09120	단기적응훈련
9800	9820	914	0	1,050,000		09120	일하는 여성의 집
9800	9830	0	0				실업 및 취약 청소년 훈련
9800	9830	916	0	0		09220	정부의 인정직훈련위탁사업
9800	9840	0	0				장애인정책-직업재활
9800	9840	917	0	3,693,000		09420	지원장려금,고용보조금지급
9800	9840	918	0	366,000		09420	시설개선무상지원
9800	9840	919	0	1,779,000		09420	훈련기관보조
9900	0	0	0				복지부
9900	9910	0	0	538,000		09420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지원

附錄 5. 會員國別 社會保障費 統計提出率

〈附表 20〉 OECD會員國別 社會保障費 統計 平均提出率¹⁾

	1990	1991	1992	1993
평 균	42.25	37.83	38.79	37.29
오스트레일리아	47.92	47.92	47.92	-
오스트리아	37.50	37.50	37.50	33.33
벨기에	43.75	43.75	43.75	-
캐나다	37.50	34.38	34.38	35.42
덴마크	45.83	45.83	45.83	34.38
핀란드	50.00	50.00	50.00	50.00
프랑스	51.04	39.58	39.58	39.58
독일	45.83	29.17	29.17	29.17
그리스	28.13	25.00	25.00	23.96
아일랜드	52.08	47.92	43.75	42.71
이탈리아	35.42	29.17	29.17	26.04
일본	38.54	38.54	38.54	38.54
한국	50.00	50.00	48.96	47.92
룩셈부르크	40.63	31.25	30.21	30.21
멕시코	27.08	27.08	28.13	-
네덜란드	37.50	33.33	33.33	33.33
뉴질랜드	44.79	43.75	43.75	-
노르웨이	51.04	51.04	51.04	51.04
포르투갈	48.96	37.50	37.50	37.50
스페인	47.92	41.67	41.67	41.67
스웨덴	47.92	47.92	47.92	47.92
스위스	39.58	9.38	39.58	-
터키	20.83	20.83	20.83	20.83
영국	46.88	42.71	41.67	41.67
미국	39.58	40.63	40.63	40.63

註: 1) 전체 96개 통계에 대한 OECD회원국이 제출한 평균통계항목수의 백분율임.

附錄 6. OECD에 提出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98. 5.18 最終提出)

〈附表 21〉 Social Expenditure of Korea

(unit: million won)

[illegible]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5. SERVICES FOR ELDERLY AND DISABLED PEOPLE	102,064	103,924	121,272	157,178	341,667	427,300	536,589
* Special school management for the disabled (d),(8)	5,198	6,079	6,998	7,634	140,167	179,266	210,162
5.1 Residential care (7)	24,865	35,161	41,029	51,438	80,658	91,011	108,513
5.1.1 Residential care to children	:	:	:	:	:	:	:
5.1.2 Residential care to adults up to age 65	:	:	:	:	:	:	:
5.1.3 Residential care to adults aged over 65	:	:	:	:	:	:	:
5.1.99 Residential care (non attributable)	24,865	35,161	41,029	51,438	80,658	91,011	108,513
* Welfare facility care for disabled people	17,474	27,437	32,144	36,180	52,829	58,030	69,146
* Facility care for elderly people	7,391	7,724	8,885	15,258	27,829	32,981	39,367
5.2 Home-help services (7)	10,503	2,711	1,912	4,139	7,127	11,740	11,610
5.2.1 Home-help services to children	:	:	:	:	:	:	:
5.2.2 Home-help services to adults up to age 65	:	:	:	:	:	:	:
5.2.3 Home-help services to adults aged over 65	:	:	:	:	:	:	:
5.2.99 Home-help services (non attributable)	10,503	2,711	1,912	4,139	7,127	11,740	11,610
* Home-help services for the elderly	76	106	239	252	351	730	1,848
* Transferring Capital for the disabled	10,427	2,605	1,673	3,887	6,776	11,010	9,762
5.3 Day-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18,092	21,327	27,673	30,214	30,181	34,966	41,309
5.3.1 Day-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children	:	:	:	:	:	:	:
5.3.2 Day-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adults up to age 65	:	:	:	:	:	:	:
5.3.3 Day-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o adults aged over 65	:	:	:	:	:	:	:
5.3.99 Day-care and rehabilitation services (non attributable) (7)	18,092	21,327	27,673	30,214	30,181	34,966	41,309
* Day care for disabled people	13,141	14,338	13,364	15,413	16,713	21,570	20,462
* Support of civil organizations for the disabled	-	1,220	1,488	1,108	940	1,134	2,091
* Support of day care for the elderly	3,897	4,568	6,292	6,857	8,016	8,806	14,576
* Management of rehabilitation centers	1,054	1,201	6,529	6,836	4,512	3,456	3,700
* Rehabilitation training	-	-	-	-	-	-	229
* Rehabilitation therapy at rehabilitation hospitals	-	-	-	-	-	-	251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5.4 Other benefits in-kind	43,406	38,646	43,660	63,753	83,534	110,317	164,995
5.4.1 Other benefits in-kind to children	:	:	:	:	:	:	:
5.4.2 Other benefits in-kind to adults up to age 65	:	:	:	:	:	:	:
5.4.3 Other benefits in-kind to adults aged over 65	41,066	35,691	41,971	62,238	82,069	108,184	162,852
* Traffic expenses aids for the elderly	41,066	35,691	41,971	62,238	82,069	108,184	162,852
5.4.99 Other benefits in-kind (non attributable) (7)	2,340	2,955	1,689	1,515	1,465	2,133	2,143
* Physical aids for the disabled	2,340	2,955	1,689	1,515	1,465	2,133	2,143
6. SURVIVORS	290,239	401,059	442,005	479,196	552,148	606,683	674,484
6.1 Survivors pensions	173,254	261,888	294,783	304,491	344,303	384,185	428,102
6.1.1 Widow(er)s pensions	3,058	6,601	12,943	20,481	28,981	39,621	53,527
* National pensions (1)	3,058	6,601	12,943	20,481	28,981	39,621	53,527
6.1.2 Orphans pensions	-	-	-	-	-	-	-
6.1.3 Other survivors pensions	-	-	-	-	-	-	-
6.1.99 Survivors pensions (non attributable)	170,196	255,287	281,840	284,010	315,322	344,564	374,575
* Patriots and veterans pensions, etc. (5)	170,196	255,287	281,840	284,010	315,322	344,564	374,575
6.2 Survivors civil servants pensions	116,985	139,171	147,222	174,705	207,845	222,498	246,382
* Public servants pension (2)	74,224	86,260	84,874	101,740	123,880	130,122	145,731
*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 (3)	6,957	9,755	9,252	10,143	13,083	15,652	15,114
* Military pension (4)	35,804	43,156	53,096	62,822	70,882	76,724	85,537
6.3 Survivors benefits in-kind	-	-	-	-	-	-	-
6.4 Survivors other cash benefits	-	-	-	-	-	-	-
7. FAMILY CASH BENEFITS	2,079	4,914	5,087	7,028	8,265	10,741	11,077
7.1 Family allowances for children (7)	-	-	366	399	633	778	778
* Single parent families	-	-	366	399	633	778	778
7.2 Family support benefits	2,079	4,914	4,721	6,629	7,632	9,963	10,299
* Single parent families (7)	2,079	2,883	2,751	4,754	5,792	8,163	8,392
* Patriots and veterans pensions, etc. (e),(5)	-	2,031	1,970	1,875	1,840	1,800	1,907
7.3 Benefits for other dependents	-	-	-	-	-	-	-
7.4 Lone parent cash benefits	-	-	-	-	-	-	-
7.5 Family other cash benefits	-	-	-	-	-	-	-
7.6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	-	-	-	-	-
8. FAMILY SERVICES (7)	57,807	83,824	105,779	146,797	176,594	251,021	326,273
8.1 Formal day care	46,366	71,136	94,607	133,347	162,768	231,142	292,353
* Child care	19,116	41,876	61,962	99,547	121,486	184,527	237,460
* Children facilities	22,721	25,007	28,134	29,199	34,081	38,107	45,545
* Mother-child care & women vocational training facilities	4,529	4,253	4,511	4,601	7,201	8,508	9,348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8.2 Personal services	10,617	11,761	10,176	12,342	12,481	18,427	31,665
* Welfare centers	10,617	11,761	10,176	12,342	12,481	18,427	31,665
8.3 Household services	60	65	68	94	108	108	133
* Special child support for orphans	60	65	68	94	108	108	133
8.4 Family other benefits in-kind	764	862	928	1,014	1,237	1,344	2,122
* Family welfare	139	119	119	119	95	95	205
* Special child support for orphans	625	743	809	895	1,142	1,249	1,694
* Support for women and mother-child families	-	-	-	-	-	-	223
9.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112,881	110,846	178,743	225,758	195,317	266,244	335,974
9.1 Labour market training	22,459	24,433	31,008	60,803	34,229	61,562	109,730
9.1.1 Labour market training (cash)	-	-	-	-	-	-	-
9.1.2 Labour market training (services)	22,459	24,433	31,008	60,803	34,229	61,562	109,730
* Training for unemployed adults and those at risk	17,623	20,285	19,264	44,886	17,304	26,394	33,789
- Employment Insurance (Voc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program) (10)	-	-	-	-	-	5	8,568
- Employment promotion training (f)	17,623	20,285	19,264	44,567	16,703	25,432	23,938
- Short-term adaption training	-	-	-	179	223	232	233
- Working women's center	-	-	-	140	378	725	1,050
* Training bounty for employed adults	4,836	4,148	11,744	15,917	16,925	35,168	75,941
-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allowance	-	-	-	-	-	-	3
- Vocational training in the Korea Manpower Agency (9)	4,836	4,148	11,744	15,917	16,925	35,168	75,938
9.2 Youth measures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9.2.1 Youth measures (cash)	-	-	-	-	-	-	-
9.2.2 Youth measures (services)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 Measures for unemployed and disadvantaged youth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 Basic training in the Korea Manpower Agency (9)	36,509	23,325	77,223	85,462	53,303	77,189	61,881
- Entrusted training in the authorized training institutions (g)	-	1,043	852	750	521	-	-
* Support of apprenticeship and related forms of general youth training	-	-	-	-	-	-	-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9.3 Subsidised employment (h)	1,048	1,115	-	-	-	1,933	9,270
9.3.1 Subsidised employment (cash)	-	-	-	-	-	-	-
9.3.2 Subsidised employment (services)	1,048	1,115	-	-	-	1,933	9,270
* Subsidies to regular employment in the private sector	1,048	1,115	-	-	-	1,933	9,270
- Employment Insurance (10)	-	-	-	-	-	1,933	9,270
* Support of unemployed persons starting enterprises	-	-	-	-	-	-	-
* Direct job creation (public or non-profit)	-	-	-	-	-	-	-
9.4 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	501	655	3,335	4,161	26,662	22,057	15,010
9.4.1 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 (cash)	-	-	-	-	-	-	-
9.4.2 Employment measures for disabled (services)	501	655	3,335	4,161	26,662	22,057	15,010
* Vocational rehabilitation	112	183	2,818	3,649	26,150	21,524	14,472
- Subsidies to the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11)	112	183	2,306	3,102	25,526	19,974	8,634
- Subsidies to employment	-	-	512	328	266	1,089	3,693
- Subsidies to amelioration of facilities	-	-	-	-	-	11	366
- Subsidies to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	-	-	219	358	450	1,779
* Work for the disabled	389	472	517	512	512	533	538
- Subsidies to sheltered workplace	389	472	517	512	512	533	538
9.5 Employment service and administration	52,364	60,275	66,325	74,582	80,602	103,503	140,083
- Operating expenditures o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10)	-	-	-	-	-	2,054	6,701
- Korea Employment Promotion Agency for the disabled (11)	820	1,035	1,805	5,119	111	1,989	8,739
- Korea Manpower Agency (9)	36,877	40,290	41,252	44,966	55,358	63,791	71,924
- Subsidies to the Manpower Bank for the Aged	-	-	-	54	108	108	129
- Expenditures on computer network for EIS	-	-	-	-	432	1,919	4,809
- Expenditures on the Working Women Center	-	-	-	1,944	2,041	2,160	2,160
- Subsidies to Korea Technical Education University	1,443	4,234	6,484	5,486	5,500	7,561	3,124
- Operating expenditures on vocational training	4,224	3,468	3,116	2,914	913	108	112
- Operating expenditures on Employment Policy Office [Vocational Stability Bureau]	1,637	1,757	2,094	1,715	1,563	3,509	3,809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Central Employment Information Center [Vocational Stability Center]	470	546	617	661	733	936	4,039
- Local Labour Offices	5,687	7,637	9,666	10,402	12,583	17,046	32,074
- Expenditures on education related to employment (Labour Education Center)	70	82	94	92	88	450	440
- Expenditures on study related to employment (Korea Labour Institute)	596	622	817	867	881	1,650	1,787
- Overseas employment	540	604	380	362	291	222	236
10. UNEMPLOYMENT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63,404
10.1 Unemployment compensation	-	-	-	-	-	-	10,456
* Unemployment benefit (10)	-	-	-	-	-	-	10,456
10.2 Early retirement for labour market reasons	:	:	:	:	:	:	:
10.3 Severance pay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
* Retirement pay (i),(13)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
11. HEALTH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11.1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j),(7,14,16-21)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12. HOUSING	-	-	-	-	-	-	-
12.1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	-	-	-	-	-	-
12.1.1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elderly	-	-	-	-	-	-	-
12.1.2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disabled	-	-	-	-	-	-	-
12.1.3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families	-	-	-	-	-	-	-
12.1.4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other	-	-	-	-	-	-	-
13. OTHER CONTINGENCIES	335,323	335,837	328,241	358,840	362,789	450,657	575,547
13.1 Low Income	284,868	302,440	315,663	333,288	342,953	402,973	530,601
13.1.1 Low Income (cash benefits) (7)	284,822	302,394	315,617	333,288	342,953	402,973	530,601
* Ageing allowance	-	6,120	22,954	32,608	32,608	48,586	67,158
* Livelihood care	167,611	184,355	197,390	216,085	243,202	287,512	379,351
* Educational care	105,483	100,043	83,233	72,202	64,469	61,521	70,194
* Special child support for orphans	1,728	1,876	2,040	2,393	2,674	5,354	6,698
* Working Relief	10,000	10,000	10,000	10,000	-	-	-
* Support of living-cost for the serious disabled	-	-	-	-	-	-	7,200
13.1.2 Low Income (services)	46	46	46	-	-	-	-
* Provisional relief (7)	46	46	46	-	-	-	-

〈附表 21〉 계 속

(unit: million won)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3.2 Indigenous persons	-	-	-	-	-	-	-
13.2.1 Indigenous persons (cash benefits)	-	-	-	-	-	-	-
13.2.2 Indigenous persons (services)	-	-	-	-	-	-	-
13.3 Miscellaneous	50,455	33,397	12,578	25,552	19,836	46,987	44,149
13.3.1 Miscellaneous (cash benefits)	40,854	21,179	1,208	12,682	4,401	33,707	29,726
* Righteous deaths and injuries (7)	387	343	472	560	650	709	709
* Natural disaster victims (15)	40,467	20,836	736	12,122	3,751	32,998	29,017
13.3.2 Miscellaneous (services)	9,601	12,218	11,370	12,870	15,435	13,280	14,423
* Facility care for vagabonds	9,601	12,218	11,370	12,870	15,435	13,280	14,423
13.4 Immigrants/Refugees	..	..	..	..	..	697	797
13.4.1 Immigrants/Refugees (cash benefits) (7)	..	..	..	..	..	697	797
* Immigrants from North Korea	..	..	..	..	..	697	797
13.4.2 Immigrants/Refugees (services)	..	..	..	..	..	..	..
SUBTOTAL EXCLUDING HEALTH	4,322,345	5,304,150	6,679,024	7,838,969	9,865,223	12,336,368	13,733,044
HEALTH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TOTAL SOCIAL EXPENDITURE	7,001,682	8,204,064	10,168,501	11,814,175	14,433,979	17,906,353	20,562,670

〈附表 22〉 Social Expenditure of Korea(as a Percentage of GDP)

(unit: %)

[illegible]

〈附表 22〉 계 속

(unit: %)

[illegible]

〈附表 22〉 계 속

(unit: %)

Categorisation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0. UNEMPLOYMENT	1.00	0.98	1.08	1.12	1.30	1.40	1.40
10.1 Unemployment compensation	-	-	-	-	-	-	0.00
10.2 Early retirement for labour market reasons	:	:	:	:	:	:	:
10.3 Severance pay	1.00	0.98	1.08	1.12	1.30	1.40	1.40
11. HEALTH	1.49	1.34	1.45	1.49	1.49	1.58	1.75
11.1 Public Expenditure on health	1.49	1.34	1.45	1.49	1.49	1.58	1.75
12. HOUSING	-	-	-	-	-	-	-
12.1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	-	-	-	-	-	-
12.1.1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elderly	-	-	-	-	-	-	-
12.1.2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disabled	-	-	-	-	-	-	-
12.1.3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families	-	-	-	-	-	-	-
12.1.4 Rent subsidies and cash benefits to other	-	-	-	-	-	-	-
13. OTHER CONTINGENCIES	0.19	0.16	0.14	0.13	0.12	0.13	0.15
13.1 Low Income	0.16	0.14	0.13	0.12	0.11	0.11	0.14
13.1.1 Low Income (cash benefits)	0.16	0.14	0.13	0.12	0.11	0.11	0.14
13.1.2 Low Income (services)	0.00	0.00	0.00	-	-	-	-
13.2 Indigenous persons	-	-	-	-	-	-	-
13.2.1 Indigenous persons (cash benefits)	-	-	-	-	-	-	-
13.2.2 Indigenous persons (services)	-	-	-	-	-	-	-
13.3 Miscellaneous	0.03	0.02	0.01	0.01	0.01	0.01	0.01
13.3.1 Miscellaneous (cash benefits)	0.02	0.01	0.00	0.00	0.00	0.01	0.01
13.3.2 Miscellaneous (services)	0.01	0.01	0.00	0.00	0.01	0.00	0.00
13.4 Immigrants/Refugees	..	..	..	..	..	0.00	0.00
13.4.1 Immigrants/Refugees (cash benefits)	..	..	..	..	..	0.00	0.00
13.4.2 Immigrants/Refugees (services)	..	..	..	..	..	..	..
SUBTOTAL EXCLUDING HEALTH	2.41	2.46	2.78	2.93	3.22	3.50	3.52
HEALTH	1.49	1.34	1.45	1.49	1.49	1.58	1.75
TOTAL SOCIAL EXPENDITURE	3.90	3.80	4.23	4.42	4.72	5.09	5.28

Conventional Signs

- .. data not available
- data not applicable
- :
- included elsewhere
- 0.00 less than half of unit value

Notes

- Includ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tirement allowance contributed by employees, and social insurance benefits.
- Fiscal year covers from 1 January to 31 December in Korea.
- a) Old age pension has been distributed since 1993. Lump-sum withdrawal and for the survivor's were included in old age pension before 1993.
- b) Includes compensation for patriots or persons of merits.
- c) Nursing and treatment benefit is included in public expenditure on health(11.1).
- d) Program is too comprehensive to be estimated separately.
- e) Includes educational care subsidy for patriots or persons of merits.
- 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wa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efore 1992. Since then, it was transferred to the charge of the Ministry of Labour.
- g) Terminated for the period 1992 ~ 1994.
- h) Supported for the period 1991 ~ 1994 only.
- i) Retirement allowance of the retired labour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 j) Excluded budget for self project of local government.

Source

- (1) National Pension Management Corpor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Pension*, Each year.
- (2) Public Officials Pension Management Corporation, *Public Officials Pension Statistics*, Each year.
- (3) Private Teachers Pension Management Corporation, *Statistical Yearbook of Private Teachers Pension*, Each year.
- (4) Ministry of Defense/Pension Division, Unpublished data, Each year.
- (5)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atistical Yearbook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ach year.
- (6) Ministry of Labour, *Labour Statistical Yearbook*, Each year.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enues and Expenditures*, Each year.
- (8) Ministry of Education, *1996 Special Education Report*, 1996.
- (9) Korea Industrial Manpower Management Corporation, *Detailed Statement on Revenues and Expenditures*, Each year.
- (10) Ministry of Labour/Employment Planning Division, Unpublished data, 1997.
- (11) The Disabled Persons' Employment Promotion Corporation, *Plans and Revenues of Programs*, Each year.
- (12) Ministry of Labour, *Revenues and Expenditures*, Each year.

- (13)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Legal Person Division, Unpublished data, 1997.
- (14)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Medical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Each year.
- (15)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Yearly Book of National Disasters*, 1996.
- (16) Ministry of Law, *Revenues and Expenditures*, Each year.
- (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overnmental Subsidy for Community Bodies*, Each year.
- (18)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Medical Care Statistics*, 1997.
- (19) Ministry of Defense/Health and Environment Management Planning Division, Unpublished data, Each year.
- (20) Association of Medical Insurance Societies, *Medical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Each year.
- (21) The Bank of Korea, *National Accounts*, Each year.

〈附表 23〉 우리나라의 社會保障費 支出規模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 노령연금 급여	1,111,710	1,420,933	1,968,440	2,573,227	3,192,331	4,187,111	4,389,787
1.1 일반노령연금	38,759	102,873	198,541	302,403	477,913	699,272	1,043,187
1.1.1 개인급여	38,759	102,873	198,541	302,403	477,913	699,272	1,043,187
* 국민연금(a)	38,759	102,873	198,541	302,403	477,913	699,272	1,043,187
1.1.2 배우자보충급여	-	-	-	-	-	-	-
1.1.3 아동보충급여	-	-	-	-	-	-	-
1.1.99 기타	-	-	-	-	-	-	-
1.2 공무원노령연금	721,281	913,346	1,247,698	1,689,318	2,060,049	2,745,844	2,565,421
* 공무원연금	619,359	796,644	1,082,279	1,465,715	1,757,841	2,447,073	2,246,171
* 사립교직원연금	101,922	116,702	165,419	193,603	302,208	298,771	319,250
1.3 재향노령연금	351,670	404,714	522,201	611,506	654,369	741,995	781,179
* 군인연금	351,670	404,714	522,201	611,506	654,369	741,995	781,179
1.4 기타노령연금	-	-	-	-	-	-	-
1.5 조기퇴직연금	-	-	-	-	-	-	-
2 장애연금급여	147,173	212,796	252,421	275,269	321,565	360,180	407,546
2.1 장애연금	483	1,408	5,057	10,248	12,180	16,567	20,931
2.1.1 개인급여	483	1,408	5,057	10,248	12,180	16,567	20,931
* 국민연금	483	1,408	5,057	10,248	12,180	16,567	20,931
2.1.2 배우자보충급여	-	-	-	-	-	-	-
2.1.3 아동보충급여	-	-	-	-	-	-	-
2.1.99 기타	-	-	-	-	-	-	-
2.2 공무원장애연금	2,892	2,993	6,194	5,190	5,979	8,811	6,971
* 공무원연금	2,301	2,166	4,293	3,963	4,607	6,912	5,687
* 사립교직원연금	591	827	1,901	1,227	1,372	1,899	1,284
2.3 장애아동연금	-	-	-	-	-	-	-
2.4 재향군인장애연금	143,798	208,395	241,170	259,831	303,406	334,802	379,644
* 군인연금	1,014	1,491	2,206	2,856	3,589	4,230	4,968
* 국가보훈연금(b)	142,784	206,904	238,964	256,975	299,817	330,572	374,676
2.5 기타장애연금급여	-	-	-	-	-	-	-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급여	365,722	509,275	671,569	629,115	730,001	854,112	1,012,363
* 산재보험(c)	365,722	509,275	671,569	629,115	730,001	854,112	1,012,363
4 질병급여	-	-	-	-	-	-	-
5 노인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102,064	103,924	121,272	157,178	341,667	427,300	536,589
*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 운영지원(d)	5,198	6,079	6,998	7,634	140,167	179,266	210,162
5.1 시설보호	24,865	35,161	41,029	51,438	80,658	91,011	108,513
5.1.1 아동	:	:	:	:	:	:	:
5.1.2 65세 미만의 성인	:	:	:	:	:	:	:
5.1.3 65세 이상의 성인	:	:	:	:	:	:	:
5.1.99 기타	24,865	35,161	41,029	51,438	80,658	91,011	108,513
*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	17,474	27,437	32,144	36,180	52,829	58,030	69,146
* 노인시설 보호	7,391	7,724	8,885	15,258	27,829	32,981	39,367
5.2 가정봉사서비스	10,503	2,711	1,912	4,139	7,127	11,740	11,610
5.2.1 아동	:	:	:	:	:	:	:
5.2.2 65세 미만의 성인	:	:	:	:	:	:	:
5.2.3 65세 이상의 성인	:	:	:	:	:	:	:
5.2.99 기타	10,503	2,711	1,912	4,139	7,127	11,740	11,610
* 재가노인 지원 (가정봉사원 파견/양성사업)	76	106	239	252	351	730	1,848
* 재가장애인 보호(자본이전)	10,427	2,605	1,673	3,887	6,776	11,010	9,762
5.3 주간보호와 재활서비스	18,092	21,327	27,673	30,214	30,181	34,966	41,309
5.3.1 아동	:	:	:	:	:	:	:
5.3.2 65세 미만의 성인	:	:	:	:	:	:	:
5.3.3 65세 이상의 성인	:	:	:	:	:	:	:
5.3.99 기타	18,092	21,327	27,673	30,214	30,181	34,966	41,309
* 재가장애인 주간보호	13,141	14,338	13,364	15,413	16,713	21,570	20,462
* 장애인 민간단체 지원	-	1,220	1,488	1,108	940	1,134	2,091
* 재가노인 주간보호	3,897	4,568	6,292	6,857	8,016	8,806	14,576
* 재활원 운영	1,054	1,201	6,529	6,836	4,512	3,456	3,700
* 재활 훈련	-	-	-	-	-	-	229
* 재활병원의 치료	-	-	-	-	-	-	251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5.4 기타현물급여	43,406	38,646	43,660	63,753	83,534	110,317	164,995
5.4.1 아동	:	:	:	:	:	:	:
5.4.2 65세 미만의 성인	:	:	:	:	:	:	:
5.4.3 65세 이상의 성인	41,066	35,691	41,971	62,238	82,069	108,184	162,852
* 경로승차권 제도	41,066	35,691	41,971	62,238	82,069	108,184	162,852
5.4.9 기타	2,340	2,955	1,689	1,515	1,465	2,133	2,143
* 재가장애인 의료등 지원	2,340	2,955	1,689	1,515	1,465	2,133	2,143
6 유족급여	290,239	401,059	442,005	479,196	552,148	606,683	674,484
6.1 유족연금	173,254	261,888	294,783	304,491	344,303	384,185	428,102
6.1.1 배우자연금	3,058	6,601	12,943	20,481	28,981	39,621	53,527
* 국민연금	3,058	6,601	12,943	20,481	28,981	39,621	53,527
6.1.2 고아연금	-	-	-	-	-	-	-
6.1.3 기타연금	-	-	-	-	-	-	-
6.1.99 기타	170,196	255,287	281,840	284,010	315,322	344,564	374,575
* 국가보훈연금	170,196	255,287	281,840	284,010	315,322	344,564	374,575
6.2 공무원유족연금	116,985	139,171	147,222	174,705	207,845	222,498	246,382
* 공무원연금	74,224	86,260	84,874	101,740	123,880	130,122	145,73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6,957	9,755	9,252	10,143	13,083	15,652	15,114
* 군인연금	35,804	43,156	53,096	62,822	70,882	76,724	85,537
6.3 유족현물급여	-	-	-	-	-	-	-
6.4 기타유족현금급여	-	-	-	-	-	-	-
7 가족현금 급여	2,079	4,914	5,087	7,028	8,265	10,741	11,077
7.1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	-	366	399	633	778	778
* 재가부녀등 가정지원(아동양육비)	-	-	366	399	633	778	778
7.2 가족지원급여	2,079	4,914	4,721	6,629	7,632	9,963	10,299
* 편부모가정(자녀학비 지원)	2,079	2,883	2,751	4,754	5,792	8,163	8,392
* 국가보훈(교육비 지원) (e)	-	2,031	1,970	1,875	1,840	1,800	1,907
7.3기타 피부양인	-	-	-	-	-	-	-
7.4 편부모	-	-	-	-	-	-	-
7.5 기타가족	-	-	-	-	-	-	-
7.6 육아휴직	-	-	-	-	-	-	-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8 가족복지 서비스	57,807	83,824	105,779	146,797	176,594	251,021	326,273
8.1 공식주관보호	46,366	71,136	94,607	133,347	162,768	231,142	292,353
* 보육시설 지원	19,116	41,876	61,962	99,547	121,486	184,527	237,460
* 아동시설보호	22,721	25,007	28,134	29,199	34,081	38,107	45,545
* 모자보호 및 부녀직업보도시설	4,529	4,253	4,511	4,601	7,201	8,508	9,348
8.2 개인서비스	10,617	11,761	10,176	12,342	12,481	18,427	31,665
* 사회복지관 운영	10,617	11,761	10,176	12,342	12,481	18,427	31,665
8.3 가족서비스	60	65	68	94	108	108	133
* 아동건전육성(고아-민간경상이전)	60	65	68	94	108	108	133
8.4 기타	764	862	928	1,014	1,237	1,344	2,122
* 가정복지	139	119	119	119	95	95	205
* 아동건전육성(임양아동)	625	743	809	895	1,142	1,249	1,694
* 모자가정지원	-	-	-	-	-	-	223
9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112,881	110,846	178,743	225,758	195,317	266,244	335,974
9.1 노동시장의 훈련	22,459	24,433	31,008	60,803	34,229	61,562	109,730
9.1.1 현금	-	-	-	-	-	-	-
9.1.2 서비스	22,459	24,433	31,008	60,803	34,229	61,562	109,730
* 성인실직자와 실직우려자 훈련	17,623	20,285	19,264	44,886	17,304	26,394	33,789
- 직업능력 개발사업	-	-	-	-	-	5	8,568
- 고용촉진훈련 (f)	17,623	20,285	19,264	44,567	16,703	25,432	23,938
- 단기적응훈련	-	-	-	179	223	232	233
- 일하는 여성의 집	-	-	-	140	378	725	1,050
* 성인취업자 훈련	4,836	4,148	11,744	15,917	16,925	35,168	75,941
- 직업능력개발 수당	-	-	-	-	-	-	3
- 직업훈련	4,836	4,148	11,744	15,917	16,925	35,168	75,938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9.2 청소년관련사업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9.2.1 현금	-	-	-	-	-	-	-
9.2.2 서비스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 실업 및 취약청소년 훈련	36,509	24,368	78,075	86,212	53,824	77,189	61,881
- 기능양성훈련	36,509	23,325	77,223	85,462	53,303	77,189	61,881
- 위탁훈련 (g)	-	1,043	852	750	521	-	-
* 도제제도 및 일반청소년 훈련	-	-	-	-	-	-	-
9.3 고용보조 프로그램 (h)	1,048	1,115	-	-	-	1,933	9,270
9.3.1 현금	-	-	-	-	-	-	-
9.3.2 서비스	1,048	1,115	-	-	-	1,933	9,270
* 민간부문 정규고용에 대한 보조	1,048	1,115	-	-	-	1,933	9,270
- 고용보험	-	-	-	-	-	1,933	9,270
* 실업자 창업지원	-	-	-	-	-	-	-
* 공공부문의 고용창조	-	-	-	-	-	-	-
9.4 장애인을 위한 고용 프로그램	501	655	3,335	4,161	26,662	22,057	15,010
9.4.1 현금	-	-	-	-	-	-	-
9.4.2 서비스	501	655	3,335	4,161	26,662	22,057	15,010
* 직업재활	112	183	2,818	3,649	26,150	21,524	14,472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원	112	183	2,306	3,102	25,526	19,974	8,634
- 고용지원	-	-	512	328	266	1,089	3,693
- 시설개선지원	-	-	-	-	-	11	366
- 훈련기관보조	-	-	-	219	358	450	1,779
* 장애인 보호작업	389	472	517	512	512	533	538
9.5 고용서비스와 행정	52,364	60,275	66,325	74,582	80,602	103,503	140,083
- 고용보험사업 운영비 지원	-	-	-	-	-	2,054	6,701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운영비	820	1,035	1,805	5,119	111	1,989	8,739
- 산업인력관리공단 운영비	36,877	40,290	41,252	44,966	55,358	63,791	71,924
- 고령자인력은행 경비보조	-	-	-	54	108	108	129
- 고용보험 전산망 설치, 운영비	-	-	-	-	432	1,919	4,809
- 일하는 여성의 집 설치운영	-	-	-	1,944	2,041	2,160	2,160
- 한국기술교육대학 출연금	1,443	4,234	6,484	5,486	5,500	7,561	3,124
- 직업훈련사업비 지원	4,224	3,468	3,116	2,914	913	108	112
- 고용정책실 운영비	1,637	1,757	2,094	1,715	1,563	3,509	3,809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운영	470	546	617	661	733	936	4,039
-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련 업무비	5,687	7,637	9,666	10,402	12,583	17,046	32,074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노동연수원 고용관련 교육비	70	82	94	92	88	450	440
- 노동연구원 고용관련 연구비	596	622	817	867	881	1,650	1,787
- 해외취업관련 업무비	540	604	380	362	291	222	236
10 실업급여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63,404
10.1 실업보상	-	-	-	-	-	-	10,456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	:	:	:	:	:	:
10.3 퇴직수당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
* 법정퇴직금 (i)	1,797,347	2,120,742	2,605,467	2,986,561	3,984,546	4,922,319	5,452,948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j)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12 주거급여	-	-	-	-	-	-	-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	-	-	-	-	-	-
12.1.1 노인	-	-	-	-	-	-	-
12.1.2 장애인	-	-	-	-	-	-	-
12.1.3 가족	-	-	-	-	-	-	-
12.1.4 기타	-	-	-	-	-	-	-
13 기타급여	335,323	335,837	328,241	358,840	362,789	450,657	575,547
13.1 저소득	284,868	302,440	315,663	333,288	342,953	402,973	530,601
13.1.1 현금급여	284,822	302,394	315,617	333,288	342,953	402,973	530,601
* 노령수당	-	6,120	22,954	32,608	32,608	48,586	67,158
* 생계보호	167,611	184,355	197,390	216,085	243,202	287,512	379,351
* 교육보호	105,483	100,043	83,233	72,202	64,469	61,521	70,194
* 소년소녀가장 보호	1,728	1,876	2,040	2,393	2,674	5,354	6,698
* 취로사업	10,000	10,000	10,000	10,000	-	-	-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	-	-	-	-	7,200
13.1.2 서비스	46	46	46	-	-	-	-
* 재해구호	46	46	46	-	-	-	-
13.2 원주민	-	-	-	-	-	-	-
13.2.1 현금급여	-	-	-	-	-	-	-
13.2.2 서비스	-	-	-	-	-	-	-

〈附表 23〉 계 속

(단위: 백만원)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3.3 기타	50,455	33,397	12,578	25,552	19,836	46,987	44,149
13.3.1 현금급여	40,854	21,179	1,208	12,682	4,401	33,707	29,726
* 의사상자 예우	387	343	472	560	650	709	709
* 재해구호	40,467	20,836	736	12,122	3,751	32,998	29,017
13.3.2 서비스	9,601	12,218	11,370	12,870	15,435	13,280	14,423
* 부랑인시설 보호	9,601	12,218	11,370	12,870	15,435	13,280	14,423
13.4 이민자 및 망명자	..	..	..	..	..	697	797
13.4.1 현금급여	..	..	..	..	..	697	797
* 귀순북한동포보호	..	..	..	..	..	697	797
13.4.2 서비스	..	..	..	..	..	..	..
SUBTOTAL EXCLUDING HEALTH	4,322,345	5,304,150	6,679,024	7,838,969	9,865,223	12,336,368	13,733,044
HEALTH	2,679,337	2,899,914	3,489,477	3,975,206	4,568,756	5,569,985	6,829,626
TOTAL SOCIAL EXPENDITURE	7,001,682	8,204,064	10,168,501	11,814,175	14,433,979	17,906,353	20,562,670

符 號

- .. 해당숫자 미상
- 해당숫자 없음
- : 위의 항목에 포함

0.00 단위 미만

註: - 중앙및 지방정부의 예산, 법정퇴직금의 지급금액, 4대사회보험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음.

- 재정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임.
-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제외.

- a) 노령연금은 1993년 이후 지급되었으며, 그 이전 연도에는 반환일시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 b)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음.
- c) 요양급여는 보건부문의 공공지출(11.1)에 포함.
- d) 관심영역별로 분리할 수 없는 포괄적인 제도임.
- e) 교육보호 지원금 포함.
- f) 종래 6개부처에서 실시하던 직업훈련프로그램이 1993년부터 노동부로 통합됨.
- g) 1991~1994년 동안만 지원
- h) 1992~1994년 동안은 지원중단.
- i)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법정퇴직금임.
- j)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예산 제외

[illegible]

〈附表 24〉 계 속

(단위: %)

[illegible]

〈附表 24〉 계 속

(단위: %)

부 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0 실업급여	1.00	0.98	1.08	1.12	1.30	1.40	1.40
10.1 실업보상	-	-	-	-	-	-	0.00
10.2 노동시장의 이유로 인한 조기퇴직	:	:	:	:	:	:	:
10.3 퇴직수당	1.00	0.98	1.08	1.12	1.30	1.40	1.40
11 보건부문 공공지출	1.49	1.34	1.45	1.49	1.49	1.58	1.75
11.1 보건부문의 공공지출	1.49	1.34	1.45	1.49	1.49	1.58	1.75
12 주거급여	-	-	-	-	-	-	-
12.1 임대보조 및 현금급여	-	-	-	-	-	-	-
12.1.1 노인	-	-	-	-	-	-	-
12.1.2 장애인	-	-	-	-	-	-	-
12.1.3 가족	-	-	-	-	-	-	-
12.1.4 기타	-	-	-	-	-	-	-
13 기타급여	0.19	0.16	0.14	0.13	0.12	0.13	0.15
13.1 저소득	0.16	0.14	0.13	0.12	0.11	0.11	0.14
13.1.1 현금급여	0.16	0.14	0.13	0.12	0.11	0.11	0.14
13.1.2 서비스	0.00	0.00	0.00	-	-	-	-
13.2 원주민	-	-	-	-	-	-	-
13.2.1 현금급여	-	-	-	-	-	-	-
13.2.2 서비스	-	-	-	-	-	-	-
13.3 기타	0.03	0.02	0.01	0.01	0.01	0.01	0.01
13.3.1 현금급여	0.02	0.01	0.00	0.00	0.00	0.01	0.01
13.3.2 서비스	0.01	0.01	0.00	0.00	0.01	0.00	0.00
13.4 이민자 및 망명자	..	..	..	..	..	0.00	0.00
13.4.1 현금급여	..	..	..	..	..	0.00	0.00
13.4.2 서비스	..	..	..	..	..	..	..
SUBTOTAL EXCLUDING HEALTH	2.41	2.46	2.78	2.93	3.22	3.50	3.52
HEALTH	1.49	1.34	1.45	1.49	1.49	1.58	1.75
TOTAL SOCIAL EXPENDITURE	3.90	3.80	4.23	4.42	4.72	5.09	5.28

符號 : <附表 23> 참조